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중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다운 예산분석관
이미선 예산분석관

지 원 | 정진아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I. 예산안 개요 / 3

- 1. 현 황 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

II. 주요 사업 분석 / 21

〈일반회계〉

- 1.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의 손실보전 규모 불확실성에 따른 예산안 조정
필요 등 21
- 2.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필요 등 29
- 3.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의 2026년 대출 실행액을 고려한 2027년
예산안 조정 필요 33
- 4.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사업 채용지원금의 지급 필요성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논의 필요 37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 5.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법률 개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41
- 6.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사업의 예타 결과 대비 계획
변경에 따른 연차별 재정소요 관리 필요 48
- 7.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의 재기획 필요 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8. 지역투자촉진 사업의 기업 규모에 따른 보조율 차등 지원 검토 필요 등 61
- 9.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의 지원기준 구체화 필요 등 68

〈미래대응기금〉

- 10.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 분석 76
- 11.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구축운영 사업의 데이터 구축 소요 구체화
필요 등 88

〈자원안보기금〉

- 12. 자원안보기금 법정부담금 및 기금 운용 예산 분석 100
 - 12-1. 징수·수납 실적을 고려한 법정부담금 수입 계획안 현실화 필요 102
 - 12-2. 기금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미편성 문제 107
- 13.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의 비축유 구입 물량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110
- 14.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의 공사비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등 117

[중소벤처기업부]

I. 예산안 개요 / 125

- 1. 현 황 12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0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32

II. 주요 사업 분석 / 135

〈회계·기금 공통〉

- 1.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 분석 135
 - 1-1.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 필요 139
 - 1-2. 신안보 전용 펀드 출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144

〈일반회계〉

- 2.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의 공정한 심사 체계 구축 필요 등 148
- 3. 수출바우처 사업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취지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15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4.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 164

〈미래대응기금〉

- 5.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계획안 규모의 조정 필요 172
- 6.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의 별도 신규 편성 필요성 재검토 필요 등 180



CONTENTS

7.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 추진 시 투자형 R&D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186
8.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의 제조AI 24·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연계체계 마련 필요	193
9.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의 적정성 검토 실시 및 결과 국회 제출 필요 등 ..	20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금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존속기간 연장 전 운용 성과 분석 필요	20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1.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시범사업 우선 추진 검토	214
12.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전 기획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 필요	221
13.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의 지원 목표인원 및 계획안 산출근거 조정 등	229
14.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시행 필요	239
15.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유사 사업과의 중복 부분 조정 등	246
16.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의 유사·중복 사업과의 통합 조정 필요 등	254

[지식재산체]

I. 예산안 개요 / 265

- 1. 현 황 265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67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68

II. 주요 사업 분석 / 270

〈일반회계〉

- 1. IP 전략패키지 지원 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필요 270
- 2. 특허정보활용인프라구축(정보화) 사업의 시범운영 및 성능검증 결과 반영
필요 277
- 3.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신규 출자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285



산업통상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2개 기금(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자원안보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2개 기금(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자원안보기금)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조 4,27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611억원(7.1%)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550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90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5억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9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1,136억원, 자원안보기금 1조 8,919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056,897	2,181,595	2,181,595	422,054	△1,759,541	△80.7
- 일반회계	172,921	175,074	175,074	255,003	79,929	45.7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706,806	1,858,213	1,858,213	-	△1,858,213	순감
- 소재·부품·장비산업경 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94,843	81,980	81,980	90,657	8,677	10.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2,232	66,328	66,328	75,454	9,126	13.8
-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95	-	-	-	-	0.0
-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940	940	순증
기 금	78,689	84,909	84,909	2,005,516	1,920,607	2,262.0
- 산업기술진흥및 사업화촉진기금	78,689	84,909	84,909	113,630	28,721	33.8
- 자원안보기금	-	-	-	1,891,886	1,891,886	순증
합 계	2,135,586	2,266,504	2,266,504	2,427,570	161,066	7.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3조 2,57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7,250억원(25.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조 5,958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조 8,97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조 2,131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8억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2조 830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20억원, 자원안보기금 1조 4,011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9,753,771	9,314,154	10,412,201	11,794,126	1,381,925	13.3
- 일반회계	4,560,144	5,135,073	6,020,787	5,595,804	△424,983	△7.1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256,834	813,894	1,004,727	-	△1,004,727	△100.0
- 소재·부품·장비산 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 회계	1,822,803	1,954,894	1,954,894	1,897,441	△57,453	△2.9
-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1,108,290	1,403,763	1,425,263	2,213,069	787,806	55.3
- 고등·평생교육지 원특별회계	5,700	6,530	6,530	4,800	△1,730	△26.5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특별회계	-	-	-	2,083,012	2,083,012	순증
기 금	142,075	120,079	120,079	1,463,144	1,343,065	1,118.5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142,075	120,079	120,079	62,016	△58,063	△48.4
- 자원안보기금	-	-	-	1,401,128	1,401,128	순증
합 계	9,895,846	9,434,233	10,532,280	13,257,270	2,724,990	25.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산업통상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5조 4,48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9,134억원(20.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42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조 4,22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5억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2조 5,660억원이다.

[2027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2,921	175,074	175,074	384,204	209,130	119.5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964,240	1,858,213	1,858,213	-	△1,858,213	순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2,331,813	2,435,354	2,435,354	2,422,657	△12,697	△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2,232	66,328	66,328	75,454	9,126	13.8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95	-	-	-	-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	-	2,566,034	2,566,034	순증
합 계	6,551,301	4,534,969	4,534,969	5,448,349	913,380	20.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6조 6,176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조 8,970억원(30.6%)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조 4,192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조 8,97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조 2,132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8억원,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특별회계 2조 830억원이다.

[2027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743,085	7,443,455	8,329,169	10,419,209	2,090,040	25.1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2,320,204	813,894	1,004,727	-	△1,004,727	순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822,803	1,954,894	1,954,894	1,897,441	△57,453	△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8,323	1,403,856	1,425,356	2,213,170	787,814	55.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5,700	6,530	6,530	4,800	△1,730	△26.5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회계	-	-	-	2,083,012	2,083,012	순증
합 계	12,000,115	11,622,629	12,720,676	16,617,632	3,896,956	30.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자원안보기금, 무역보험기금으로 구성된다.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8조 5,661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2조 4,960억원(41.1%)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022억원, 자원안보기금 2조 4,555억원, 무역보험기금 5조 9,084억원이다.

[2027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258,560	197,061	197,061	202,163	5,102	2.6
자원안보기금	-	-	-	2,455,532	2,455,532	순증
무역보험기금	4,818,592	5,773,040	5,873,040	5,908,405	35,365	0.6
합 계	5,077,152	5,970,101	6,070,101	8,566,100	2,495,999	41.1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산업통상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로 2조 2,583억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2조 5,651억원, 무역보험기금으로 900억원을 전출하며, 자원안보기금으로부터 1,292억원을 전입 받는다.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2조 2,583억원,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으로부터 109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부터 100억원을 전입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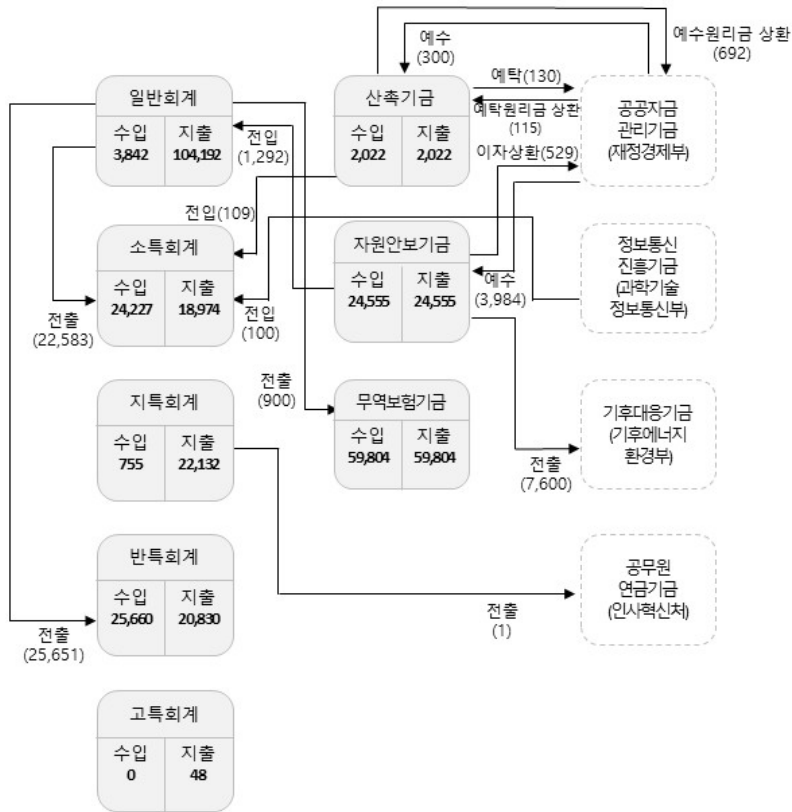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억원을 전출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2조 5,651억원을 전입 받는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경우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로 109억원을 전출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예수하고, 692억원의 예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30억원을 예탁하고, 115억원의 예탁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는다.

자원안보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 1,292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7,600억원을 전출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984억원을 예수하고, 529억원의 이자를 상환한다. 무역보험기금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900억원을 전입 받는다.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027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제조AI 전환 및 메가 프로젝트 총력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2026년 1.7조원 → 2027년 3.7조원, 미래대응기금 0.9조원 포함), ② 5극3특 지역주도성장 관련 예산 지원이 확대되었고(2026년 1.3조원 → 2027년 2.1조원), ③ 산업·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고(2026년 1.9조원 → 2027년 3.7조원), ④ 반도체특별회계와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여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였다.

2027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시점 및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실제 손실발생 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종료시점별 손실보전 소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최고가격제 시행 상황, 목적예비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와 총사업비, 사업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9월말 기준 대출 실행액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차보전금 예산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집행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 법 개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연차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 이후 개별 사업 추진 계획 및 집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비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이므로, 연차별 재정소요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은 기존 반도체아카데미 사업과 교육 대상 및 내용의 유사성이 높고, 서남권의 경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통해 인력양성 부문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재기획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투자촉진 사업은 기업 규모에 따른 보조율 차등을 폐지할 계획이나, 자금조달능력 및 투자여력,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규모별 적정 보조율을 설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편되는 트랙별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고,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은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앵커기업의 인정 기준,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율 결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은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향후 그 결과를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지원대상범위·사업규모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제조AI솔루션 확산 내역의 공급망 전체 성과 측정 방식, 제조AX설비구축 내역의 지원 설비 사후관리 강화, AI로봇 공공보급 내역의 국산 RFM 개발 일정과 휴머노이드 보급시기 연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곱째,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리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향후 그 결과를 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지원대상·범위·사업규모 등을 확정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레퍼런스 맵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 소요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원안보기금의 경우 법정부담금 징수·수납 실적을 고려하여 수입 계획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사업은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향후 설계 및 공사 발주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2027년 공사비 중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47개 사업, 6조 2,69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K-로봇산업생태계고도화(R&D) 사업은 글로벌 AI로봇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국산화율이 낮은 액추에이터, 로봇 손, 센서 등 3대 취약부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대기업-중소·스타트업간 협업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고, 첨단산업아카데미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AIDC 등 첨단산업분야 인력수요 증가 예측에 대비하여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사업 중 K-화학산업 대전환 혁신 기술개발(R&D) 사업은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사업은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R&D) 사업은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인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사업 중 온-센서AI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R&D) 사업은 로봇, 방산, 모빌리티 등 수요기업과 센서기업의 협업을 지원하여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고,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사업은 남부권 지역(호남, 동남, 대경)별 반도체 특화 분야의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자원안보기금 사업 중 다변화 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은 원유 정제시설 개선 및 고도화 지원을 통해 다변화 원유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고, 국내도입원유 다변화를 위한 비중동산 기회원유 전처리 및 정유공정 적용기술 개발(R&D) 사업은 비중동산 기회원유의 국내 정유공정 적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파일럿 평가·검증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3개)	AI기반화학산업안전관리체계구축	3,000
	AI로봇기반대형철강구조물제조자동화기술개발(R&D)	2,000
	AI연계수출기업해외인증종합지원	1,025
	AI융합설계및적층제조를활용한개인맞춤형웨어러블트윈디바이스개발사업(R&D)	1,000
	Euro7대응친환경타이어평가기술고도화기반구축	2,000
	K-로봇산업생태계고도화(R&D)	37,000
	K-패션산업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수요연계핵심기술개발	3,500
	WTO개혁특별각료세션개최	1,700
	가전AX가속화를위한AI가전데이터처리핵심기술개발(R&D)	9,200
	관세·비관세장벽대응강화	4,925
	국가핵심기술(NCT)보호역량강화기술개발사업(R&D)	4,000
	극한환경·특수목적반도체설계지원센터구축	5,300
	농업AI로봇표준화및온디맨드자율제조플랫폼구축	3,000
	대미통상현안대응및대미전략투자협력기반조성	6,772
	모달리티맞춤형제조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11,968
	미래모빌리티AI소프트웨어검증시스템구축	4,000
	미래차차량용반도체국제규격대응통합검증기반구축	1,000
	바이오산업혁신기술개발(R&D)	14,000
	바이오의약품제조혁신및고품질원부자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R&D)	12,142
	배터리통합관리체계고도화	5,917
	사고유형학습기반AI제조안전기술개발	5,000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	5,294
	산업통상자원안보위기대응실전역량강화	837
	석유가격안정화지원	1,449,714
	선제적사업재편기술개발	2,625
	수출규제대응위험미래커넥티드카지원	3,000
	스타엔지니어육성지원사업(R&D)	2,500
	유통물류AI자율운영기술개발	4,550
	의약품후보물질생산지원및공공위탁생산설비AI전환지원	9,000
	인간로봇협업형자동차부품M.AX실증센터구축사업	4,500
	인공지능기반응복합의료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8,969
	인증지원혁신기반구축	1,553
	자동차위험분석및보안성검증시스템개발(R&D)	9,195
	전기차CTP-CTB핵심부품안전성평가기반구축	1,000
	전기차배터리시스템공정혁신및무선충전통합플랫폼기술개발(R&D)	10,500
	전북로봇실증기반조성	8,000
	제조AI로보틱스밸리구축	3,00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제조공급망강화표준물질개발(R&D)	6,343
	제주형선박MRO산업생태계구축	250
	제주형창의성장융합벨트조성지원	600
	조선해양피지컬AI실증테스트필드구축	1,000
	조선해양운상생협력지원	3,640
	중견기업화재안전투자이차보전지원	4,080
	중전압계통연계SST용화합물전력반도체기술개발(R&D)	4,000
	지능형로봇EOAT이노베이션팩토리구축지원	1,000
	철강부산물재활용LFP전극재전주기실증사업	5,000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9,300
	첨단모달리티CMC기반기술개발및활용지원사업(R&D)	1,800
	첨단민군융합핵심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R&D)	12,230
	첨단산업아카데미	6,052
	친환경차개발보급촉진통합시스템구축	760
	휴머노이드기반제조산업M-AX전환지원사업	4,500
	휴머노이드로봇Physical훈련센터기반구축	1,820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강화 및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8개)	AI산업병목대응수요주도형그래핀전락소재기술개발(R&D)	3,600
	K-화학산업대전환혁신기술개발사업(R&D)	36,753
	국산탄소복합재기반차세대항공기대형동체및AI지능형성형제조 기술개발(R&D)	2,000
	드론분야시장창출프로젝트(R&D)	2,000
	수출대응형무기전력지원체계핵심플랫폼기술개발(R&D)	3,000
	주력산업핵심부품AI3D프린팅기술개발사업(R&D)	3,500
	차세대항공무기체계용첨단항공엔진핵심소재·부품제조기술 개발(R&D)	4,050
	차세대OLED산업경쟁력확보를위한8세대포토판터닝기술 및 고효율장수명소자개발(R&D)	15,00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0개)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700,000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강원도)(R&D)	20,000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대경권)(R&D)	20,000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동남권)(R&D)	20,000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서남권)(R&D)	20,000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전북도)(R&D)	20,000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제주도)(R&D)	20,000
	5극3특성장엔진프로젝트(중부권)(R&D)	20,000
	산업단지환경조성(자율)	145,876
	지역산단기반M-AXAcademy구축사업	4,720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32개)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113,980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4,680
	SDV용핵심반도체기술개발(R&D)	14,305
	고신뢰반도체상용화를위한팹리스검사검증지원	3,564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사업	5,910
	미래차전장부품시스템반도체신뢰성검증센터구축	3,724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15,599
	반도체가스성능·안전평가지원센터구축	2,356
	반도체설계검증및공정용소모품기반구축	13,738
	반도체소재·부품시험평가센터구축	3,488
	반도체장비챔버용소재부품제조및검증테스트베드구축	3,483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기반조성	981
	반도체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7,000
	반도체아카데미구축	14,005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R&D)	54,108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사업(R&D)	44,362
	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구축	5,976
	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	25,000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6,720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통합재정지원	1,500,000
	시스템반도체검증지원센터구축	3,044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	8,000
	시스템반도체설계IP경쟁력강화사업	6,800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시제품제작지원사업	9,300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	16,740
	온-센서AI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사업	9,000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사업	56,245
	차세대전력반도체전/후공정용제조공정·장비기술개발	5,000
	차세대우주항공용고신뢰성통신네트워크반도체기술개발(R&D)	6,159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팩기반구축(R&D)	97,993
	첨단반도체후공정소부장테스트베드구축	3,486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R&D)	18,266
자원안보기금 (44개)	AI자율해체통합플랫폼구축을통한희토류및핵심광물재자원화 기술개발(R&D)	3,000
	LPG소형저장탱크보급	1,788
	LPG소형저장탱크시설원격관리시스템보급및운영	968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	3,466
	가스안전관리(용자)	3,522
	공급망안정화를위한국내타이타늄최적화기술개발(R&D)	4,449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2,069
	광해방지사업	92,000
	국가대륙붕탐사데이터레이크및해양탐사특화AI기반모델구축 (R&D)	1,000
	국내도입원유다변화를위한비중동산기회원유전처리및정유공정 적용기술개발사업(R&D)	3,50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기후변화협약대응한-개도국협력(ODA)	1,886
	다변화원유정제시설고도화지원	42,500
	대한석탄공사출자	28,650
	도시가스수소혼입지역실증및안전기술개발(R&D)	1,000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용자)	12,442
	배터리공정스크랩재자원화/재제조기술개발(R&D)	5,100
	석유비축사업출자	328,709
	석유유통구조개선	1,323
	석유품질관리사업지원	20,379
	석탄비축자산관리비	1,140
	석탄비축자산구입비	1,123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270
	연안여객선유류비보조	49,296
	연안화물선유류비보조	27,141
	연탄쿠폰	23,140
	유전개발사업출자	2,139
	일반광업육성지원	19,508
	자원안보를위한고부가가치한국형텅스텐전주기기술개발및실증(R&D)	4,000
	자원협력기반구축	571
	장기사용석유저장시설안전관리용자	1,861
	저품위산화광대상니켈원료제조공정기술개발(R&D)	3,960
	저품위염호대상리튬추출및소재화기술개발(R&D)	3,402
	진폐건강진단	1,625
	진폐근로자지원	1,042
	진폐위로금	86,851
	친환경석유대체연료보급기반구축사업	5,553
	탄가안정대책보조	43,963
	폐광대책비	254,376
	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101,573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146,137
	해외자원개발조사	3,149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50,285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10,588
	회계위탁관리비	684
	합 계	6,269,700

자료: 산업통상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역투자촉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R&D),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AI에이전트기술개발(R&D), 미래모빌리티확산제도기반지원 등이 있다.

① 지역투자촉진 사업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등 지방투자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대폭 증액되었고, ②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은 친환경·자율운항 등 미래형 조선·해양플랜트 핵심기술 개발 관련 내역사업이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R&D)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신규과제 사업비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④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AI에이전트기술개발(R&D)사업은 제조공정, 생산계획, 공급망관리, 안전 등 산업현장 전반을 조정할 수 있는 AI에이전트 개발 과제의 계속 지원 사업비 및 신규과제 사업비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⑤ 미래모빌리티확산제도기반지원 사업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전환 촉진과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이 신규 반영되었다.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5개)	AI선박기자재및첨단부품실증지원센터구축	3,200	3,200	5,917	2,717	85
	가전산업AX전환을위한AI핵심모듈 및혁신제품화기술개발(R&D)	4,000	4,000	6,000	2,000	50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GATC)(R&D)	17,835	17,835	23,896	6,061	34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1,120	1,120	2,000	880	79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형 신산업기술개발(R&D)	6,850	6,850	9,000	2,150	31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4,310	4,310	8,705	4,395	102
	모빌리티부품제조AI확산센터구축	2,000	2,000	4,104	2,104	105
	미래모빌리티확산제도기반지원	530	530	7,411	6,881	1,298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 기반구축	330	330	2,538	2,208	669
	미래자동차편의·안전기술고도화 기반구축	670	670	2,052	1,382	206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래자동차핵심부품개발지원플랫폼구축	1,200	1,200	2,398	1,198	100
	미래차탑재모듈상용화기반구축	1,500	1,500	2,583	1,083	72
	미래판기술프로젝트(R&D)	4,030	4,030	7,590	3,560	88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및활용기반구축(R&D)	4,940	4,940	11,095	6,155	125
	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1,157	1,157	3,374	2,217	192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AI에이전트기술개발(R&D)	6,000	6,000	22,000	16,000	267
	수소엔진및기자재육상실증플랫폼구축	2,200	2,200	3,400	1,200	55
	수요맞춤형산업별배터리소재및셀기술개발(R&D)	3,500	3,500	5,976	2,476	71
	아시아생산성기구분담금(ODA)	1,990	1,990	2,620	630	32
	안전한조선소작업환경구축지원	3,500	3,500	4,925	1,425	41
	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	6,966	6,966	11,727	4,761	68
	제조AI데이터밸류체인구축	1,000	1,000	3,100	2,100	21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194,412	194,412	213,400	18,988	10
	중견중소기업생태형혁신도약사업(R&D)	25,166	25,166	42,380	17,214	68
	중소조선및기자재미국진출지원	7,663	7,663	10,735	3,072	40
	지능형센서소재·부품·구성품의 Spin-On을위한군적합성검증기술지원	1,400	1,400	4,550	3,150	225
	첨단나노소재산업안전성평가기술개발사업(R&D)	3,000	3,000	4,600	1,600	53
	첨단소재공정고도화및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R&D)	2,000	2,000	4,200	2,200	110
	첨단소재특화형AX플랫폼구축및실증	2,200	2,200	7,600	5,400	245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생산제조기반구축	2,194	2,194	4,412	2,218	101
	친환경자동차전력변환시스템전력손실평가기반구축	1,000	1,000	2,563	1,563	156
	특장산업생태계다각화를위한건설기계상용화지원	1,570	1,570	3,170	1,600	102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하이망간리튬이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5,000	5,000	7,000	2,000	40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5,250	5,250	8,100	2,850	54
	휴머노이드로봇안전인증센터구축	900	900	2,052	1,152	128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3개)	AX실증밸리조성(R&D)	2,110	2,110	11,360	9,250	438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율)	6,250	6,250	14,900	8,650	138
	지역투자촉진	251,347	251,347	295,949	44,602	18
무역보험 기금 (1개)	무역보험IT운영	12,418	12,418	17,062	4,644	3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II

주요 사업 분석

1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의 손실보전 규모 불확실성에 따른 예산안 조정 필요 등

가. 현 황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¹⁾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석유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한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고, 손실보전 재정지원규모 심의를 위한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 1조 4,497억 1,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	-	-	1,449,714	1,449,714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 1조 4,490 억원과 최고액 정산위원회 등 운영지원 예산 7억 1,400만원으로 구분된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5432-303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예산안
①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	1,449,000
② 최고액 정산위원회 등 운영지원	714
합계	1,449,714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 석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여, 2026년 3월 12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903원, 경유는 1,924원으로 사태 발생 직전인 2월 27일(휘발유 1,693원, 경유 1,592원) 대비 각각 210원, 332원 이상 상승하였다.

이에 정부는 2026년 3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를 통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2)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산업통상부가 3월 13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고시)을 발령하여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은 2026년 3월 13일 1차 지정 이후 10월 17일자로 11차 최고가격이 지정·시행되고 있다.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은 2026년 3월 27일 2차 고시에서 유종별로 210원이 인상되었고, 6월 27일 7차 고시에서 유종별로 150원 인하된 이후 10월 17일 11차 고시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026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현황]

(단위: 원/ℓ)

구분	1차 (3/13)	2차 (3/27)	3차 (4/10)	4차 (4/24)	5차 (5/8)	6차 (5/22)	7차 (6/27)	8차 (7/25)	9차 (8/22)	10차 (9/19)	11차 (10/17)
[일반운송]											
보통휘발유	1,724			1,934					1,784		
자동차용 경유	1,713			1,923					1,773		
실내 등유	1,320			1,530					1,380		
[해상운송 필수 도서지역 공급 제품]											
보통휘발유	1,743			1,953					1,803		
자동차용 경유	1,732			1,942					1,792		
실내 등유	1,339			1,549					1,399		

자료: 산업통상부

[2026년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추이]



나. 분석의견

첫째,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시점 및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실제 손실발생 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종료시점별 손실보전 소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최고가격제 시행 상황, 목적예비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손실보전금의 목적예비비 집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6년 본예산 기준 4조원이었던 일반회계 예비비³⁾는 추경에서 5조원이 증액되었다.

[2026년 추경 예산총칙 제12조]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8,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황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자료: 국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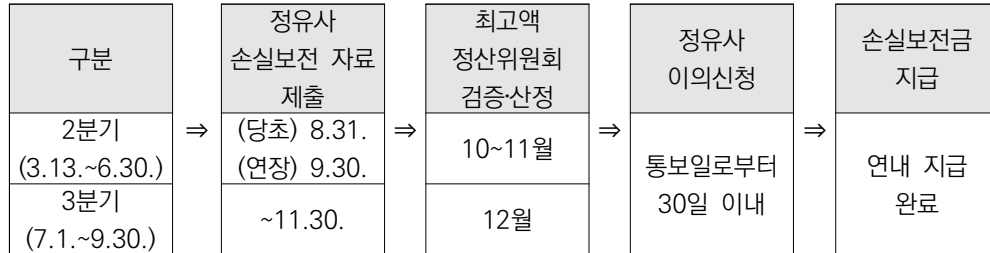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차 정산대상기간으로 설정하고, 7월 1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고시)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손실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실보전은 정유사가 원가 등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여 관련 자료를 9월 말까지 제출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검증·심의하여 적정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1차 정산대상기간(3.13.~6.30.)이 종료된 지 약 3개월이 경과한 현재(2026.10.6.) 손실보전액 산정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손실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며, 산업통상부는 10~11월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3분기 손실

3) 코드: 일반회계 3069-300

보전금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연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⁴⁾

[2026년 2·3분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 절차 및 계획]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산업통상부는 2026년 4분기 석유최고가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액 지급 용도로 2027년도 예산안에 1조 4,49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소요액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국제유가 전망 등을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하였다는 입장이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4분기 손실보전액의 경우 12월 31일까지의 손실에 대하여 정유사가 2027년 2월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최고액 정산위원회 정산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2026년 목적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손실보전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최고가격제 종료시점의 불확실성

첫째, 최고가격제의 종료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손실보전 대상기간과 이에 따른 재정소요가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유조선 통항이 원활해지는 시점에 종료를 검토할 계획⁵⁾’이므로, 최고가격제가

4) 2026년 7월말 기준 예비비 배정액은 14억 5,500만원이며, 이 중 4,000만원이 집행되었다.

5) 산업통상부 설명자료,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한을 고지한 바 없으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9.14.

2026년 12월말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최고 가격제가 11월 중 종료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전 대상기간이 단축되어 4분기 손실보전 소요 역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② 손실보전 규모 예측의 어려움

둘째, 최고가격제의 시행기간 외에도 국제유가, 환율, 석유제품 판매량 및 최고 가격과 실제 공급비용 간 차이 등 손실보전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1조 4,490억 원은 실제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규모에 기초한 금액이 아닌 일정한 가정에 따라 추정된 금액이라는 한계가 있다.

③ 2027년 목적예비비 집행 가능성

마지막으로, 2027년도 예산총칙상 목적예비비의 용도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일반회계 예비비⁶⁾ 예산안은 4.5조원이 편성되었는데, 2026년 추경과 마찬가지로 예산총칙에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에 목적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2027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12조]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5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황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령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자료: 정부, 「2027년도 예산안」, 2026.9.

6) 코드: 일반회계 3069-300

7)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목적예비비의 경우, 2027년에도 최고가격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고가가격제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이 국제정세 변동과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실제 손실보전액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집행요건 등을 검토하여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손실보전 규모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최대 소요액을 본예산에 모두 반영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요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6년 11월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2분기 손실보전액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정유사에서 제출한 실제 판매실적 및 손실발생액 등에 관한 자료가 축적되면, 정부안 편성 시보다 구체적인 손실보전 소요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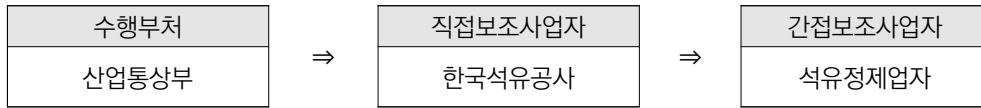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종료시점 및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실제 손실발생 규모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종료시점별 손실보전 소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최고가격제 시행 상황, 목적예비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7년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정부의 가격규제로 인해 정유사에 발생한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성격의 재정지원으로, 일반적인 민간 경상보조사업과 지원 목적 및 정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의 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집행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예산안을 민간경상보조(320-01목)으로 편성하였고, 한국석유공사가 최고액정산위원회 등의 운영을 지원한 후 석유정제업자에게 손실보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즉, 한국석유공사는 동 사업의 직접보조사업자가 되고, 석유정제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

8) 다만, 산업통상부는 2분기 손실보전 재정지원금액이 결정되더라도, 4분기의 국제유가, 운임·보험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손실보전 소요 추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7년도 석유가격 안정화 지원 사업 집행절차]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6년 7월 1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하여 손실보전액의 산정기준과 신청·심사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동 규정은 석유정제업자의 원가와 적정 이윤 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액을 산정하고,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검증을 거쳐 재정지원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손실보전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석유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에 따라 석유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를 정산하는 일반적인 민간경상보조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집행관리 측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승인된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집행잔액이나 목적 외 사용액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손실보전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석탄 분야의 최고가격 손실보전 재정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동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석탄 최고가격 손실보전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사업수행주체로 하여 석탄광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년도 석탄광업자의 생산원가와 고시가격 간의 차액을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유사 사례를 참고하되,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보전의 성격과 지급방식을 고려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정산 및 사후관리 절차가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¹⁾은 5년 후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신소재·소자·장비·공정·패널의 패키지형 R&D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아산시에 8인치급 첨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 9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 플랫폼구축(R&D)	-	-	-	9,300	9,3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첫째,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와 총사업비, 사업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8인치급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신소재·소자·장비·공정·시스템에 대한 패키지형 R&D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후 9월말 현재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231-304

산업통상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기준 동 사업은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3,971억원과 지방비 550억원, 민자 679억원으로 구성된다.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 개요(안)]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027.4.~2033.12.(7년)
총사업비	· 5,200억원(국비 3,971억원, 지방비 550억원, 민자 679억원)
사업내용	· (R&D) 5년 후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선점을 위해 신소재·소자·장비·공정·시스템의 패키지형 기술개발 · (인프라) 8인치급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 장비 구축 및 기업 활용 지원
대상입지	· 충청남도 아산시
사업시행주체	·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자료: 산업통상부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경우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현재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10월 중 조사 결과에서 “사업 시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7년 예산안에 93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2)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26년 2월 10일부로 폐지되었으나, 동 사업은 부칙 제7조3)에 따라 예비타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국가재정법」 부칙 〈법률 제21341호, 2026.2.10.〉

당성조사 중인 사업에 해당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고, 총사업비 규모나 지원범위⁴⁾, 2027년 사업비 인정액 등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이며, 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 R&D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기보다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프로그램에 속하는 세부사업으로, 디스플레이 공급망 내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R&D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그런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프로그램 내 22개 세부사업 중 20개 세부사업은 모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로 지원되나, 2027년 신규로 편성된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과 ‘첨단소재공정고도화및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R&D)’ 2개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산업통상부 설명에 따르면 2026년 9월 현재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 연구진과 부처 간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프로그램의 회계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회계	세부사업	2027 예산안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일반회계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9,300
		첨단소재공정고도화및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R&D)	4,200
	소특회계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R&D) 등 20개	1,897,441
		합계	1,910,941

자료: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5)에 따른 소특회계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첨단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개발·검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소특회계의 설치 목적 및 지원대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동 프로그램에 편성된 22개 세부사업 중 20개 사업을 소특회계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프로그램에 속하면서 사업목적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에 있는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할 경우 유사한 정책목적을 가진 사업 간 재원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특회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회계설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일반회계로 편성된 첨단디스플레이국가연구플랫폼구축(R&D)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8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6) 동 사업 외에 ‘첨단소재공정고도화및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해서도 소특회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의 2026년 대출 실행액을 고려한 2027년 예산안 조정 필요

가. 현 황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 사업¹⁾은 2025년 미국의 관세조치 등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 시설자금, M&A자금, R&D자금,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

[2027년도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	-	2,858	2,858	2,847	△11	△0.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사업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자금수요 기업에 추천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이 산업은행 등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기업규모에 따라 중견기업은 1.5%p, 중소기업은 2.0%p의 이자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 및 M&A 투자비, R&D 비용, 경영안정자금이며, 기업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 그 외 자금은 100억원이다.²⁾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1139-302

2) 철강·알루미늄·구리 본제품의 경우 2025년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2026년 9월 현재까지 50%의 관세율이 이어지고 있고,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품목별로 상이하나 2026년 9월 현재 25% 수준이 부과되고 있다.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지원계획]

지원대상	이차보전율	상환조건	기업별 지원한도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 ① HS 코드상 72, 73, 74, 76 류의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②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대 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 ③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①,② 의 품목과 관련된 원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 중소기업 : 2.0%p · 중견 : 1.5%p	· 시설·M&A 자금 :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 R&D·경영안정 :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 기업별 대출한도 : 최대 100억원 *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이차 보전 지원 대출한 도 1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 예산을 통해 지원한 신규대출 1,5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27억 7,500만원과 사업관리비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예산	2027 예산(안)
이차보전금	(신규대출) 1,500억원 × 평균 1.85%p = 2,775	(기존대출) 1,500억원 × 평균 1.85%p = 2,775
사업운영비	83	72
합계	2,858	2,847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 사업은 2026년 실행을 목표로 한 1,500억원 이상의 용자추천이 이루어졌으나, 9월 말 기준 대출 실행액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6년 대출 실행규모를 반영하여 이차보전금 예산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동 사업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신규로 실행한 대출원금 1,50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2026년 3월 시행계획 수립 후 취급금융기관을 선정하였고, 4월~5월 1차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한 결과, 총 75건에 대해 1,294억원이 접수되었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중 심사를 거쳐 총 75건, 1,284억원에 대해 용자추천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6월부터 7월까지 2차 공고·접수 결과 총 21건, 417억원이 접수되었고, 이 중 20건, 377억원에 대한 용자추천서가 발급되었다. 결과적으로 1·2차 용자 신청액은 1,711억원이며, 이 중 1,661억원의 추천이 이루어졌고, 이는 당초 목표로 한 1,500억원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신규대출 접수·추천·실행 현황]

(단위: 억원, 건)

구분	접수(기업)		선정(전문기관)		대출 실행(은행)	
	대출원금	신청건	대출원금	추천건	대출원금	승인건
1차 공고 (4.22.~5.21.)	1,294	75	1,284	75	766	53
2차 공고 (6.12.~7.15.)	417	21	377	20	141	13
합계	1,711	96	1,661	95	907	66

주: 2026년 9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2026년 9월 말 기준 1·2차 공고를 통해 총 95건, 1,661억원의 용자가 추천된 데 비해, 실제 대출이 실행된 규모는 66건, 907억원으로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7년도 이차보전 예산안은 2026년 중 1,5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된 만큼, 향후 실제 대출 실행규모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의 일부가 불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 실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도 이차보전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금의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정부안		수정(안) - 예상	
	2026 예산	2027 예산(안) (A)	2027 예산(안) (B)	차액 (B-A)
이차 보전금	(신규대출) 1,500억원×평균 1.85%p = 2,775백만원	(기존대출) 1,500억원×평균 1.85%p = 2,775백만원	(기존대출) 1,248.9억원×1.85% ×12/12개월 ≒ 2,238	△537

주: 수정(안)은 2026년 9월말 대출실행액 및 실행 예상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최종 대출 실행 가능액으로 재산정 필요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동 사업의 1차 공고를 통해 추천된 75건의 대출실행 기한은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이 가능함을 고려할 때 2026년 11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2차 공고를 통해 추천된 20건의 경우에도 기한 연장 가능성을 고려 시 2026년 12월 말에 실제 대출 실행액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국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시 실제 소요액만큼의 예산이 의결되도록, 동 사업의 2026년 대출 실행 예상액을 면밀하게 산정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사업 채용지원금의 지급 필요성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등 논의 필요

가. 현 황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사업¹⁾은 현대차 등 기업 중심 아카데미를 구축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지역별로 기 구축되어 있는 모빌리티센터와 연계하여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 대상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수료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에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첨단산업아카데미	-	-	-	6,052	6,052	순증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	-	-	2,000	2,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예비취업자 100명과 재직자 112명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12억 8,000만원과 채용지원금 7억 2,000만원으로 구분된다.

[2027년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교육과정 개발·운영	· 예비취업자(100명) 및 재직자(112명)에 대한 교육비	1,280
채용지원금	· 80명 × 150만원 × 6개월 = 720백만원	720
합 계		2,000

자료: 산업통상부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3161-353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산업통상부는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수료생이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채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특정 산업 분야 취업자에 대한 별도의 채용지원금 지급 필요성과 지원단가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지원 종료 이후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채용지원금은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이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월 1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90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7년 80명에 대한 채용지원금 7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채용지원금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목적	미래차 전환 대응, 전기·전자·IT 등 기술융합 전문인력의 지역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 적시 공급
지원대상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교육수료(예비취업자) 후, 권역 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지급금액	1인당 최대 900만원(월 1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방법	실근속 및 4대 보험 등 확인 후 취업자 계좌로 월별 지급
지원규모	80명(예비취업자 수료생의 80%)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 비영리협단체 등(교육기관)
소요예산	720백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친환경·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기·전자·IT 등 기술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해 자동차 부품회사 등 산업현장에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미래모빌리티라는 특정 산업 분야 기업 취업자에게 별도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 지원단가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지원 종료 이후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 사업은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수료생 중 중소·중견 부품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융합 전문인력 확보 및 고용유지는 미래모빌리티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모빌리티 분야 취업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채용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이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미래자동차로의 급격한 전환을 직면하고 있으며, 화학이나 전자 등의 분야에 비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²⁾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는 미래모빌리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부족 원인으로 구직자의 대기업 취업 선호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채용지원금이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근로조건의 구조적인 격차를 해소하거나 장기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부는 월 1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유사 목적의 타 사업과 비교하여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2026년 기준으로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월 6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³⁾ 즉,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월 지원금이 12개월까지는 80만원(기업+개인), 13~24개월 동안에는 월 20만원(개인)씩 지원되는 구조이다.

또한, 산업통상부의 조선업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에도 취업자에게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채용지원금 규모(월 150만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⁴⁾

2) 산업통상부는 미래차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률은 반도체(1.6%), 전자(2.6%), 화학(3.3%) 등에 비해 3.5% 수준으로 인재확보 실패 시 국가의 부품 공급망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역에 따라 차등이 있으나, 미래 모빌리티 아카데미가 지역 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비수도권'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4)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지원대상이 자율주행, SDV, 차량용 AISW 등 미래차 첨단분야의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채용지원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비교]

구분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채용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2026)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지원목적	미래차 전환 대응, 전문인력의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 적시 공급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지원 및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지원대상	아카데미 교육수료 후, 권역내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 정규직 취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당해 기업
지급금액	1인당 최대 900만원 (월 150만원, 최대 6개월)	(청년인센티브) 1인당 최대 480만원 - 반기별 120만원, 최대 4회 (기업지원금) 1인당 최대 720만원 - 월 60만원, 최대 12개월

자료: 산업통상부

마지막으로, 취업 직후부터 6개월간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또한 부품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라는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정규직으로 취업이 확인되면 6개월간 매월 150만원씩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그 이후 이직 등이 발생할 경우 고용유지를 통한 자동차 부품기업 인력 확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모빌리티 아카데미 채용지원금은 미래모빌리티라는 특정 산업 분야 취업자에게 별도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지원 필요성과 지원단가, 지원방식, 지원 종료 후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종(연구개발, 평가인증, 품질관리 등)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조선업 현장전문인력 등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지방비 매칭을 통한 지원기간 확대 및 지급방식 개선(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법률 개정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가. 현 황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¹⁾은 서남권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 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 1조 5,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	-	-	1,500,000	1,50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매년 1조 5,000억원씩 총 6조원을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할 계획이며, 2027년 예산안에는 ① 반도체산업 조사 분석 및 지원시책에 300억원, ②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원, ③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000억원, ④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00억원, ⑤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원 등이 예시로 포함되었다.²⁾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3171-301

2) 2027년 예산안의 최종 사업 내용 및 사업별 예산 규모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7년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예산안
①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시책	30,000
②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000,000
③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	200,000
④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200,000
⑤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00
합계	1,500,000

자료: 산업통상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투자는 2026년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6월 30일 '서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협약식'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였고, 8월 25일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888)」 의결을 조건으로 하여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경과]

구분	주요내용
2026.6.29.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 계기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2026.6.30.	서남권 반도체 800조원 투자협약식 진행
2026.7.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특별법 시행
2026.7.24.	기획예산처 장관-전남광주시장 면담(통합재정지원 요청 등)
2026.8.25.	출연사업 근거가 될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예타 면제 국무회의 의결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통합재정지원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이 중 산업통상부의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지원 6조원 외에도,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기금출연 및 이관사무 지원 명목으로 총 14조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재정 지원 계획]

(단위: 조원)

소관	사업명	회계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통합지방정부지원 기금출연금	미래대응 기금	2.85	2.85	2.85	2.85	11.4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		0.65	0.65	0.65	0.65	2.6
산업통상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5	1.5	1.5	1.5	6.0
합 계			5.0	5.0	5.0	5.0	2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집행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 법 개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연차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7년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산업통상부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반도체특별회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신설될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반도체지원계정)에 2027년부터 연간 1.5조원씩 4년간 총 6조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동 사업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 및 계정별 사용용도, 기금 운용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888)」이 2026년 8월 28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률안에 따르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되고, 이 중 반도체지원계정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결산상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8.28.)」 기금 설치 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7조의2(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7조의3(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원기금은 일반지원계정과 반도체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일반지원계정은 회계연도마다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전년도 일반지원계정 결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반도체지원계정은 회계연도마다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u> 2. 전년도 반도체지원계정 결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이와 같이 동 사업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 근거 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건부로 면제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3)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건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다.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2027~2030년 (총 4년)	6조원 (국고 100%)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면제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출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개정을 조건부로 면제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⁴⁾에 따르면,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 근거법 개정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역시 법 개정 이후에 착수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⁵⁾으로, 사업계획 수립 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연차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집행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 법 개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산업통상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기금운용계획 수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 일례로 2025년 예타 면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전에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되었던 산업통상부의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사업과 '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경우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2026년 예산 일부(각각 525억 7,400만원, 22억 9,100만원)가 불인정되었고, 해당 금액만큼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연차별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7년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산업통상부는 기금 출연 이후에도 개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타당성, 집행상황 및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에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을 위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추진하는 과정에는 지역의 개발 수요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제 투자계획 및 수요, 국가 반도체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개별 사업의 내용을 기획하고, 집행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반도체지원계정에 출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기금에 대한 관리·운용과 집행 이후 용도 부합성에 대한 점검 및 시정권고 등의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7)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⁸⁾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1명을 포함하여 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교육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⁹⁾,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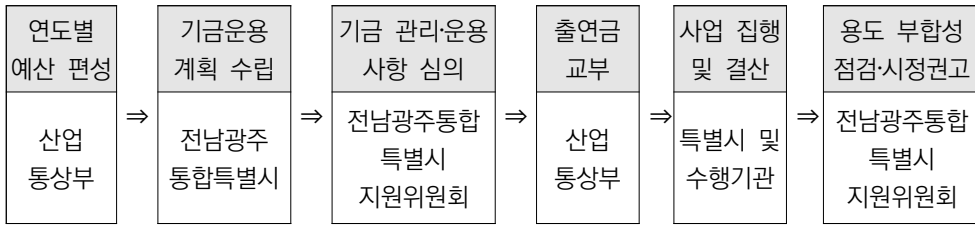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특별시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조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현행 법률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과 기금의 집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888)」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 2026년 10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등 총 18명이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집행절차(안)]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은 기금 출연 방식은 통합특별시가 지역의 여건과 기업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별 사업의 선정 및 집행 과정에 산업통상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우려도 있다. 즉,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반도체지원계정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의 국비가 출연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금 출연 이후에도 국가 반도체 산업정책과의 정합성 및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¹⁰⁾

특히, 국무총리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일반지원계정은 물론 반도체지원계정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집행 결과 및 성과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운용에 대해서는 특별시에 시정을 권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2026년 8월 31일 위촉된 민간위원 17명¹¹⁾ 중에는 반도체 산업 또는 반도체 기술을 전문 분야로 하는 위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²⁾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율적인 기금 운용을 보장하면서도 국가 반도체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앙관서로서 기금 출연 이후 개별 사업의 산업정책적 타당성, 기업 투자계획과의 연계성 및 기존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별 집행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위원회의 기금 사업계획 심의·점검 과정에서 반도체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참여 등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7의5에 근거하여, 지원위원회에서 기금의 편성·집행 실태 점검, 필요시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11) 민간위원 17명은 도시개발(3명), 지방분권(2명), 교육자치(1명), 산업(3명), 에너지(1명), 농수축산 및 해양(3명), 문화관광(3명), 복지(1명)으로 구성된다.

12)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지원, 한 총리,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 될 것’”, 2026.8.31.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사업의 예타 결과 대비 계획 변경에 따른 연차별 재정소요 관리 필요

가. 현 황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 기반구축(R&D) 사업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육성 및 소자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산연계형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7억 4,400만원 감액된 97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R&D)	100	115,737	115,737	97,993	△17,744	△15.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주)SK하이닉스의 실제 양산 팹(Fab)과 동일한 환경의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2025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 7년이고, 총 사업규모는 4,469억 6,300만원이며 이 중 국비 지원액은 3,736억 900만원이다. 국비 지원은 주로 장비구축비와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재단법인 트리니티팹의 운영비 중심으로 지원되고, 건축 및 시설부대경비는 민간에서 주로 부담할 계획이나 총사업비에서는 제외되었다.²⁾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5402-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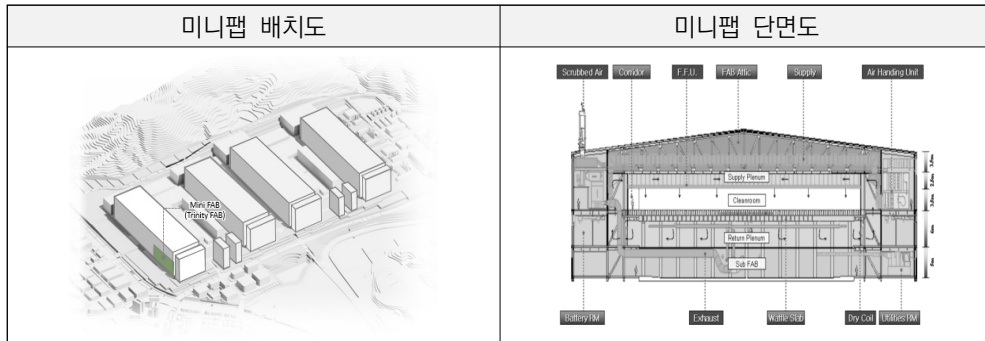
2)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 및 시설부대경비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건축 및 시설부대경비는 총사업비에서는 제외하고, 편익 창출에는 포함되었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기간	· 2025~2031년(7년)
총 사업비	· 4,469.63억원(국고 3,736.09억원, 지방비 577.23억원, 민간 156.31억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소부장 육성 및 소자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산연계형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 (시설) 3,300㎡ 규모의 Class 100 이하 클린룸(총사업비에서 제외, 민자) · (공간) 소부장 기업 입주공간 + 반도체 5대 공정별 실증공간 · (장비) 12인치 웨이퍼 기반, 공정 및 계측장비 약 40대
대상입지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내
사업시행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재)트리니티팹

자료: 산업통상부

[미니팹 배치도 및 단면도]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전공정 및 계측 보조장비 도입을 위한 장비구축비 815억 9,400만원과 트리니티팹 본격 운영을 위한 운영비 163억 9,900만원으로 구분된다.

[2027년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미니팹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25 예산	2026 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액 (B-A)
장비 구축비	· 2026년 발주장비(24종) 잔금: 56,401 · 2027년 발주장비(14종) : 25,193	-	115,260	81,594	△33,666
운영비	· 트리니티팹 본격 운영을 위한 제경비	100	477	16,399	15,922
합 계		100	115,737	97,993	△17,744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첫째, 산업통상부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사업의 장비 구축계획을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변경하여 조기확대 구축함에 따라 2027년 운영비 소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 등 총사업비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연차별 운영비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재정소요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연차별 투자규모를 살펴보면, 2025~2026년 국고 투자규모는 1,158억 3,700만원으로 실제 정부 예산 투입 규모와 동일하다. 그러나 2027년 예산안(979억 9,300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2027년 투자규모(832억 7,000만원)에 비해 147억 2,300만원이 확대 편성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연차별 투자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국고	4.35	1,154.02	832.70	516.41	436.52	471.56	320.53	3,736.09
지방비	-	9.23	24.32	103.45	135.97	147.80	156.47	577.23
민자	-	13.45	13.45	25.21	25.21	35.29	43.70	156.31
합 계	4.36	1,176.70	870.46	645.07	597.70	654.66	520.70	4,469.63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2025.2.

당초 예타 결과 대비 확대 편성된 147억 2,3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장비비에는 1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135억 900만원은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장비구축비의 경우 2026년에 2027년까지 구축할 장비 목록을 당초 11종에서 38종으로 변경하면서 일부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고, 운영비의 경우 장비구축 계획 변경에 따라 2027년부터 미니팍 클린룸 시설 운영 비용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

[내역사업별 예타 결과 대비 예산안 편성 차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역	2027		
		예타결과 (A)	예산안 (B)	증감액 (B-A)
장비 구축비	· 2026~2027년 장비구축 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발생 - (당초) 11종 → (변경) 38종	80,380	81,594	1,214
운영비	· 장비구축 계획 변경(조기구축 및 확대)에 따른 미니팍 클린룸 시설 운영 관련 비용 증대	2,890	16,399	13,509
합 계		83,270	97,993	14,723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산업통상부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계획한 장비구축비의 총규모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비의 종류와 구축 시기를 조정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7년까지 구축할 장비가 당초 11종에서 조기구축(+14종), 시점조정(△3종), 미구축(△3종), 신규구축(+19종) 등의 변경을 통해 38종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장비구축에 수반되는 시설 운영비 등의 소요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2027년 운영비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투자계획보다 135억 900만원 증가하게 되었다.

3) 2027년 운영비에 대한 국고는 당초 계획대비 증액되었으나, 지방비와 민자는 당초 예타 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2026~2027년 장비구축 계획 변경 현황]

구분	예타 결과	계획 변경				변경 계획
		조기구축	시점조정	미구축	신규구축	
2026~2027년 구축 장비	11종	+14종	△3종	△3종	+19종	38종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R&D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환경의 변화나 실제 장비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구축 대상 장비의 종류 및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장비 구축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 등의 타당성을 검증받은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2026~2027년 동안 구축할 장비가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 조정되었고, 이 중 당초 계획에 없던 19종은 장비를 신규로 구축하기로 하였다.⁴⁾ 또한, 장비 조기구축 및 확대구축에 따라 2027년 운영비가 당초 계획 대비 135억원 이상 증액된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⁵⁾

한편, 예타 통과 R&D 사업의 계획이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제1항⁶⁾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변경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해 왔다.⁷⁾ 그러나,

4)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미니맵 기능의 시의성과 효과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장비구축계획을 단축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비영리재단의 신규장비도입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예비타당성조사 권고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5)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7년 운영비는 당초 예타 결과 대비 증액되었으나, 2028년부터는 운영 수익을 통해 당초 예타 결과 대비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6)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3. (중략)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도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일례로 우주항공청의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사용발사체로의 전환 계획 및 사업비 증액을 위해 2025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플래그십

2026년 2월 「국가재정법」 제38조가 개정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폐지됨에 따라 동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제도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4⁸⁾에 신설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과 같이 총사업비와 사업목표의 변경 없이 추진 과정에서 장비 구성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그 조정 내용과 재정소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R&D) 사업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이고,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장비구축 시점 변경, 구축대상 장비 확대 등의 계획변경이 있었다. 다만, 동 사업의 계획변경은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변경 없이 장비의 종류와 구축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한 운영비 등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6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장비 중 장비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장비는 심의 결과에 따라 구축 여부와 인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의 결과를 2027년 장비 구축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사업'의 경우 슈퍼컴퓨터 핵심부품인 GPU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확대를 위해 2024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은 바 있다.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추진심사를 거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에 미달하여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제1항·제2항¹⁰⁾과 제18조제1항¹¹⁾에 따라 3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친다. 장비심의를 차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구체화된 장비에 대해 실시하는 ‘본심의’와 이후 구체화되는 장비에 대한 ‘상시심의’로 구분되며, 본심의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기획예산처에서 차년도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장비심의를 완료되지 않은 장비는 심의 결과에 따라 장비의 구축 여부 뿐만 아니라 구축 수량 및 인정금액이 확정되므로, 장비 구축계획과 재정소요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비심의를 통한 면밀한 검증이 중요하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26년 24종, 2027년 14종을 도입하여 총 38종의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중 2027년 14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본심의를 완료한 반면, 상시심의를 통해 구축 예정인 2026년 장비에 대해서는 심의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금 및 잔금을 2027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26년 구축 예정인 24종 중 22종은 장비심의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종은 2026년 11월 중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장비의 2026년 예산은 총 974억 1,100만원이며, 이 중 장비심의를 완료되지 않은 2종에 편성된 예산은

9)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0)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중략)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 연구시설장비의 기술분야 및 표준분류 등을 고려하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심의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총괄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1)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8조(심의대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3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연구시설장비로 심의한다. (2026.4.23. 일부개정)

130억 2,700만원으로 전체의 13.3%를 차지한다. 또한 미심의 장비 2종에 대해서는 2027년 예산안에도 72억 1,400만원의 증도금 및 잔금이 편성되어 있다.

[2026~2027년 구축장비의 장비심의 현황 및 예산]

(단위: 종, 백만원)

구축연도	장비심의 현황	장비 수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2026	심의 완료	22	84,384	49,187
	심의 미완료	2	13,027	7,214
	소계	24	97,411	56,401
2027	심의 완료	14	-	25,193
합 계		38	97,411	81,594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장비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2종은 모두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당시의 구축 계획과 달리 구축 시기를 앞당기거나 신규로 구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장비들로, 장비심의 과정에서 변경 사유의 타당성, 구축 필요성 및 사양의 적정성 등이 충실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 구축 예정 장비 중 장비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2종은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장비의 구축 여부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장비의 사양·수량 및 금액 등이 당초 계획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미심의 장비에 대한 심의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¹⁾은 남부권(호남·동남·대경)의 지역 특화 반도체 분야별로 혁신기관과 연합공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산학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에 59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 인력양성	-	-	-	5,910	5,91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2027년 동 사업을 통해 남부권 3개 권역별 지역특화 반도체 분야²⁾에 대한 교육과정 30개를 개발하여 예비취업자 320명과 재직자 350명에 대한 교육과 산학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남부권 3개 권역의 교육과정 개발비 1억 7,000만원과 교육과정 운영비 42억 3,000만원, 산학프로젝트 운영비 10억 6,000만원, 교육 인프라 지원비 3억원,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비 1억 5,000만원으로 구분된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5404-304

2) (호남권) 첨단패키징/설계, (동남권) 전력반도체, (대경권) 소재·부품

[2027년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교육과정 개발	· 반도체 특화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 7.6백만원×10개 과정×3권역×9/12개월=170	170
교육과정 운영	· 예비취업자: 11.4백만원×320명×9/12개월=2,735 · 재직자: 5.7백만원×350명×9/12개월=1,495	4,230
산학프로젝트	· 47백만원×30건×9/12개월=1,060	1,060
교육인프라 지원	· 100백만원×3권역=300	300
사업관리비	· 전문기관 사업관리비 1식=150	150
합계		5,910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은 기존 반도체아카데미 사업과 교육 대상 및 내용의 유사성이 높고, 서남권의 경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통해 인력 양성 부문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의 성과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동남권 및 대경권의 특화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기획할 필요가 있다.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은 호남권-동남권-대경권의 지역 특화 반도체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역의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신규 기획되었다.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은 권역별 혁신기관3)-연합공대-앵커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담당하고, 교육과정은 기초 교육과 산업현장의 실증기반 교육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실증기반 교육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학과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계하고, 지역 내 특화단지와 앵커기업, 실증센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검증해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 권역별 혁신기관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도체 장비를 기 구축·운영 중인 기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목적	남부권 지역특화 분야별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증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원대상	남부권 취업준비생, 석·박사, 재직자
교육분야	권역별 특화분야: (호남) 패키징·설계, (대경) 소재·부품, (동남) 전력반도체
교육내용	· 산업현장 문제해결형(PBL) 교육 · 연합공대+앵커기업+공동교육운영 · 공공Fab·기업 인프라 공동활용 · 교육-채용 연계
추진체계	권역별 연합공대+앵커기업+지역혁신기관 컨소시엄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은 기존에 산업통상부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아카데미⁴⁾ 사업과 지원대상, 교육분야 및 교육내용 등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측면에서 반도체아카데미(이하 “기존사업”)는 예비취업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재직자를 고루 지원하고,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이하 “신규사업”)은 이 중 남부권의 취업준비생, 석·박사, 재직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중첩된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설계, 패키징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에서도 소재·부품, 전력반도체, 설계, 패키징 분야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력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반도체 역시 2025년 반도체아카데미 교육과정 중 ‘전력반도체 소자/패키징 및 신뢰성 평가’에 관한 기초 및 심화과정을 경남·부산TP 교육장에서 운영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도 기존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업계 주도의 직무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원지역 측면에서도 신규사업이 서남권·대경권·동남권 지역을 기반으로 교육생을 지원할 계획이나, 기존사업에서 이미 전국단위 교육을 운영하고 있

4) 코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5404-305

고, 특히 2025년부터는 경남·부산·충남 지역에서 비수도권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 간 비교]

구분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반도체아카데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사업기간	2027~2031년	2023~2027년
지원대상	남부권 취업준비생, 석·박사, 재직자	예비취업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재직자
교육분야	소재·부품 , 전력반도체, 설계,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설계, 패키징
교육내용	· 산업현장 문제해결형(PBL) 교육 · 교육- 채용 연계 · 공공Fab·기업 인프라 공동활용	· 산업계주도 직무특화 교육과정 · 교육- 채용 연계 , 대학 학점인정형 교육 · 한국반도체아카데미 인프라 활용
교육운영	연합공대·앵커기업·공동교육운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산업계 주도
지원지역	서남·대경·동남	전국 (수도권 포함) ※ 비수도권(경남·부산·충남) 과정 진행
2027 예산안	5,910백만원	14,005백만원 (비수도권 과정: 2,400백만원)
사업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반도체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2027년까지 추진한 후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 문제는 2028년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반도체아카데미 사업의 운영성과와 교육과정, 교육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남권의 경우 2027년부터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5)’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통해서 700억원 규모로 대규모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안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에서 별도로 서남권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통합재정을 통한 인력양성과의 차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5) 코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3171-3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은 기존 반도체아카데미 사업과 교육 대상 및 내용의 유사성이 높고, 서남권의 경우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을 통해 인력양성 부문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의 성과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동남권 및 대경권의 특화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기획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지역투자촉진 사업¹⁾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추경 대비 446억 200만원 증액된 2,959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지역투자촉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투자촉진	158,190	251,347	251,347	295,949	44,602	17.7

주: 1) 2026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4조²⁾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자·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04년부터 ‘지역투자촉진’ 사업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사업장 신·증설을 지원해 왔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3-306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동 사업은 ①지방투자촉진보조금, ②지방투자보조금, ③지방투자지원의 3개 내역으로 구분된다. ①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는 2026년까지 선정된 기업들의 투자완료 건에 대한 정산소요 358억원이 편성되었다. ②지방투자보조금은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전달 체계와 보조율 등을 개선하여 2027년부터 신규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할 계획으로 2,579억 2,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③지방투자지원은 동 사업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22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 지역투자촉진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26 추경(A)	2027 예산안(B)	증감액 (B-A)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2027년 투자완료 기업 및 2026년 신청 기업 보조금 미지급액 지급	250,283	35,800	△214,483
지방투자보조금	· 57개사×6,464백만원×70%(선지급) = 257,927	-	257,927	257,927
지방투자지원	· 관리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1,064	2,222	1,158
합 계		251,347	295,949	44,602

자료: 산업통상부

2027년 신규 추진하는 지방투자보조금의 경우 대기업 3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30억원 이상의 설비투자에 대해 최대 40%까지 보조할 계획이며,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은 지방우대지수와 투자내용(지방이전 또는 신증설)에 따라 최소 8%에서 최대 40%까지 차등을 둘 예정이다. 국비 지원한도는 일반투자의 경우 투자 건당 100억원이며, 전략투자의 경우 투자 건당 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목적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산증설 투자 등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대상 투자	설비투자(건설투자나 기계장비 구입비 및 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 등)
투자규모 요건	대기업 3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30억원 이상
지원비율	설비투자액의 최소 8% ~ 최대 40% (국비:지방비 = 4:1) ※ 지방우대지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예정
국비 지원한도	투자 건당 (일반) 100억원, (전략) 400억원
사업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첫째, 산업통상부는 지방투자보조금의 기업별 지원한도를 폐지하여 동일 기업의 복수 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면서 중소·중견·대기업 간 보조율 차등도 폐지할 계획이나, 자금조달능력 및 투자여력,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규모별 적정 보조율을 설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규모 및 투자지역 등에 따라 보조율을 차등하여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금조달능력 및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투자건 및 기업당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한정된 보조금 재원이 다양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2027년부터는 기업규모에 따른 보조율 차등을 폐지하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고³⁾, 기업당 지원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3) 산업통상부는 지방투자보조금이 기업의 입지결정의 지방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 라고 판단, 기업규모별 차등 폐지는 양질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정책 목적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대신 낙후 지역의 투자 유도를 위해 균형 발전 상하위 지역 간 차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였으며, 개선되는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의 실제 보조율은 오히려 현행 대비 상향되어 기업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지원한도의 경우 현행 투자건당 150억원, 기업당 300억원에서 기업당 한도는 폐지하는 한편, 일반 트랙은 투자건당 100억원, 전략 트랙은 투자건당 400억원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보조율의 경우 입지투자에 대한 보조는 폐지하고, 신증설로 일원화하면서 기존 4~25% 범위였던 보조율을 최대 40%까지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 때 일반 트랙은 8~35% 범위, 전략 트랙의 경우 일반 보조율에 지방 이전 가산 10%p, 심층평가를 통한 가산 10%p 등을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별 차등을 두지 않고 보조율을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⁴⁾

[지방투자보조금 제도 개편 방향]

구분		현행	개편(안)
지원한도	투자건당	150억원	(일반) 100억원 (전략) 400억원
	기업당	300억원	폐지
지원기준		보조율 산식표	(일반) 보조율 산식표 (전략) 보조율 산식표 + 심층 평가
보조율	입지	5~50%	폐지
	신·증설	4~25%	최대 40% (일반) 8~35% (전략) 지방이전 가산(+10%p), 심층평가 가산(+10%p) 등
	기업 규모별	대·중·견·중소기업 간 2~25%p 차등	기업규모별 차등 폐지 (중소기업 별도 우대방안 검토 중)
지방비 매칭		(국비) 45~75% (지방비) 25~55%	지방비 대비 국비 최대 4배 ※ 국비 인센티브 방식, 지방우대지수 및 산업위기지역에 따른 차등(1~3배) 등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산업통상부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별도 우대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설비투자에 대한 보조율 개편안]

현행 ¹⁾				개편(안)		
국비 매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 매칭 ²⁾	지방이전	신증설
균형발전상위지역 (45:55)	4%	6%	8%	(2권역) 1배	18%	8%
중위지역 (65:35)	6%	8%	10%	(3권역) 2배	25%	15%
하위지역 (75:25)	9%	12%	15%	(4권역) 3배	30%	20%
산업위기대응지역 (75:25)	12%	20%	25%	(산업위기) 3배	35%	25%

주: 1) 입지보조율의 경우 2027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현행 보조율에서도 제외함

2) 전략투자자의 경우 지방정부 투자유치 노력(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라 +1배율 가산

자료: 산업통상부

물론 기업의 규모보다는 지방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창출이나 지역산업 발전 등의 정책효과를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판단할 경우 효과가 큰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투자보조금은 특정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한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수단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자체적인 투자여력 및 자금조달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필요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의 기업당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개별 투자건별 지원한도를 적용할 계획인 바, 이에 따라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여러 건의 지방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각 투자건별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므로, 기업규모에 따른 보조율 한도 차등을 두더라도 대기업 등의 추가적인 지방투자가 제한되는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2027년부터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여 지방의 성장엔진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앵커기업에 대해 지원한도 없이 최대 50%까지 보조할 계획인 바, 동 사업에서는 특별보조금과는 차별성을 두어 보편적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지방투자보조금 지원 시 기업규모별 보조율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나, 자금조달능력 및 투자여력,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 적정 보조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통상부는 2027년부터 지방투자보조금을 일반트랙과 전략트랙으로 구분하고, 전략트랙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확대 및 보조율 가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트랙별 구분기준이나 전략트랙에 대한 심층평가 및 지원수준 결정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시 개정 시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역투자촉진 사업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투자 자체의 전략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투자보조금을 ‘일반트랙’과 ‘전략트랙’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트랙에 대해서는 성장엔진과의 연계성, 고용창출, 공급망 기여 및 지역산업 발전기여 등을 고려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투자보다 건당 지원한도는 최대 400억원까지 확대하거나 보조율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편 방향은 기업의 투자내용을 판단하여 정책적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투자건이 어떤 트랙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해서도 보조율이나 보조금 지원한도⁵⁾가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에 민감하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6년 10월 현재 일반트랙과 전략트랙의 구체적인 구분기준이나 전략트랙으로 구분된 투자 건에 대한 심층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수준 결정 기준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5) 특히, 일반트랙 지원한도(100억원)의 경우 기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투자건당 한도(150억원) 보다 50억원 낮아졌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략트랙에 대한 지원 방향]

구분	주요내용
보조율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지방투자는 심층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확대 및 보조율 가산(+10%p)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공급망 기여도, 지역산업 파급효과, 지자체 인센티브 등을 종합 고려
국비 지원	· 전략투자의 경우 지방정부 투자유치 노력(정주여건 개선 등)에 따라 +1배율 가산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 현재 2027년 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검토 중으로, 연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 개정 시 전략트랙의 선정 요건을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구체화하고, 심층평가 항목별 평가방법과 보조율 가산 및 지원한도 확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사업¹⁾은 초광역권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성장엔진 산업에 앵커기업²⁾이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에 신규로 7,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5극3특성장엔진 특별보조금	-	-	-	700,000	700,000	순증

주: 1) 2026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투자요건을 만족하는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에 앵커기업이 지방 이전 또는 신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로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의 최대 40%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6,990억원과 앵커기업 평가선정 등 사후관리 예산 10억원으로 구분된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지원하고, 성장엔진 투자지원은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지원되며, 앵커기업의 평가선정 및 사후관리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2-386

2) 앵커기업이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7년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 7개 프로젝트 × 96,000백만원 ≒ 699,000	699,000
성장엔진 투자지원	· 앵커기업 평가선정, 사후관리 등	1,000
합계		700,000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비수도권의 25개 성장엔진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이 최소 투자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해당 설비투자의 최대 5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할 계획이다. 여기서 최소 투자금액 요건은 대기업의 경우 3,0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1,000억원 이상이며,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되, 행정통합지역 등은 우대할 예정이다. 국비 지원한도는 별도로 두지 않을 계획이다.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목적	대규모 전략적 지방투자 유치 및 지역 성장엔진 육성
지원대상	성장엔진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대상 투자	설비투자(건설투자나 기계장비 구입비 및 근로환경개선 시설투자 등)
투자규모 요건	대기업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이하 1,000억원 이상
지원비율	설비투자액의 최대 50% (국비:지방비=4:1)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차등 예정
국비 지원한도	지원한도 없음
사업관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2026년 8월 26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세제 등의 ① 투자인센티브와 제도·기술 등 ② 산업생태계, 인재·산업인프라 등 ③ 기업활동기반의 3축에 대해 7대 패키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극3특성장엔진 7대 정책 지원패키지]

구분		주요내용
투자 인센티브	재정	(대규모 투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중소규모 투자) 지투·외투·유턴 보조금 지원비율 등 우대 지원
	금융	(펀드) 국민성장펀드 40% 지방투자(80조원+ α), 지역펀드 조성 (보증) 1조원 성장엔진 우대보증 및 지방 정책금융 확대
	세제	(기업) R&D비용·통합투자 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에 지역별 계수를 적용하여 지방기업은 지역별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 (근로자) 지방 중기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산업 생태계	제도	성장엔진 「메가특구」 지정으로 기업활동 전주기 규제 완화
	기술	· 앵커·협력사 및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성장엔진별 대형R&D 추진 · 지역자율R&D 확대, 틈스 50% 지방 할당, 10개 창업도시 등
기업활동 기반	인재	·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AI거점+공유대학) ·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 거점국립대 계약학과 등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인프라	· 지방 핵심거점에 기업형 첨단도시, 신규 국가산단, RE100산단, M.AX 클러스터 등 기업입지 조성 · 전력·용수 적기 공급 및 '지역별 전기요금' 등 입지 경쟁력 제고 · 교통·주택·의료·문화 등 머물고 싶은 지방 정주여건 조성

자료: 관계부처합동,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내용 재구성

나. 분석의견

첫째, 5극3특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은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앵커기업의 인정 기준,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율 결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5극3특 성장엔진 분야의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7,00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투자촉진 사업은 모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정책 목적이 유사하고, 지원대상 기업과

투자유형 및 투자범위 측면에서 중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³⁾

구체적으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은 대기업의 경우 3,0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대상으로 하고, 해당 투자가 지역 성장엔진을 견인할 수 있는 앵커기업의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방투자를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차이가 있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투자보조금 간 비교]

구분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정책목적	성장엔진 분야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
지원대상	중소·중견·대기업 중 앵커기업	중소·중견·대기업
투자유형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방기업의 신·증설 투자 등	
산업분야	지역별 성장엔진 분야	(일반) 제한없음 (전략) 전략산업, 성장엔진산업 등 국비매칭 우대
투자범위	건설투자, 기계·장비 등 설비투자	
최소 투자규모	(대기업) 3,000억원 (중소·중견기업) 1,000억원	(대기업) 300억원 (중소·중견기업) 30억원
보조율	설비투자액의 최대 50% 내에서 협상에 의해 결정 (국비:지방비=4:1) ※ 국비:지방비 매칭비율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차등 예정	설비투자액의 최소 8% ~ 최대 40% 범위 내에서 협상에 의해 결정 (국비:지방비=4:1) ※ 지방우대지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예정
지원한도	한도 없음	투자 건당 (일반) 100억원, (전략) 40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성장엔진 분야에서 대기업 3,0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1,000억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이면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지원대상에도 해당할 수 있어, 양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첩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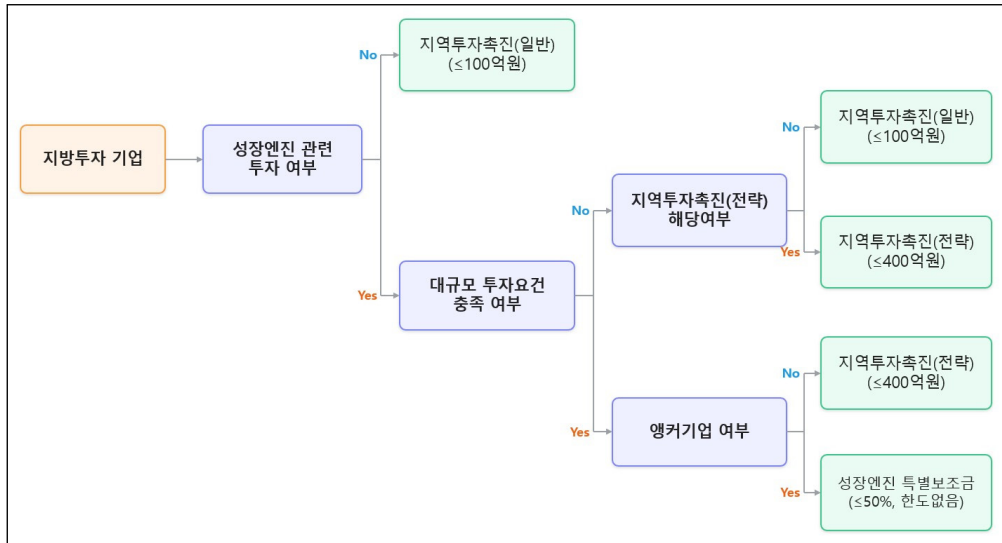
3)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은 성장엔진 산업에 한정하며,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투자 촉진 사업과 기업의 투자규모 및 국가재정 지원 수준 등 운영 전반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동일한 투자에 대하여 양 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또는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중 적용할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기업이나 지자체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 입장에서는 두 사업 중 어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 보조율의 범위나 지원한도 기준이 달라지고, 앵커기업으로의 인정 여부나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지원규모가 달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 사업 간 적용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유사한 투자에 대한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5급3특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경우 앵커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어떤 기준에 따라 앵커기업 여부를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설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두 보조금을 통한 기업의 지방투자가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설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투자 기업의 의사결정 트리]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관련하여 5극3특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고시안)은 2026년 10월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산업통상부는 연내 고시안을 마련하여 2027년 초 지원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역투자촉진 사업은 기업의 투자규모 및 국가 재정지원 수준은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중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사업을 지원받느냐에 따라 지원한도와 보조율 등의 차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지방정부에서 두 보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두 사업 간 적용기준과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율 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5극3특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며,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사업 현황]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5극3특성장엔진 특별보조금	2027~2030년 (총 4년)	2조 8,000억원 (국고 기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10호에 따라 면제

자료: 산업통상부

4)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마련 중인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할 계획인데, 지방우대지수 역시 2026년 말에 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에는 권역별 1개씩 총 7개의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7,000억원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의 최소 투자요건인 3,000억원을 기준으로 보조율 40%와 국비·지방비 분담비율 4:1을 적용하여 프로젝트당 국비 지원액을 약 96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7개 권역에 적용하여 예산규모를 산출하였다.

[2027년 5극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프로젝트 × 96,000백만원 ≒ 699,000 - (물량) 수도권 제외 4극3특 권역별 1개 대표 프로젝트 - (단가) 3,000억원 × 보조율 40% × 국비비율(4:1) = 960억원 ※ 물량, 단가는 권역별 투자수요,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 등에 따라 변동 가능 	699,000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됨 이후 2026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착수되지 않은 상황으로, 적정성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먼저,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⁵⁾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예타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0년 3월 신설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 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시 예타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 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¹⁾은 국내 제조AX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공급망 대상 제조 AI솔루션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기업의 제조AX설비 구축을 보조하며, 제조AX 현장 인력양성 및 AI로봇 공공보급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계획안 1,192억 3,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	-	-	119,239	119,239	순증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실증확산	-	-	-	26,400	26,400	순증
제조AX설비구축지원	-	-	-	49,929	49,929	순증
지역기반제조AX 현장인력양성	-	-	-	13,000	13,000	순증
AI로봇공공보급	-	-	-	30,000	30,000	순증

주: 1) 수정은 2026년 8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①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 실증확산, ② 제조AX설비구축 지원, ③ 지역기반제조AX 현장인력 양성, ④ AI로봇공공보급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은 공급망 내 앵커기업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조AI 솔루션을 공정 내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는 12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2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332-300

② 제조AX설비구축 지원 사업은 제조 공정을 포함하는 제조 전후방 분야를 대상으로 제조AX에 필요한 핵심 AX 장비와 설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구축비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는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499억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③ 지역기반제조AX 현장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별 거점 대학, AI 전문기업, 제조 기업 등과 연계하여 주력산업에 특화된 제조AX 실무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미취업자재학생 1,500명과 재직자 1,000명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비 130억원이 편성되었다.

④ AI로봇공공보급 사업은 휴머노이드 등 AI로봇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 및 출연연 등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보급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는 휴머노이드 200대 보급을 위해 3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공급망특화형 제조AI 솔루션 실증확산	· 공급망특화형 제조AI 솔루션 실증확산 - 12개 과제×2,933.3백만원×9/12개월	26,400
제조AX 설비구축 지원	· 제조AX 설비구축 보조 및 기획평가관리비 - 27개 과제×6,000백만원×국비 30~40% =48,80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 1,129백만원	49,929
지역기반 제조AX 현장인력 양성	· 재학생 1,500명×8백만원 = 12,000백만원 · 재직자 1,000명×2백만원×국비 50% = 1,000백만원	13,000
AI 로봇 공공 보급	· 휴머노이드 등 AI 로봇 200대 공공 보급 - 200대×150백만원 = 30,000백만원	30,000
합계		119,329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첫째,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며,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2)에 따라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2027년도 계획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부처에서 요구한 총 사업규모는 1조 855억원이다.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 예타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2027~2030년 (총 4년)	10,855 (국비 5,481, 민자 등 5,374)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10호에 따라 면제

자료: 산업통상부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총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3)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예타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시 예타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0년 3월 신설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적정성 검토 결과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단가 등 변경에 따라 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은 개별 AI 솔루션의 성능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AX 성과가 공급망 전체의 성과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은 실제 거래관계에 있는 앵커기업 1개사와 협력기업 4~5개사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급망 전체의 공동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기업별 병목요인을 진단하여 이에 적합한 AI 솔루션을 적용·실증하려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는 2027년 12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컨소시엄당 22억원씩 총 264억원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72개 과제에 1,5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도별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 실증·확산 계획]

(단위: 개,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과제 수	12	20	20	20	72
국비 지원	264	440	440	440	1,584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개별 제조기업의 AX 전환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들⁴⁾과 달리 실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의 공급망 단위로 구성하고 공동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공급망 단위에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앵커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특화 AI 솔루션’을 적용하고, 협력기업 4~5개사에 대해서는 앵커기업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공급망 생산량 확대를 공급망 공동목표로 설정한 경우 앵커기업에는 생산계획 AI, 협력기업에는 설비 예지보전, 품질검사, 재고관리 등 각 기업의 병목요인에 대응하는 AI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4) 일례로 산업통상부의 ‘산업AI 솔루션 실증·확산 지원(코드: 일반회계 3171-390)’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형 제조AX 선도모델(코드: 일반회계 2111-303의 내내역사업)’ 사업 등이 있다.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의 앵커기업-협력사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앵커기업	·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시장분석 및 수요예측, 이를 기반으로 협력사 대응 요구 사항(생산량 증대·감소, 원자재 대체)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솔루션 모델 선정
협력사 (4~5개사)	· 공급망 대응 요구사항별 생산계획, 품질관리, 재고관리 및 원자재 대체를 위한 맞춤형 AI 모델 구축 ※ (예시) 생산계획 선제 대응 AI 모델,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AI 모델, 설비 예지보전 AI 모델, 재고 효율화 AI 모델, 소재 성분결함 및 품질 분석 AI 모델, 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AI 모델 등

자료: 산업통상부

이러한 사업방식은 개별기업이나 개별공정에 AI 솔루션을 적용하는 기존 사업과 달리, 각 기업에서 발생하는 AX 성과를 실제 거래 관계로 연결된 공급망 전체의 성과로 연계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공급망 AI 솔루션 모델별 실증 테스트 성과목표를 살펴보면, 앵커기업에는 공급망 리스크 예측 AI 모델 적용을 통한 리스크 조기 탐지 성과나 시장분석·수요예측 AI 모델 적용을 통한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등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협력기업들에 대해서는 개별 요구사항에 따른 AI 모델 적용에 따른 성과가 공급망 공동목표에 어떻게 연계되고 기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제시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즉, 협력기업에 적용되는 AI 모델의 성과목표인 사고 위험요인 탐지율 80% 이상, 고장 예측 정확도 80% 이상, 재고 회전율 10% 이상 향상, 품질 판정 정확도 85% 이상 등의 지표는 각 협력기업에 도입된 AI 솔루션의 성능이나 해당 기업의 공정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해당 성과가 앵커기업 및 다른 협력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공급망 공동목표 달성에 기여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의 앵커기업-협력사별 성과 목표 수준]

구분	AI 모델	성과 목표	목표 수준
앵커 기업	공급망 리스크 예측 AI 모델	공급망 리스크 조기 탐지	리스크 탐지율 70% 이상
	시장분석·수요예측 AI 모델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기존 대비 정확도 10% 이상 향상
협력사 (4~5개사)	생산계획 선제 대응 AI 모델	생산계획 최적화	생산계획 정확도 10% 이상 향상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AI 모델	작업 위험요인 사전 탐지	위험요인 탐지율 80% 이상
	설비 예지보전 AI 모델	설비 이상 조기 예측	고장 예측 정확도 80% 이상
	재고 효율화 AI 모델	재고 운영 효율 향상	재고 회전율 10% 이상 향상
	소재 성분·품질 분석 AI 모델	대체 소재 품질 검증	품질 판정 정확도 85% 이상
	제품 개발·시뮬레이션 AI 모델	대체 소재 적용 성능 검증	시뮬레이션 결과 일치율 80% 이상

자료: 산업통상부

예를 들어 협력기업의 설비 예지보전 AI를 통해 고장예측 정확도가 향상되더라도, 이러한 성과가 실제 설비 가동중단 감소 및 부품 공급지연 감소를 거쳐 앵커기업의 생산 차질을 어느 정도 줄였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공급망 단위의 사업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협력기업의 재고회전율이나 품질판정 정확도가 개선된 경우에도 해당 성과가 공급망 전체의 납기 준수율, 리드타임, 재고 수준 또는 생산량 등의 개선으로 연결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부가 기존에 추진한 ‘산업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에서도 제조기업의 개별 공정에 AI 솔루션을 적용하여 불량률 감소, 설비 다운타임 감소, 생산성 향상, 품질·불량 검출 정확도 향상 등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형 제조AX 선도모델’에서도 대기업 등의 제조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여러 공정 및 밸류체인에 AI를 적용하는 등 개별기업의 전사적 AX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협력기업에 대한 AX 신규 사업을 기존의 개별기업·공정 단위 AI 실증사업과 차별화하여 ‘공급망 특화형’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별 AI 솔루션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복수 기업의 AX 성과가 공급망 차원의 공동성으로 연결되는지를 측정·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⁵⁾

이와 같이 공급망특화형 제조AI솔루션 실증·확산 사업은 개별 AI 솔루션의 성능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의 AX 성과가 공급망 전체의 성과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조AX설비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품목에는 제조AX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범용성 장비·인프라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는 지원대상 선정 시 제조AX와의 직접적인 연계성 및 필수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설비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조AX설비구축 지원 사업은 제조기업의 AI 전환에 필요한 핵심 설비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제조 공정을 포함한 제조 전후방 분야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AI 로봇, AI 검사장비, AI 소프트웨어 및 관련 인프라 등의 구축비의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027년 27개사를 선정하여 총 488억원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총 108개사에 약 1,952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 보조율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40% 이하로 계획하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최소부담 비율은 60~70%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설비투자 건당 30억원, 기업당 50억원으로 설정되었다.

[연도별 제조AX설비구축 지원 계획(안)]

(단위: 개사,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업 수	27	27	27	27	108
총사업비	1,627	1,627	1,626	1,626	6,506
국비 보조	488	488	488	488	1,952

주: 1. 기업별 투자 규모 및 계획에 따라 과제 수 변동 가능

2. 보조율은 기업 소재지별로 차등 적용할 예정으로, 국비 지원 비율은 변동 가능

자료: 산업통상부

- 5)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각 기업의 병목요인에 AI 솔루션을 적용하여 공급망 전체의 성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급망 단위의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업 기획 과정에서 이미 업종별 공급망 특화 AI 솔루션의 필수성과지표와 자율지표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품 조달부터 조립까지의 리드타임 단축률, 물류 지연 개선율 등 공급망 전체의 개선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제조AX설비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통상부 고시)에 따른 35개 분야 중 제조AX와 관련성이 높은 8개 분야를 선별하고, 이를 공정 AX, 운영 AX, 기반 인프라 등 3개 대분류와 연계하였다. 이후 2026년 6월 AI 전문기업, 제조기업 및 연구기관의 의견수렴과 약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8월에는 정부 AX 사업 참여기관 약 1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부는 이러한 선별 과정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년 9월 지원대상 품목을 확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의 시행규칙과 사업 공고문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제조AX설비구축 지원대상 핵심 품목(안)은 공정 AX, 운영 AX, AX 인프라의 3개 분류 내에 11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제조 현장 거치형 엣지 컴퓨팅 서버, 대용량 메모리 서버, 초저지연 네트워킹 스위치, 스마트 센서 패키지 등의 품목은 제조AX 이외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비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 수집·처리 및 AI 모델 운영 등을 위한 기반 시설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제조AX와 직접적인 연계 없이 일반적인 제조설비의 개선이나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개별 장비의 도입 목적과 AI 활용계획,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사업 완료 이후에도 지원 설비의 실제 활용 여부와 제조AX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로봇 공공보급 사업은 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보급하여 국산 휴머노이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될 계획이나, 현재 활용 가능한 국산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RFM)가 부재하고, 관련 R&D를 통해 개발 중인 상황이므로, 국내 로봇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 목표를 고려하여 향후 국산 소프트웨어(RFM)의 도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보급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6)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최종 지원대상 선정 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투자위원회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구축 설비의 연계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AI로봇 공공보급 사업은 휴머노이드 등 AI로봇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기업의 양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 및 출연연 등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급하려는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2027년 휴머노이드 200대를 보급하기 위하여 3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30년까지 1,260억원을 투입하여 총 84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도별 휴머노이드 공공 보급 계획(안)]

(단위: 대,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급 대수	200	200	220	220	840
국고지원	300	300	330	330	1,26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휴머노이드 생태계는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주요 대학·연구실의 경우 HW는 중국산, SW는 미국계·오픈소스 플랫폼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산 휴머노이드의 실사용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산 휴머노이드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국내 HW·SW 활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동 사업을 기획하였다.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단순히 휴머노이드 HW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학생 등이 휴머노이드와 관련 SW를 활용하여 연구·교육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휴머노이드 생태계의 초기 수요와 전문인력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휴머노이드는 HW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시각·언어 등의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의 행동을 결정하는 RFM(Robot Foundation Model)⁷⁾ 등 AI SW와의 결합이 실제 활용에 중요한 요소로, 산업통상부도 향후 국산 RFM의 확산을 위해 현재부터 국산 RFM 활용경험을 보유한 인력 Pool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7) RFM(Robot Foundation Model)은 언어·영상·행동 데이터를 통합 학습하여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로봇 지능 기반 모델을 의미한다. (출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HW플랫폼과 SW플랫폼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으로 휴머노이드 보급 1건당 지원단가를 1.5억원으로 설정하였다.

[AI로봇 공공 보급 지원단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HW 플랫폼	· 휴머노이드 로봇 HW 플랫폼 구매비 · 센서, 로봇핸드, 원격조작 인터페이스 등 주변장치 구매비	130
SW 플랫폼	· SW 플랫폼 도입, HW 플랫폼 연동(기술지원) 비용 등	20
합계		150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휴머노이드에 적용하여 연구·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산 RFM은 부재한 상황이며, 관련 정부 R&D과제가 2028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동 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휴머노이드 HW를 대규모로 보급하더라도 초기 보급기간에는 국산 RFM을 활용한 연구교육이 제한되거나 미국 등의 SW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기획보고서에 ‘국산 RFM의 존재감은 부재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2028년까지 AI선도대학을 중심으로 RFM 개발을 추진⁸⁾’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 일례로 산업통상부의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에서 지원 중인 ‘다양한 응용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AI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국산화’ 과제로, 2025년 9월부터 2028년 12월말까지 총 94억 4,900만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기획보고서 중 RFM 관련 내용]

- (문제점) 연구·교육 단계에서부터 ‘저가 中 하드웨어 + 美 고성능 두뇌(RFM, Robot Foundation Model)’ 종속 구조 고착화 해소가 시급
 - (SW 종속) 휴머노이드 두뇌 영역에서는 사실상 美빅테크의 표준 지위가 굳어지는 양상이며, 국산 RFM의 존재감은 부재한 수준
 - * 정부에서 ‘28년까지 AI선도대학을 중심으로 RFM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부터 국산 RFM을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산 RFM 사용 경험을 가진 인력 Pool 확보 필요

자료: 산업통상부

물론 국산 RFM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부터 휴머노이드를 대학 등에 보급하여 연구자들이 HW의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국내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 중인 RFM을 실제 로봇에 적용·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하드웨어 기반이 선제적으로 확보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HW의 보급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우, 자칫 국산 RFM의 자립화와 연계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보급 사업을 활용한 국산 RFM 육성을 위해 RFM 개발일정과 HW 보급 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휴머노이드 보급사업 추진 시 국산 RFM의 개발·실증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로봇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국산 HW와 SW 보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구축 사업¹⁾은 제조업의 핵심 자산인 제조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수집·보호·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 데이터 및 피지컬 AI 데이터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 계획안 1,15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구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구축	-	-	-	115,800	115,800	순증
데이터 수집	-	-	-	11,800	11,800	순증
데이터 팩토리 구축	-	-	-	45,000	45,000	순증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	-	-	59,000	59,000	순증

주: 1) 수정은 2026년 8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① 데이터 수집, ② 데이터 팩토리 구축, ③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데이터 수집은 10대 업종²⁾별·공정별 제조 데이터를 수집·확보하여 핵심 데이터셋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는 10개 제조데이터셋을 구매하는 데 1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데이터 팩토리 구축은 10개 업종에 대해 지역특화 산업별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는 50개 로봇 공정 데이터셋 구축을 위해 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332-310

2) 10대 업종: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화학·기계장비/농기계·이차전지·가전·철강·바이오·섬유·조선

③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은 데이터를 저장·활용하기 위해 대용량 스토리지, 고성능 GPU 구축 및 품질관리, 업종기능별 데이터 분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는 AI 연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59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구축·운영 계획안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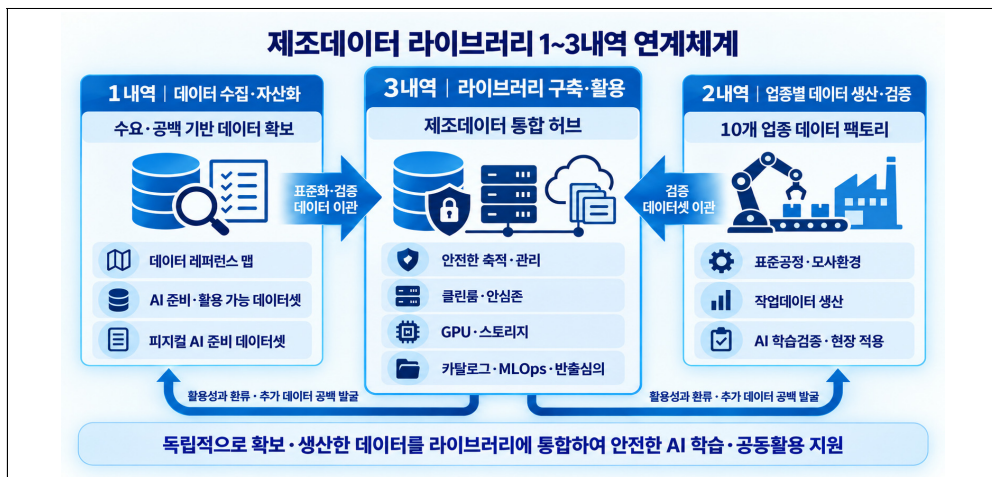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데이터 수집	· 제조데이터셋 10개×1,180백만원	11,800
데이터 팩토리 구축	· 로봇 공정 데이터셋 50개×900백만원	45,000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 데이터 라이브러리 인프라 1식×59,000백만원	59,000
합계		115,800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을 통해 수요·공백 기반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10개 업종별 로봇 데이터를 생산·검증하여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하는 한편,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관리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구축·운영 사업 체계도]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27일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구성·운영,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의 구축,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실증성능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2026.7.27.)」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명 변경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제5조~제8조	산업인공지능전환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위원회가 얼라이언스의 운영, 선도사업 지원,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및 산업인공지능제품 성능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제9조	제조기업,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수요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하고, 참여 기업 등에 기술개발, 인프라, 금융, 규제개선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	숙련기술자의 작업행동, 판단, 노하우 및 지식 등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를 수집·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인공지능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실증·사업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20조	국가·경제안보,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및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34조	산업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안전하게 집적·활용하기 위한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거나 데이터 가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35조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수집·보관되는 산업데이터를 국가안전보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등급별 보안조치를 수립·시행하도록 함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나. 분석의견

첫째,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리구축운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며,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리구축운영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3)에 따라 2026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됨에 따라 2027년도 계획안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부처에서 요구한 총 사업규모는 8,514억원이다.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리 구축·운영 사업 예타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국가제조데이터 라이브리 구축·운영	2027~2031년 (총 5년)	8,514 (국비 7,764, 민자 등 750)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10호에 따라 면제

자료: 산업통상부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⁴⁾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예타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시 예타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0년 3월 신설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는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고, 적정성 검토 결과 데이터 수집 및 인프라 구축 범위 등 변경에 따라 예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 수집 내역의 경우 제조데이터 레퍼런스 맵을 바탕으로 공백 영역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이나, 데이터 레퍼런스 맵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인 데이터 공백 및 수집 필요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데이터 레퍼런스 맵

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 소요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수집 내역 사업은 제조데이터 레퍼런스 맵의 공백 영역에 해당하는 제조·퍼지컬 AI 데이터의 전략적 수집을 통해 업종별로 완결성 있는 데이터 자산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0대 주력 제조업의 전주기 공정 데이터 공백을 해소하고, AX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AI 준비(AI-Prepared), AI 활용 가능(AI-Ready), 퍼지컬AI 데이터셋을 구축할 계획으로, 2027년에는 118억원으로 10개의 데이터 구축 과제를 지원하고, 2031년까지 총 1,968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연도별 데이터 수집 계획(안)]

(단위: 개,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과제 수	10	35	35	30	25	135
국고지원	118	500	500	450	400	1,968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제조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10대 제조 업종별로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 현재 데이터 수집 현황 및 공백 영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제조데이터 레퍼런스맵(데이터 전략 지도)’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백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부는 데이터 레퍼런스맵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확보 용이성, 공정 영향도 및 확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제조 데이터와 퍼지컬AI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그런데 산업통상부는 2026년 4월부터 10대 제조업종별 제조 AX를 위해 수집되어야 하는 데이터와 수집 현황, 공백 영역 등을 일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전략 지도를 기획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기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과 신규 확보가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획보고서 중 데이터 레퍼런스 맵 관련 추진 내용]

- (목적) 산업부 제조데이터 레퍼런스 맵 상 공백 영역에 해당하는 제조·피지컬 AI 데이터의 전략적 수집을 통해 업종별 완결성 있는 데이터 자산 확보
 - 10대 제조업종별 제조 AX를 위해 수집되어야 하는 데이터와 수집 현황, 공백 영역 등을 일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 전략 지도 (2026.04 ~ 기획 중)**

자료: 산업통상부

현재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데이터 수집 내역의 총사업비는 5년간 총 1,968억 원으로, AI 준비 데이터셋 구축 493억 6,000만원, AI 활용 가능 데이터셋 구축 882억 6,000만원, 피지컬 AI 준비 데이터셋 구축 500억원 등으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데이터 수집 내역의 세부내용]

(단위: 억원)

중점 분야	세부 내용	소요 예산
(총괄) 데이터 수집 큐레이션	· 데이터 레퍼런스맵 상 수집 우선순위 데이터 역설계·관리 · 중점분야별 데이터의 표준화, 품질 검증, 카탈로그 등재, 권리·보안 및 라이브러리 자산화 총괄	91.8
10대 업종 AI 준비 데이터셋 구축	· 7대 제조 AI 태스크* 대상으로 원천 데이터 정제·표준화, 4M1E 맥락정보를 연계하여 범용 AI 학습이 가능한 AI-Prepared 데이터셋 구축(생산제어·공정최적화, 품질예측, 예지보전 등)	493.6
10대 업종 AI 활용 가능 데이터셋 구축	· AI 준비 데이터에 정밀 라벨, 제조 맥락, 학습조건, 모델·버전 및 실행 정보를 결합하고, 대표모델 시험 학습을 통해 즉시 학습·검증·재현 가능한 AI-Ready 데이터셋 구축	882.6
피지컬AI 준비 데이터셋 구축	· 조작·이동·인간·로봇 상호작용·인지·의사결정 데이터를 라이선스 확보 또는 신규 수집하고, 물리적 정합성·품질·학습 유효성을 검증하여 피지컬 AI 학습·검증용 데이터셋 구축	500.0
합 계		1,968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소요예산은 데이터 레퍼런스맵을 통해 기존에 확보된 데이터와 공백 영역을 파악하고, 이 중 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규모를 도출한 이후 이를 구축·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바탕으로 산

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정부 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경우나 공백 영역 중 공정 영향도나 확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 신규 데이터 구축 규모 및 이에 필요한 재정소요 역시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데이터 레퍼런스맵을 조속히 완료하여 10대 제조업종별 기존 데이터 보유 현황과 공백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확보가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규모 및 우선순위를 산정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통상부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내역을 통해 별도의 GPU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5년부터 매년 약 1만장의 고성능 GPU를 국가 공동 자원으로 구축하고 있으므로, 공동 활용 가능성과 별도 구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국가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구축운영의 ① 데이터 수집, ② 데이터 팩토리 구축 내역, 그리고 산업통상부의 다른 제조 AX 사업들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관하여 표준화검증 과정을 거치고, 이를 저장·관리하기 위해 ③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 내역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2,846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세부적으로는 보안 및 클린룸 운영체계 구축 176억원, 클린룸 기반 AI연산 인프라 구축 1,060억원, 제조데이터안심존 및 운영 플랫폼 구축 564억원,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350억원, 라이브러리 인프라 운영 276억원, 범부처 데이터 연계 420억원으로 구분된다.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내역의 세부내용]

(단위: 억원)

중점 분야	세부 내용	소요 예산
보안 및 클린룸 운영체계 구축	· 제조데이터 원본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AI 학습·검증할 수 있는 격리형 보안환경 구축	176
클린룸 기반 AI연산 인프라 구축	·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외부 반출 없이 내부에서 가공·학습할 수 있는 고성능 AI 연산환경 구축 · 제조 AI 모델 학습 및 데이터 가공을 위한 B300급 GPU Farm (약 304장) 및 10PB급 데이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포함	1,060
제조데이터안심존 및 운영 플랫폼 구축	· 데이터의 반입·검증·검색부터 연산자원 배정과 AI 학습까지 자동 연계하는 라이브러리 활용 플랫폼 구축	564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 범부처 피지컬 AI 데이터를 장기간 안전하게 축적하고 대규모 모델 학습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저장·전송 기반 구축	350
라이브러리 인프라 운영	· 사용자가 데이터 검색부터 이용승인·연산자원 배정·모델 반출까지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주기 운영체계 구축	276
범부처 데이터 연계	· 타 부처·기관이 보유한 피지컬 AI 데이터를 발굴·가공하여 라이브러리 공동활용 자산으로 편입	420
합계		2,846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클린룸 기반 AI연산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가공하고 AI 모델을 학습·검증할 수 있도록 고성능 연산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엔비디아의 B300급 GPU Farm과 30PB급 데이터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전력·냉각 기반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클린룸 기반 AI 연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6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도별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소요예산(안)]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안, 반출 관리 및 클린룸 운영 체계 구축	7	98	71	-	-	176
클린룸 기반 AI 연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	289	547	224	-	-	1,060
제조 데이터 안심존(Safe zone) 및 운영 플랫폼 구축	64	125	125	125	125	564
스토리지 인프라 구축	198	93	59	-	-	350
라이브러리 인프라 운영	32	50	50	72	72	276
범부처 데이터 연계	-	180	90	75	75	420
합계	590	1,093	619	272	272	2,846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고성능 GPU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고, 이를 산·학·연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급증하는 산·학·연의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 컴퓨팅 자원을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대규모 GPU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⁵⁾을 통해 2025년부터 H200(3,056장), B200(1만 80장), B300(7,688장), Vera Rubin(2,016장)의 첨단 GPU를 구축하였으며, 2027년에는 Vera Rubin 1만 80장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7조 3,883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5) 코드: 미래대응기금 4331-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을 통한 GPU 확보 현황]

(단위: 장, 억원)

구분	2025		2026		2027(안)		합계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H200	3,056	2,217	-	-	-	-	3,056	2,217
B200	10,080	12,373	-	-	-	-	10,080	12,373
B300	-	-	7,688	13,866	-	-	7,688	13,866
Vera Rubin	-	-	2,016	6,927	10,080	38,500	12,096	45,427
합계	13,136	14,590	9,704	20,793	10,080	38,500	32,920	73,88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축하는 GPU 자원은 단일 부처나 연구기관의 자원이 아닌 국가 공동의 자원이다. 따라서 각 부처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먼저 활용하고, 공동활용 자원에 과부하가 발생하거나 단독으로 구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GPU 자원을 구축하는 등 국가 재정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경우 기업의 핵심 공정정보 등이 포함된 제조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쇄망 내부에서 저장·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연산자원 역시 데이터가 보관되는 보안환경 내부에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제조데이터는 기업의 영업비밀 및 핵심 공정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어 외부 반출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 보안과 안정적인 연산환경 확보를 위한 별도 GPU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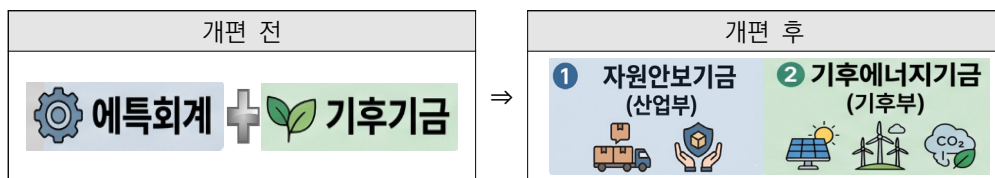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획된 GPU 인프라 전체를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조데이터의 보안 수준과 연산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 공동 GPU 자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폐쇄망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클린룸 기반 AI연산 인프라 구축에 3년간 1,0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 만큼, 실제 이용기업의 수요와 예상 GPU 사용량 등을 토대로 적정 구축 규모를 산정하고, 향후 운영·유지관리 비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국가 공동 GPU 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별도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 구축 규모와 단계별 투자계획을 구체화하여 GPU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원안보기금은 첨단산업에 필수요소인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 핵심자원 도입 다변화 등 산업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동 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2026년 9월 9일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238)」이 국회에 제출되었다.¹⁾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자원 관련 재정을 지원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등으로 분산운영되면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관련 사업들을 기후대응기금과 신설되는 자원안보기금으로 개편하였다.

[2027년 기후-에너지-자원 관련 회계-기금 개편(안)]



자료: 산업통상부

정부안 기준 자원안보기금의 수입은 석유수입부과금 등 법정부담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융자원리금 회수금 등 기타로 구성되며, 2027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443억 5,400만원 증액된 2조 4,55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다.

기금의 지출은 석유비축, 다변화사업 등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비와 타 부처 사업비, 기후대응기금 전출, 일반회계 전출,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비의 경우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4,258억원 증가한 1조 4,0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동 법률안의 참고사항에는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7년도 자원안보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입 계획	3,964,240	2,337,280	2,411,178	2,455,532	44,354	1.8
정부출자수입	24,396	6,460	6,460	21,556	15,096	233.7
기타민간이자수입	32,932	5,550	5,550	19,064	13,514	243.5
기타재산이자수입	9,780	3,522	3,522	7,328	3,806	108.1
법정부담금	1,354,406	1,734,195	1,734,195	1,734,195	-	-
기타경상이전수입	18,597	15,838	15,838	5,687	△10,151	△64.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65,488	92,399	92,399	103,807	11,408	12.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165,203	165,203	순증
기금예수금	1,500,000	479,067	552,965	398,443	△154,522	△27.9
기금전입금	757,434	-	-	-	-	-
토지대여료, 과태료 등	1,207	249	249	249	-	-
지출 계획	1,693,357	784,499	975,332	2,455,532	1,480,200	151.8
사업비	1,629,987	784,499	975,332	1,401,128	425,796	43.7
기금운영비	-	-	-	-	-	-
일반회계 전출	-	-	-	129,201	129,201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이자 상환	63,370	-	-	52,873	52,873	순증
기후대응기금 전출	-	-	-	760,000	760,000	순증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	-	112,330	112,33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2-1. 징수·수납 실적을 고려한 법정부담금 수입 계획안 현실화 필요

가. 현 황

법정부담금²⁾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³⁾에 따른 석유수입부과금 및 석유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⁴⁾에 따른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⁵⁾에 따른 광해방지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수납하기 위한 수입 과목이다. 법정부담금의 2027년 계획안은 전년도 당초 및 수정계획과 동일한 1조 7,34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법정부담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법정부담금	1,354,406	1,734,195	1,734,195	1,734,195	-	0.0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2) 코드: 자원안보기금 59-593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안전관리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정제업자 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수출에 따른 판매는 제외한다)하는 자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7년 법정부담금 계획안은 자원안보기금 수입 계획안 총계(2조 4,555억 3,200만원)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가스안전관리부담금, 광해방지부담금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부과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027년 자원안보기금 법정부담금 부과기준]

구분	개요
석유수입 부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수입석유(원유/석유제품, LNG)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 - 부과기준(법정상한선 36원/ℓ) : 원유·석유제품 16원/ℓ, LNG 일반용 24,242원/톤, LNG 발전용 3,800원/톤
석유판매 부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석유(고급휘발유, 부탄)에 대해 일정액의 부과금 부과 - 부과기준(법정상한선 36원/ℓ) : 고급휘발유 36원/ℓ, LPG(부탄) 62,283원/톤 (≈36원/ℓ)
가스안전 관리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정제업자 및 LPG 제조·판매자, LPG 또는 LNG 수입자에게 판매 LPG, LNG에 대해 일정액의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 부과기준(법정상한선 LPG 5원/kg, LNG 4.4원/㎥) : LPG 4.5원/kg, LNG 3.9원/㎥
광해방지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산개발로 인한 광산피해(광해)의 방지 및 자연환경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 -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해방지사업 : 광해방지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40% · 산림(토지)복구사업 : 채무보증금액 × 광종별 요율 ÷ 개발연수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법정부담금 수입 계획안이 연례적으로 과다 계상되고 있으므로, 최근 징수결정액 및 수납 실적을 반영하여 계획안 규모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자원안보기금 법정부담금은 2026년까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정부는 2027년 회계·기금 구조를 개편하면서 에

특회계 법정부담금을 자원안보기금 법정부담금으로 그대로 이관하였다. 2027년 자원안보기금 법정부담금의 내역별 수입 계획안은 다음 표와 같다. 2027년 법정부담금 중 석유수입부담금은 전년 대비 13억 9,800만원이 감액된 1조 4,033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석유판매부담금은 전년 대비 3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31억 9,800만원이며,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은 전년 대비 27억 5,900만원 감액된 1,379억 600만원, 광해방지부담금은 전년 대비 3억 6,700만원 증액된 9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법정부담금 총액은 2026년과 동일한 1조 7,341억 9,500만원으로 작성되었다.

[2027년도 자원안보기금 법정부담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결산	2026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법정부담금	1,354,406	1,734,195	1,734,195	1,734,195	-	0.0
석유수입부과금	1,025,387	1,404,761	1,404,761	1,403,363	△1,398	△0.1
석유판매부과금	184,793	179,408	179,408	183,198	3,790	2.1
가스안전관리부담금	130,854	140,665	140,665	137,906	△2,759	△2.0
광해방지부담금	13,372	9,361	9,361	9,728	367	3.9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최근 4년간 예특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징수결정액이 1조 8,128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6,500억 500만원을 상회하였으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예산현액 1조 8,213억 5,500만원의 67.3%인 1조 2,252억 2,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024년에는 예산현액 1조 8,944억 4,900만원의 74.5%인 1조 4,116억 3,5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2025년에도 예산현액 1조 8,372억 8,200만원의 73.9%인 1조 3,571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다. 또한, 2026년 8월말 현재 징수결정액은 9,472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1조 7,341억 9,500만원)의 54.6% 수준이다.

[2022~2026년도 법정부담금(에트회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징수율 (B/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22	1,650,005	1,650,005	1,650,005	1,812,875	1,803,073	109.9	99.5	9,802
2023	1,821,355	1,821,355	1,821,355	1,225,225	1,218,059	67.3	99.4	7,166
2024	1,894,449	1,894,449	1,894,449	1,411,635	1,409,209	74.5	99.8	2,427
2025	1,837,282	1,837,282	1,837,282	1,357,118	1,354,406	73.9	99.8	2,712
2026	1,734,195	1,734,195	1,734,195	947,269	942,041	54.6	99.4	미정
2027	1,734,195	-	-	-	-	-	-	-

주: 1. 2022~2026년은 에트회계 법정부담금 예·결산, 2027년은 자원안보기금 법정부담금 계획안

2. 2026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이와 같이 2023~2025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67~75%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산업통상부는 2027년 법정부담금 계획안을 2023~2025년 평균 수납액(1조 3,272억 2,500만원) 보다 약 4,000억원 이상 높게 책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 업종 불황, 일반용 LNG 징수물량 감소, 국민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한시적 단가 인하⁶⁾ 및 면제 조치⁷⁾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계획 대비 부담금 징수·수납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7년 법정부담금 수입을 산정하면서 비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단가 정상화 및 LPG 부탄 판매부과금 면제 종료에 따른 징수 재개 등을 통해 수입 감소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전년대와 동일한 규모로 계획액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용 LNG 단가 인하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까지 시행된 것으로 2023년 징수실적 감소나 2026년 8월말 기준 징수실적 저조 사유를 설명하기 어렵

6) 일반용 LNG 인하: 24,242원/톤 → 16,730원/톤(2024.7.1.~2025.6.30.), 24,242원/톤 → 20,605원/톤(2025.7.1.~2025.12.31.)

7) LPG판매부과금 인하면제: 62,283원/톤 → 43,600원/톤(2022.4.27.~2022.12.31.) 62,283원/톤 → 면제(2026.7.30.~2026.12.31.)

고, LPG판매부과금 인하면제 역시 2023~2025년에는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징수실적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7년 법정부담금 수입 계획안에 대해서도 최근 징수수납 실적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2-2. 기금운영 인건비 및 관리비 미편성 문제

가. 현 황

기금운영인건비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기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위탁기관의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자원안보기금에는 기금 운영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기금운영관리비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기금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 위탁기관의 관리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자원안보기금에는 기금 운영관리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2027년도 기금운영인건비 및 기금운영관리비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금운영인건비	-	-	-	-	-	-
기금운영관리비	-	-	-	-	-	-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나. 분석의견

산업통상부는 2027년 자원안보기금계획안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수적인 인건비 및 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신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62조8)에 따르면 기금관

8) 「국가재정법」

제62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리주체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해야 하며, 같은 법 제63조⁹⁾는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¹⁰⁾,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¹¹⁾,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¹²⁾ 등의 조항을 통해 기금의 자산운용을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 및 전문적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법」에서 기금의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전문적 의사결정 체계 등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기금이 일반적인 재정사업과 달리 재원의 조성 및 사업비 집행뿐만 아니라 보유자산 및 여유자금의 운용, 자금수지 관리, 운용성과 평가 및 위험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금을 신설할 경우 개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기금운용계획 및 자산운용지침 수립, 수입·지출 및 여유자금 관리, 기금운용심의회 및 자산운용위원회 운영, 운용성과 평가 및 위험관리 등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인력과 운영체계를 함께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³⁾

9)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10) 「국가재정법」

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국가재정법」

제77조(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13)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기금의 운영을 기존에 법정부담금 징수수납 업무를 담당해 온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계획이다.

그런데 산업통상부는 2027년도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적인 경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기금운용을 위한 인력과 운영경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산업통상부가 2027년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면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수적인 인건비 및 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신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체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2)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비축에 필요한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 대비 2,734억 900만원, 수정 계획 대비 1,149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87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석유비축사업출자	79,001	55,300	213,733	328,709	114,976	53.8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1. 2026년까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되었으나, 2027년 자원안보기금으로 이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은 비축유 구입, 비축기지 유지보수, 비축시설 확충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석유공사에 출자된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자원안보기금 5432-301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먼저, ① 비축유 구입은 석유비축계획에 따른 연차별 비축유 확보를 위한 구매 비용을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 계획안은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전년 수정 계획 대비 726억원 증액된 2,54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계획안에 따라 비축유를 구입할 경우 누적 비축물량은 약 1억 400만 배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124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② 비축기지 유지보수 사업은 9개 석유비축시설³⁾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수정 계획 대비 144억원 감액된 176억원이 편성되었다.

③ 비축시설 확충 사업은 석유수급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부지비 및 설계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567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7년 산출내역	2026 수정(A)	2027 계획안(B)	증감액 (B-A)
비축유 구입	원유 200만 배럴 구입	181,733	254,333	72,600
비축기지 유지보수	9개 비축기지 노후시설보수 등	32,000	17,600	△14,400
비축시설 확충	2,000만 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	-	56,776	56,776
합계		213,733	328,709	114,976

자료: 산업통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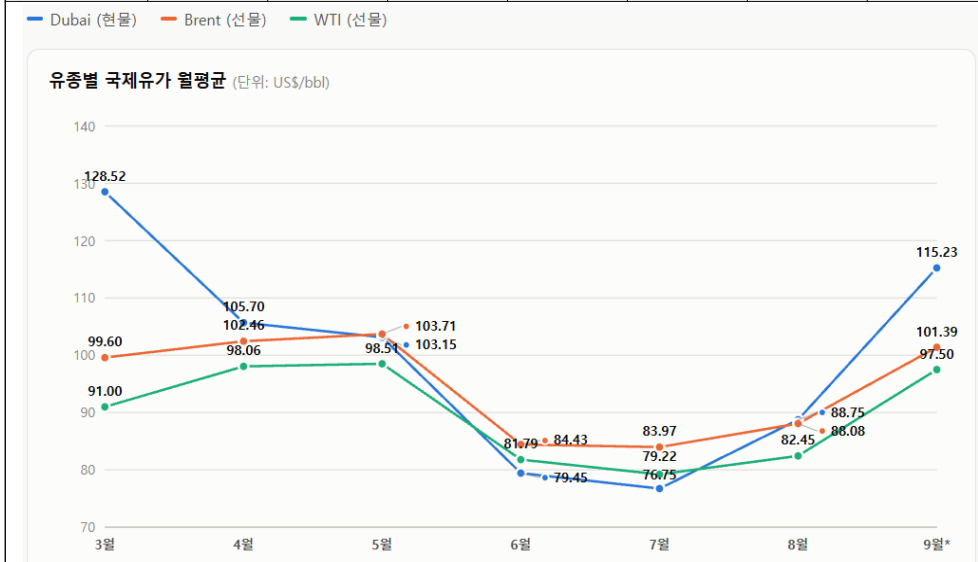
참고로 2026년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도에 따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유가는 3월 중순 급등한 이후, 휴전 및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6~7월 안정세를 보였으나, 9월 들어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3)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시설은 원유기지 4개소(서산, 여수, 거제, 울산), 제품기지 4개소(구리, 용인, 곡성, 동해), LPG기지 1개소(평택)로 구분된다.

[2026년 월별 국제유가 변동 추이]

(단위: 미 달러/배럴)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Dubai	128.52	105.70	103.15	79.45	76.75	88.75	115.23
Brent	99.60	102.46	103.71	84.43	83.97	88.08	101.39
WTI	91.00	98.06	98.51	81.79	79.22	82.45	97.50



주: 일별 조회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업일별 값을 단순 평균하여 월평균 수치를 도출한 것이며,

9월은 18일까지의 가격을 일평균한 수치임

자료: 한국석유공사 오피넷(opinet.co.kr) 검색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산업통상부는 2026년도 비축유 구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2027년도 중등 정제와 국제유가 및 석유수급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도 비축물량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⁴⁾에 따라 석유 수급과 석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 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⁵⁾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5년 12월 22일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에 대한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산업통상부는 비축유 250만 배럴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2026년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 비축역량을 제고하고, 비축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석화산업 연계성 강화 등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23일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

동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5년간 추가 비축물량을 250만 배럴에서 705만 배럴로 확대하였고, 일간 원유수요량(약 280만 배럴) 기준 60일분 비축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2,000만 배럴의 비축시설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임을 반영하였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 당초계획 및 조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당초계획	조정안
기본방향	1~4차 비축계획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비축유 확보, 5차에서는 대규모 양적 확대보다는 공급망, 국내 석유수요 변화 등 중점 대응	중동전쟁 이후 석유 비축역량 제고, 비축유 활용역량 증진, 석화산업 연계성 강화
계획기간	석유수요 등에 탄력 대응하기 위해 '26~'30년(5년)으로 설정	차원에서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 추진
비축목표	2025년 100.1백만 배럴 → 2030년 102.6백만 배럴(+250만배럴) - 국내 산업여건, 수요변화에 맞춰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물량 일부 확대	2025년 100.1백만 배럴 → 2030년 107.17백만 배럴(+705만배럴) - 일 원유수요량(약 280만) 기준 60일분 비축이 가능한 시설 확보를 위해 우선 2,000만 배럴 추가 증설
유종교체	국내 중질 유종 비축원유 일부를 경질 유종으로 교체	유종별 포트폴리오는 추후 마련
안전관리	비축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위해 매설배관, 비축탱크 검사 후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소방시설 개선 등 추진	-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재작성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 현재 석유비축계획의 세부 사항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2026년 2월말 중동전쟁 발발로 국제 석유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당초 5년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었던 250만 배럴 중 절반 수준인 130만 배럴을 2026년 중 조기에 비축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817억원을 확보하였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6)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매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 정부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은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되었다.

그러나 2026년의 경우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필요 유종 및 구입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계속됨에 따라 10월 현재까지도 당해연도 비축유 구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여 「202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2026년 추경을 통해 130만 배럴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상황의 긴장 상태 지속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축유를 구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2027년에는 다시 200만 배럴의 추가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6~2027년 2년간 비축물량은 총 330만 배럴로,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 조정안」에서 제시한 5년간 총 비축물량 705만 배럴의 절반 수준(46.8%)이다.

석유비축 확대는 중동전쟁 등에 따른 국제 석유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고 향후 중동 정세 및 석유수급 여건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5년간의 비축계획 물량 중 절반 수준을 초기 2년간 집중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6년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는 비축유의 구입 시기와 유종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2027년에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및 석유수급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2026년도 비축유 구입 실적과 향후 국제유가 및 석유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조(석유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 제 15조제 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석유비축계획 중 비축 주체, 비축 대상 유종(油種), 정부 부문 비축목표량 등 중요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수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도 비축물량과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축시설 확충 사업은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 중간 결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총사업비 약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건설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부는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 등 국제 석유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석유비축 역량을 확충하기 위하여 2027년부터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비축기지의 저장능력은 약 1억 4,600만 배럴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존 저장능력의 약 13.7%에 해당하는 시설이 추가로 확충된다.

동 사업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약 1.6조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30억원을 활용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사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부지비와 설계비 등의 용도로 567억 7,600만원이 계획안에 편성되었다.

[비축시설 확충 개요]

구분	내용
구축기간	· 2027~2030년(4년)
총사업비	· 약 1.6조원 (전액국고, 석유비축사업출자)
구축내용	· 석유공사 비축기지 내 유희부지 및 신규 부지에 단계적으로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증설
부지선정	·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중으로 초대형 유조선(VLCC) 접안 가능 부두 확보 여부, 부지지형 조건, 정유사·석유화학단지 배관 연결가능 여부, 기존 비축기지 연계성(시설 공동활용) 등의 조건을 다각도로 검토 중
추진절차	· 타당성조사용역 → 부지확보 → 기본·실시설계 및 인허가(환경영향평가 등) → 건설공사
비고	· 2026년 추경예산 30억원을 활용,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부지 현장조사 및 장비·건설비 산출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 중(2026.7.~12.)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비축시설 확충 사업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에 걸쳐 추진되었으며, 이 중 1~3차 사업에는 약 2.4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었다. 4차 사업의 경우 기존 비축시설의 철거에 따른 저장용량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저장용량의 순증가는 없었다.

[1~4차 비축기지 건설사업 추진 경과]

(단위: 백만배럴, 억원)

구분	1차	2차	3차	4차	계
사업기간	1980~1989	1990~1999	1997~2012	2014~2020	-
저장용량	44	52	50	-	146
사업비	2,673	7,726	14,067	4,222	28,688

주: 4차 사업은 정부출자가 아닌 토지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존 철거된 비축시설 용량을 신규로 건설한 사업으로 저장용량 순증액(변화)은 없음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비축시설 확충 사업은 약 15년 만에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나 노후시설 대체가 아닌, 2,000만 배럴 규모의 저장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추진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2026년 10월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조사의 중간 결과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기준, 시설 규모의 적정성, 장비·건설비 산출 근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약 1.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 입지와 규모,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의 공사비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¹⁾은 중동산 원유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국내 정유사의 원유 정제시설의 개선·고도화 소요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7년 계획안에 신규로 42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	-	-	42,500	42,5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동 사업의 2027년 계획안은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비(2건) 89억원과 사업관리비 11억원을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하고, 정유사의 부분개선 투자 1건 및 신·증설 투자 2건에 대한 지원비 325억원이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편성되었다.

[2027년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 계획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계획안
시설개선투자 (민간자본보조)	부분개선 투자 1건, 신증설 투자 2건	32,500
설계비 (민간경상보조)	신증설 투자 설계비 2건	8,900
사업관리비 (민간경상보조)	관리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운영비 등	1,100
합계		42,500

자료: 산업통상부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자원안보기금 5432-306

나. 분석의견

첫째,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사업은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고, 향후 설계 및 공사 발주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2027년 공사비 중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3,295억원과 민자 1조 8,190억원 등 총 2조 1,485억원 규모로 기획되었으며, 정부는 2026년 8월 25일 동 사업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2)에 따른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 현황]

사업명	총 사업기간	총 사업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지원 사업	2027~2031년 (총 5년)	2조 1,485억원 (국고 3,295억원, 민자 1조 8,190억원)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제10호에 따라 면제

자료: 산업통상부

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3)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예타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적정성 검토 시 예타 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특히 향후 상세기획 및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2027년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한다는 산업통상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지연될 경우 2027년 상반기 중 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의 2027년 계획안에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비뿐만 아니라 부분개선 및 신증설을 위한 공사비를 함께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보조사업자 선정, 상세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등 사전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공사비의 전액 집행 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

[신증설 및 부분개선 사업의 연차별 소요액(국고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신규증설 (총 2건)	설계비	89	-	-	-	-	89
	공사비	251	240	499	884	518	2,392
	합계	340	240	499	884	518	2,481
부분개선 (총 3건)	설계비	-	-	-	-	-	-
	공사비	74	50	260	210	165	759
	합계	74	50	260	210	165	759
합계 (총 5건)	설계비	89	-	-	-	-	89
	공사비	325	290	759	1,094	683	3,151
	합계	414	290	759	1,094	683	3,240

주: 사업기획관리비 제외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분개선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연중 시공계약 및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증설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이후 상세설계에 3~4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연내 시공계약 및 착공이 어려울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2026년 10월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KDI에 의뢰한 바 있으며, KDI는 조만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KDI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차년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내 예산 집행 등 당초 수립된 사업내용 및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계획)]

구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자 공모·평가·선정	⇒	시설설계 계약발주준비	⇒	상세설계 (3~4개월)	⇒	시공계약 및 착공
신규증설	2026.10. ~2027.1.		2027.2.		2027.4.~5.		2027.5~8.		2027.9.~
부분개선							-		2027.5.~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신규증설 공사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 보조사업자 선정, 상세설계, 공사 발주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상세설계가 지연될 경우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시점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계획안에 편성된 공사비 전액을 연내 집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편성할 경우 상당 규모의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및 공사 발주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 계획안에 편성된 공사비 중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를 면밀히 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원유 도입선 다변화 및 에너지안보 강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 정유사들의 자체 투자여력을 고려하여 직접보조 방식과 융자·이차보전 등의 다양한 지원방식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설비투자 지원 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이슈로 국가의 에너지공급망 안정성 확보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원유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⁴⁾

이에 산업통상부는 석유정제업자(정유사)가 다변화원유 도입 비중을 2025년 30%에서 2031년 45%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제시설 개조·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이다.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정유사의 다양한 원유 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비상시 대체 원유의 활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산업통상부는 국내 정제시설이 중동산 원유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고, 비중동산 원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송비용과 설비 전환에 따른 투자비 회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유사의 자발적인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제시설 개조·보완에 필요한 재원을 반드시 직접보조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업체별 재무상황과 투자여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SK 에너지를 제외한 3개사의 경우 2025년에도 수천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여건과 자금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재정지원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4) 원유는 산지에 따라 산도, 염소 및 금속 등 불순물의 함량과 성상이 상이하며, 기존 정제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고산도·고불순물 원유를 도입할 경우 배관의 부식·막힘이나 촉매 수명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도입하지 않던 다양한 원유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유의 성상에 적합하도록 정제시설을 개조·보완하거나 관련 설비를 신·증설할 필요가 있다.

[2025년 국내 정유사별 재무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GS칼텍스	S-Oil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자산	22,075	26,557	16,312	14,239
부채(A)	8,320	17,670	11,779	8,662
자본(B)	13,755	8,887	4,533	5,577
부채비율(A/B)	60.5	198.8	259.8	155.3
영업이익	884	236	△180	513

자료: 각 기업별 재무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직접보조는 정유사의 설비투자 비용 일부를 반환의무 없이 지원하는 방식인 반면, 융자나 이차보전은 기업이 투자원금을 부담하면서 자금조달 비용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정유사별 자체 투자여력과 설비투자 규모, 투자비 회수 가능성 및 국가 에너지안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보조와 융자이차보전 등의 지원방식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정제시설 개조·보완 자체가 아니라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설비투자 이후 실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원받은 정유사의 다변화 원유 처리능력과 실제 도입 비중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여 재정지원이 당초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비투자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받은 시설이 다변화 원유 처리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후속 지원 여부나 지원 수준 결정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자면, 산업통상부는 다변화원유 정제시설 고도화 사업 추진 시 국내 정유사들의 자체 투자여력을 고려하여 직접보조 방식과 융자이차보전 등의 다양한 지원방식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설비투자 지원 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2개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0조 1,50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680억원(3.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28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8억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조 7,526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조 1,455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중소기업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98,376	270,505	270,505	252,662	△17,843	△6.6
- 일반회계	176,039	250,225	250,225	228,865	△21,360	△8.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337	20,280	20,280	23,797	3,517	17.3
기 금	9,664,051	9,512,267	9,512,267	9,898,159	385,892	4.1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5,743,581	5,452,876	5,452,876	5,752,636	299,760	5.5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3,920,470	4,059,391	4,059,391	4,145,523	86,132	2.1
합 계	9,862,427	9,782,772	9,782,772	10,150,821	368,049	3.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6조 2,53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606억원(△11.3%)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조 1,36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952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47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92억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조 1,19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조 3,791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중소기업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016,205	4,772,760	5,407,524	4,755,570	△651,954	△12.1
- 일반회계	3,566,512	4,295,005	4,929,769	4,136,560	△793,209	△16.1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 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35,711	10,593	10,593	4,682	△5,911	△55.8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3,982	467,162	467,162	595,151	127,989	27.4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19,177	19,177	순증
기 금	16,884,340	11,750,547	12,906,732	11,498,075	△1,408,657	△10.9
- 중소기업창업및 진흥기금	7,245,145	6,212,909	6,923,574	7,118,976	195,402	2.8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639,195	5,537,638	5,983,158	4,379,099	△1,604,059	△26.8
합 계	20,900,545	16,523,307	18,314,256	16,253,645	△2,060,611	△11.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중소기업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2,52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8억원(△6.6%)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89억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38억원이다.

[2027년도 중소기업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6,039	250,225	250,225	228,865	△21,360	△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337	20,280	20,280	23,797	3,517	17.3
합 계	198,376	270,505	270,505	252,662	△17,843	△6.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9,23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7,174억원(△17.8%)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조 3,049억원,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4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952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92억원이다.

[2027년도 중소기업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185,063	8,343,302	9,163,586	7,304,894	△1,858,692	△20.3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 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35,711	10,593	10,593	4,682	△5,911	△55.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13,982	467,162	467,162	595,151	127,989	27.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	-	19,177	19,177	순증
합 계	9,634,756	8,821,057	9,641,341	7,923,904	△1,717,437	△17.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1조 8,612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1조 3,339억원(△5.8%)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2조 5,390억원, 기술보증기금 3조 8,236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조 4,986억원이다.

[2027년도 중소기업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중소벤처기업창업 및진흥기금	12,715,699	11,512,909	12,122,909	12,538,976	416,067	3.4
기술보증기금	3,714,687	3,852,586	3,912,586	3,823,641	△88,945	△2.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1,582,986	6,709,165	7,159,558	5,498,551	△1,661,007	△23.2
합 계	28,013,372	22,074,660	23,195,053	21,861,168	△1,333,885	△5.8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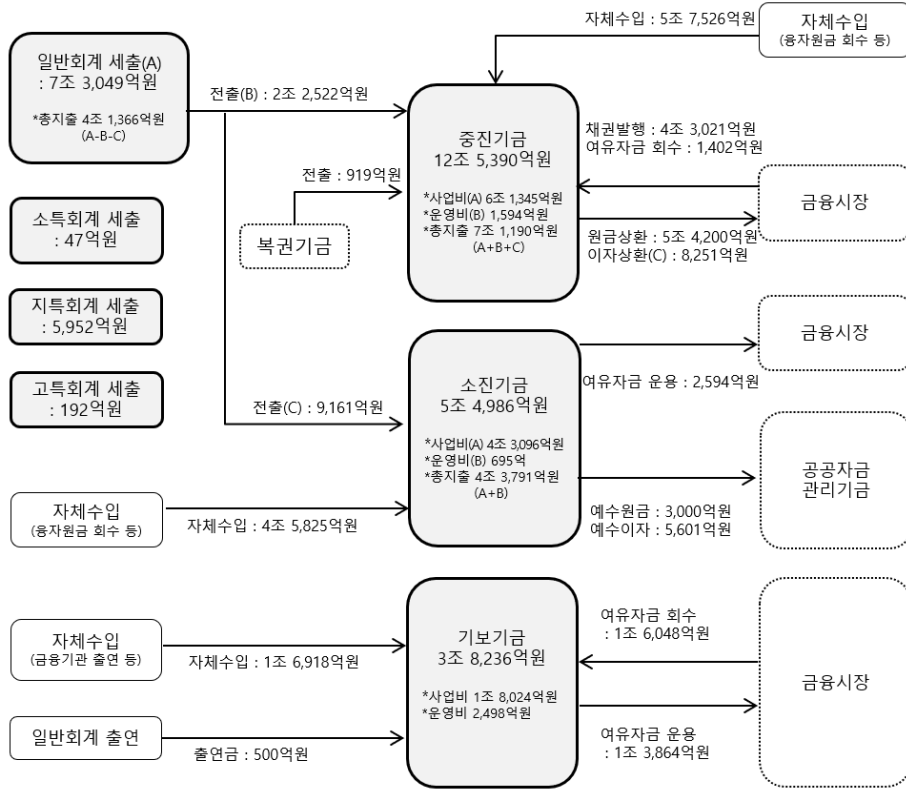
2027년도 예산안의 중소기업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2조 2,522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9,161억원이 각각 전출된다.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경우 복권기금에서 919억원을 전입받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0억원의 예수원금 및 5,601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한다.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 2027년 예산 자원 흐름도(정부안 기준) : 총계 29조 7,850억 7천만원



주: 총계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기본 방향 하에, ①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②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벤처투자시장을 확대하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도약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소상공인에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한편,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은 9개 사업, 1조 8,187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 재기지원, 중소제조 퍼지컬 AI 실증 사업 등이 있다.

2027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의 경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다부처 간 면밀한 협업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신안보 전용 펀드 출자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은 2026년 1·2차 프로젝트가 2027년 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7년에는 2026년 지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에 집중하고, 해당 프로젝트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한 뒤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8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등 2027년도 계획안 규모를 조정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은 투자형 R&D 사업 및 재원 관련 근거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에 마련되는 등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의 제·개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은 휴업에 따른 생업 부담으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1인 종사자 등으로 제한하여 시범사업으로 축소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며,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고,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은 기존의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사업과 지원대상·지원방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청년 컨설턴트의 양성 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면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9개 사업, 2,541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산학연협동프로그램(K-ILP)(R&D)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학·연구소의 보유 역량을 이전하고 협동사업화 R&D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5극3특성장엔진사업화지원 사업 7개는 5극3특성장엔진과 연계하여, 권역별 지역주력산업 기반 지역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4개)	산학연협동프로그램(K-ILP)(R&D)	3,000
	중소기업 신사업전환 기술개발(R&D)	2,310
	중소기업 기술보호	24,748
	부산기계공고 생활관 개축	7,83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개)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자율)(R&D)	117,417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제주)(R&D)	9,227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세종)(R&D)	902
	5극3특성장엔진사업화지원(강원도)	7,000
	5극3특성장엔진사업화지원(충북권)	9,500
	5극3특성장엔진사업화지원(대경권)	8,000
	5극3특성장엔진사업화지원(전북도)	7,000
	5극3특성장엔진사업화지원(동남권)	12,000
	5극3특성장엔진사업화지원(서남권)	3,800
	5극3특성장엔진사업화지원(제주도)	7,000
	지역자율형권역단위핵심기업육성(R&D)	7,000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4,700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3,500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2개)	중소기업 계약학과	13,977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5,200
합 계		254,120

주: 1. 중소기업 기술보호: 2026년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일반회계)의 내역사업 → 2027년 신규 세부 사업으로 분리 편성

2.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2026년 지원계정 → 2027년 자율계정 전환

3.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2026년 일반회계(각각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의 내역) → 2027년 고특회계 이관(각각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수출지원기반활용, 탄소감축기술개발(R&D), 도약(JumpUp) 프로그램,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등이 있다.

①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수출 진입장벽 해소와 수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② 탄소감축기술개발(R&D) 사업은 EU, 미국 등 탄소규제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 수출 피해 저감을 위해 증액되었다. ③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AI·딥테크 전략육성, 지역 벤처생태계 육성 등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기업규모에 따른 단계별 맞춤지원을 위해 사업규모가 확대됐으며, ⑤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6개)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4,068	4,068	5,580	1,512	37.2
	벤처캐피탈선진화	4,956	4,956	6,874	1,918	38.7
	기술혁신기반조성	43,566	43,566	68,832	25,266	58.0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	7,700	7,700	12,650	4,950	64.3
	예방기술개발(R&D)	24,944	31,544	41,641	10,097	32.0
	마케팅지원사업	1,297	1,297	2,490	1,193	92.0
	R&D사업화 계정 출연	50,000	50,000	102,327	52,327	104.7
	수출지원기반활용	150,203	250,203	313,678	63,475	25.4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4,422	4,422	15,031	10,609	239.9
	스마트제조공정혁신기술 개발(R&D)	6,600	6,600	33,824	27,224	412.5
	탄소감축 기술개발(R&D)	5,000	5,000	25,699	20,699	414.0
	구미전자공고 생활관 개축	2,776	2,776	16,376	13,600	489.9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511,269	511,269	547,731	36,462	7.1
	개방협력형기술개발(R&D)	230,913	230,913	259,030	28,117	12.2
	투자연계기술개발(R&D)	1,125,432	1,125,432	1,353,256	227,824	20.2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93,572	105,756	117,577	11,821	11.2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3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자율)	41,652	41,652	59,047	17,395	41.8
	지식산업센터(자율)	94,817	94,817	145,122	50,305	53.1
	지역특화산업육성(자율)	3,594	3,594	63,262	59,668	1,660.2
중소벤처 기업창업 및진흥 기금 (8개)	연수사업	25,931	25,931	34,079	8,148	31.4
	채도약지원자금(융자)	612,500	662,500	840,000	177,500	26.8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20,000	880,000	1,300,000	420,000	47.7
	도약(JumpUp) 프로그램	59,500	59,500	164,247	104,747	176.0
	중진기금 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4,206	4,206	16,471	12,265	291.6
	중진공 본사 증축	276	276	4,901	4,625	1,675.7
	차입금이자상환(기금)	772,791	772,791	825,072	52,281	6.8
	창업기업지원자금(융자)	1,305,800	1,455,800	1,689,800	234,000	16.1
소상공인 시장진흥 기금 (2개)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68,128	168,128	271,432	103,304	61.4
	소상공인재기지원	339,231	363,831	408,898	45,067	12.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2. 주요 증액: 전년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중소기업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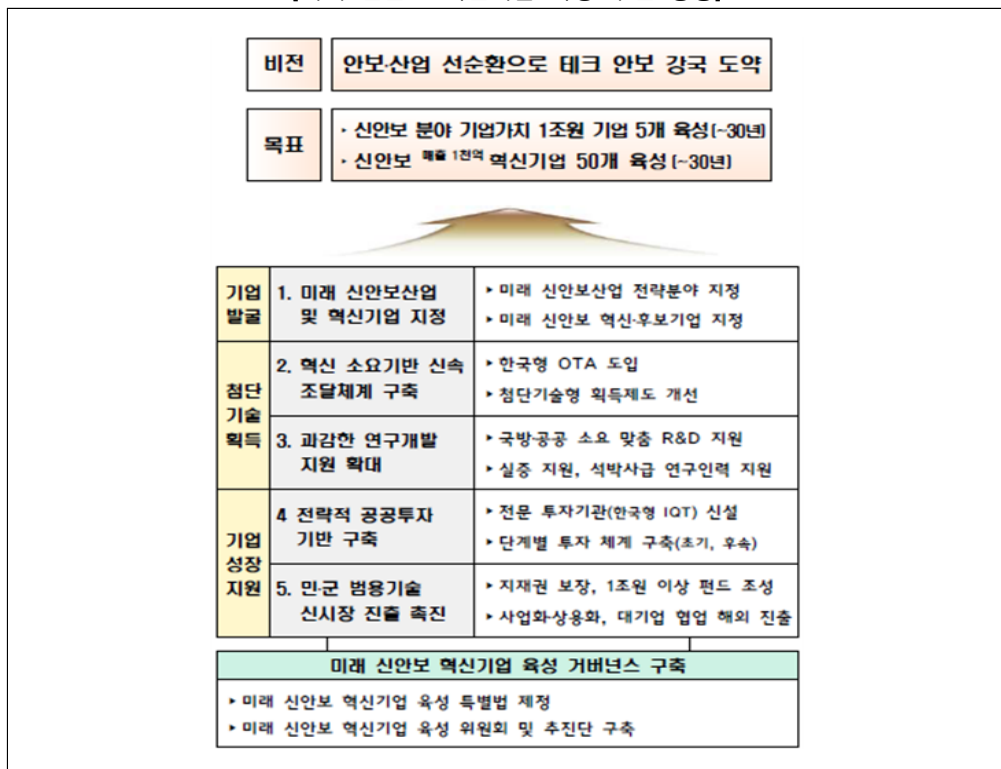
주요 사업 분석

1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 분석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사업은 관계부처합동으로 2026년 6월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안보 분야에 스타트업 진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미래 신안보 후보기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으로 미래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한국을 테크 안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추진 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2026.6.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육성 및 매출 1천억원의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¹⁾, 공공수요 연계개발(R&D)²⁾, 안보전문투자기관³⁾, 신안보 투자 펀드⁴⁾ 등 신규 사업 4개로, 총 32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⁵⁾

[2027년도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 회계	기술혁신기반조성	16,521	43,566	49,816	68,832	19,016	38.2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	-	-	1,000	1,000	순증
	개방협력형기술개발(R&D)	85,303	230,913	230,913	259,030	28,117	12.2
	공공수요 연계개발	-	-	-	2,500	2,500	순증
미래 기금	안보전문투자기관	-	-	-	3,820	3,820	순증
중진 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00,000	820,000	880,000	1,300,000	420,000	47.7
	신안보 투자 펀드	-	-	-	25,000	25,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은 무인·자율 및 로봇틱스 등의 신안보 전략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공공수요 기반 R&D, 사업화 및 투자 등을 연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0억원이 편성되었다.

1) 코드: 일반회계 2131-302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2134-485의 내역사업

3)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335-300

4)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264-301

5) 타 부처에서는 방사청의 방산 혁신기업 투자펀드 사업에 2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안보 분야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해 신안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으로 혁신기업으로 육성할 필요
지원목적	신안보 전략분야 핵심기술 보유한 우수기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 지원
지원대상	신안보 전략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기업 *예: ▲무인·자율 및 로봇틱스, ▲초지능 및 AI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 및 미래소재,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암호기술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
지원내용	신안보 전략분야의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을 지정하여 공공수요 기반 R&D, 사업화 및 투자 등을 연계 지원 - 정부수요 및 민간제안을 병행하여 신안보 전략분야를 발굴·지정 - 기업Pool등록 → 후보기업지정 → 혁신기업지정 3단계로 전략분야별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을 발굴·지정 * 예: 최초 3년 지정(심의를 통해 ▲후보기업 재지정 또는 ▲혁신기업 2년 내 연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수요 연계개발(R&D)은 미래 신안보 분야의 수요 기반 고난도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년간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국비지원율 최대 75%)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출연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7년도 예산안은 5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20억원(12개월 기준) 중 3개월치 연구개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공공수요 연계개발(R&D)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미래 안보환경 변화와 공공·국방 분야의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 혁신 기술의 실증·고도화 및 현장적용 가능성 검증 등 수요 기반 연구개발 지원
지원대상	미래 신안보 분야 후보기업·혁신기업* 중심 컨소시엄 *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선정한 신안보 분야 유망 중소기업
지원규모	5개 과제 내외, 최대 5년간 100억원 이내 *27년 기준, 과제별 20억원*(3/12개월)
지원내용	미래 신안보 분야 관련 수요기관이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1단계 R&D → 2단계 현장적용(실증) 지원 - (1단계: R&D) 구매 협약을 체결한 혁신기업이 신안보 수요기관이 제시한 기술 목표에 맞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2단계: 현장적용) 개발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요처와 공동 현장적용(실증)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안보전문투자기관은 신안보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신안보 전용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인큐텔인 안보전문투자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투자 등 관련 IT시스템 구축·설비를 위한 보조금 32억 2,000만원과 펀드 출자금 6억원 등 총 3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안보전문투자기관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안보전문투자기관을 통해 신안보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신안보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해 직접 투자하여 향후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기업을 육성 * (해외사례) 민간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 주도로 1999년 美 인큐텔 설립
사업내용	(펀드 출자금) 50,600백만원 × 1.2% = 600백만원 (출자) * 벤처투자법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는 출자 약정총액의 1% 이상 납부할 필요 (IT시스템 구축 및 시설비) 3,220백만원 (보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안보 투자 펀드는 안보전문투자기관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여 신안보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신안보 전용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출자금 25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신안보 투자 펀드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추진배경	정부와 전문 투자기관이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 합동 투자결정 기구를 설치하여 후반기·혁신기업에 투자
사업목표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출자하여 신안보 전용 펀드를 2027년 500억원 규모로 조성
사업내용	신안보 전용 펀드 출자금 25,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1.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 필요

가. 현 황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가칭)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며, 현재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21812호, 오세희의원 대표발의)⁶⁾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미래 신안보 기업 육성 관련 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안보 기업 육성 관련 사업 및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부처 간 협업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정의 규정(신안보 전략분야, 신안보 혁신기업, 신안보 후보기업,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체계기업),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 및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등의 추진체계, 후보·혁신기업의 지정 및 취소 기준,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의 설립·지위·사업 및 한국벤처투자의 출자, 후보·혁신기업에 대한 금융·기술혁신·실증·전문인력·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신안보 전략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특례 등이다.

6) 2026.10.6. 제안 → 1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의(제1장)	신안보 전략분야,新安보 혁신기업,新安보 후보기업,新安보전략투자전문회사, 체계기업
추진체계 (제2장)	新安보 혁신기업 육성계획,新安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회 내 심의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 실태조사 등
후보·혁신기업 지정·취소 (제3장)	후보·혁신기업의 지정 기준, 후보·혁신기업의 취소 기준
新安보전략 투자전문회사 (제4장)	新安보전략투자전문회사의 설립·지위·사업, 한국벤처투자의 출자, 정부 출연·출자, 사업자금 조성 및 회수금 재투자 등
후보·혁신기업 지원 및 특례 (제5장)	후보·혁신기업에 대한 금융·기술혁신·실증·전문인력·해외시장 진출 지원,新安보 전략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특례, 개발성과물 귀속 등
보칙 (제6장)	비밀엄수, 적극행정 면책, 청문, 보고·검사,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벌칙 (제7장)	벌칙, 과태료
부칙	시행일(원칙: 공포 후 6개월), 종전 후보·혁신기업 선정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된新安보전략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그런데 해당 내용은 앞서 서술한新安보 혁신기업 육성, 공공수요 연계개발(R&D), 안보전문투자기관,新安보 투자 펀드 등新安보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임에도, 법적 근거 마련 없이 2027년도 예산안에 사업을 먼저 편성하였다.

10월 말 현재 특별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 본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법이 시행됨을 고려하면, 특별법안의 처리 일정이 지연될 경우 2027년 1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법이 2026년 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래新安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따르면 미래新安보 혁신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여러 부처가 담당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각 과제에 대해서도 여러 부처가 관여되어 있는 다부처 프로젝트이다.

[미래 신안보 기업 육성 관련 과제 현황]

주요 과제	소관 부처
1. 미래 신안보산업 및 혁신기업 지정	
① 미래 신안보산업 전략분야 지정	중기부, 국방부, 국정원, 방사청 등
② 미래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 지정	중기부, 방사청 등
2 혁신 소요기반 신속 조달체계 구축	
① 한국형 OTA 도입	재경부, 중기부 등
② 첨단기술 획득제도 개선	국방부, 방사청
3. 과감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① (국방소요) 국방 R&D 연계 지원	국방부, 방사청
② (공공소요) OTA형 R&D, 맞춤 R&D	중기부, 산업부, 우주청 등
③ (공통) 실증 지원, 연구인력 채용 지원	중기부, 국방부 등
4. 전략적 공공투자 기반구축	
① 전문 투자기관 (한국형 IQT) 신설	중기부, 방사청 등
5. 민간 범용기술의 신시장 진출 촉진	
① 지재권 보장	중기부, 방사청
② 사업화상용화 지원	중기부, 국방부
③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정책금융 우대	중기부, 금융위 등
④ 수출바우처, 대기업 협업 해외판로 지원	중기부, 방사청
6.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거버넌스 구축	
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 국방첨단전략사업법 제정(국방부, 방사청), 국가계약법령 개정(재경부)	중기부
②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관계부처
③ 국방예산 분류·관리	기획처, 관계부처

자료: 관계부처합동,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2026.6.

일례로, 미래 신안보 후보기업 및 혁신기업 지정 과제의 경우,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및 협·단체의 추천 또는 기업의 직접 신청 등을 통해 기업 풀을 구성하고, 그중 혁신성·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후보기업을 지정하며, 후보기업 중 보안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기업을 지정하게 된다.

[신안보 후보·혁신기업 지정 계획(안)]

구분	추진 방식	관계부처
기업 풀 구성	관계부처 및 협·단체 추천, 기업 직접 신청 등을 통해 기업 풀 발굴·구성	국방부, 방사청, 우주청, 금융위, 재경부, 기획처 등
후보기업·혁신기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 ◦ 후보기업: 기업 풀에서 혁신성·성장성 등 고려하여 지정 ◦ 혁신기업: 후보기업 중 보안체계 구축 등 고려하여 지정 <p>*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심의</p>	<p>위원장: 국무총리</p> <p>부위원장: 중기부·국방부 장관</p>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각 과제별 추진 내용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과제별 연계가 중요한데, 일례로, 미래 신안보 기술의 R&D가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실증 지원 사업으로의 연계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미래 신안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수출바우처·사업화 지원은 기업 풀 구성 및 후보·혁신기업 지정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기업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

[추진체계 구축 계획(안)]

추진체계	구성 및 기능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심의·조정 대상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신안보 전략분야의 지정·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 - 혁신기업의 지정·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권 활용 제한에 관한 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등 </div> ◦ 위원장 1명(국무총리) 및 부위원장 2명(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방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중 위촉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위원회 내 설치 ◦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분야별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회 내 설치 ◦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간 협조 및 사업·과제 간 연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안보 기업 육성 관련 사업 및 과제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부처 간 협업이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2. 신안보 전용 펀드 출자 예산 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가. 현 황

정부는 후보기업·혁신기업의 리스크를 전담하여 미래 신안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기관을 신설하기 위하여 안보전문투자기관 설치 및 신안보 투자 펀드 출자와 관련된 사업을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안보전문투자기관 내 투자 등 관련 IT시스템 구축·설비를 위한 보조금 32억 2,000만원(안보전문투자기관⁷⁾)과, 500억원 이상의 신안보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펀드 출자금 총 506억원(안보전문투자기관, 신안보 투자 펀드⁸)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투자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기금	사업명	2027 예산안	예산 내역	
				운영	투자
중기부	미래 기금	안보전문투자기관	3,820	투자 등 관련 IT시스템 구축·설비를 위한 보조금 32억 2,000만원	펀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출자 약정총액의 1% 이상 납부하기 위한 펀드 출자금 6억원
	중진 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300,000	-	-
		신안보 투자 펀드 ¹⁾	25,000	-	펀드 출자금 250억원
방사청	일반	방산역량성장지원	208,788	-	-
	회계	신안보 투자 펀드	25,000	-	펀드 출자금 250억원

주: 1) 모태펀드 내 기존 중진계정에서 조성하는 것으로 기획 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335-300

8) 중기부 사업 -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264-301

방사청 사업 - 코드: 일반회계 2637-314

나. 분석의견

신안보 전용 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의결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정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보전문투자기관이 유사 펀드와 지원대상을 차별화하여新安보 전용 펀드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신규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래新安보 혁신기업 투자 관련 사업은 현재 모태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안보전문투자기관으로 하고, 정부 출자금으로 조성된新安보 전용 펀드를 안보전문투자기관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보전문투자기관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⁹⁾로 설립될 예정으로, 안보전문투자기관의 설립, 법적 지위,新安보 전용 펀드 운용을 비롯한 사업 범위, 한국벤처투자의 출자 근거 및 자회사 지분 소유 근거 등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21812호, 오세희의원 대표발의)¹⁰⁾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력 구성·사무소 소재 등과 관련한 사항은 검토 중이다.

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2026년 12월 한국벤처투자(모회사) 이사회 의결, 임원 선임 등 법인 설립 준비, 2027년 1분기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등기, 같은 해 2분기新安보 전용 펀드 결성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부터新安보 후보·혁신기업에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며, 투자 대상 기업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0. “벤처투자회사”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10) 2026.10.6. 제안 → 1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및 운영 계획(안)]

연월	추진 내용
'26.12월	한국벤처투자(모회사) 이사회 의결, 임원 선임 등 법인 설립 준비
	기업 풀 구성
'27.1분기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등기
	투자관리·경영지원시스템 등 IT시스템 및 시설 구축 추진
'27.2분기	민·관 협의체 설치, 정부(중기부, 방사청) 및 안보전문투자기관 출자
	신안보 기업 전용펀드 결성
'27.하반기	신안보 후보·혁신기업 투자 개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안보전문투자기관의 설립 및 후보·혁신기업 지정제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의결,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등기, 기업 풀 구성과 후보·혁신기업 지정 등이 연쇄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져야 신안보 전용 펀드를 통한 신안보 후보·혁신기업 지정기업에 대한 투자가 2027년 하반기에 본격 시작될 수 있다.¹¹⁾

그럼에도 10월 말 현재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후 심사가 진행되기 전으로, 특별법안 심의·의결 단계가 지연될 경우 후속 일정 지연으로 2027년 하반기에 지정기업 투자가 본격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안보 전용 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의결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정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 분야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K방산수출펀드 등이 운용되고 있는데, 해당 펀드와 신안보 전용 펀드 간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신안보 전용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여 신규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11)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이전에는 안보전문투자기관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여 신안보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신안보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를 수행할 수는 있으나, 특별법안의 국회 의결, 기업 풀 구성과 후보·혁신기업 지정 등이 연쇄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져야 후보·혁신기업 지정 제도와 연계된 투자가 2027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보 관련 펀드 현황]

구분	신안보 전용 펀드(안)	K방산수출펀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사업명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방위사업청) 방산혁신기업 투자펀드	방산수출 투자지원
구성재원	정부재정 100%	정부재정 + 민간자금 매칭
펀드 운용기관	안보전문투자기관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펀드 조성기간	'27~'30	'25~'27
현재 펀드 규모	-	'26년까지 1,000억원 조성 예정 (정부재정 500억원, 민간자금 500억원)
전체 펀드 규모	'30년까지 2,000억원 조성 (정부재정 100%)	'27년까지 1,600억원 조성 예정 (정부재정 800억원, 민간자금 800억원)
투자 분야	안보기관이 제시하는 필요기술 또는 개발역량을 보유한 신안보 ¹⁾ 혁신기업	방위산업 해외수출 보유기업,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진입 추진 기업 등

주: 1) 신안보 분야 예시: ▲무인자율 및 로보틱스, ▲초지능 및 AI 반도체, ▲차세대 국방 센서 및 미
래소재, ▲우주항공 및 유무인 복합체계, ▲사이버 보안 및 양자 암호기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신안보 전용 펀드의 주목적 투자 비율 산출 시 K방산수출펀드 투자 대상인 방위산업 기업보다 기존 펀드에서 주요 투자 대상이 아닌 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등 신안보 전용 펀드와 유사 펀드 간 지원대상을 차별화 함으로써 효과적인 신규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신안보 전용 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심의·의결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정 규모로 편성될 필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보전문투자기관이 유사 펀드와 지원대상을 차별화하여 신안보 전용 펀드를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신규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출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²⁾에 근거하여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 성장전략 수립, 마일스톤 설정, 필요 묶음사업 추천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술혁신기반조성	16,521	43,566	49,816	68,832	19,016	38.2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	-	-	10,000	1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금융, 수출바우처, R&D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00개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2131-302의 내역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7년도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및 기업 생태계 육성
지원대상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지원내용	혁신기업에 전문 컨설팅 지원 후 필요 지원사업 연계
2027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0백만원 가. 혁신기업 대상 전문 컨설팅 8,7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컨설팅) 300개사 × 29백만원 = 8,700백만원 나. 혁신기업 네트워킹 등 26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기업 발대식 등) 300개사 × 0.9백만원 = 265백만원 다. 신청기업 평가 및 사업 플랫폼 구축 73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평가) 750개사(지원 물량 3배) × 0.45백만원 = 335백만원 · (사업 운영 플랫폼 구축) 1식 × 400백만원 = 400백만원 라. 기타 운영비 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관리, 홍보 등) 300백만원 = 300백만원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첫째,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은 향후 총 1,000개사에 대해 혁신기업 별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고 묶음사업별로 혁신기업을 우대하므로 재정의 효율성·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성장디렉터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유관 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은 2026년 8월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등 신성장 분야는 글로벌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아이디어 기반 빠른 진입·선점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성장 분야의 최상위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편성되었다.

[신성장 분야 및 해당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사)

분야	세부 품목	전체(소상공인 제외)			선정 목표
		중기업 수	소기업 수	계	
신안보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드론(무인기), 항공기, 인공위성, 첨단방산 등 62개 품목	7,585	10,058	17,643	100
제약바이오	바이오센서, 재생의료, 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장내미생물치료 등 30개 품목	3,427	4,152	7,579	50
기후테크	태양광발전, 재생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원자력발전 등 44개 품목	1,460	2,613	4,073	50
K-소비재	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등 9개 품목	2,791	3,356	6,147	100
계	145개 품목	15,263	20,179	35,442	300

주: 2026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현재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은 약 3.5만개로 추정되는데, 그중 관계부처가 함께 성장성·잠재성·기술사업성 등을 심사하여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300개사 발굴 ①하고, 성장디렉터를 혁신기업별로 전담 배정하여, 성장전략 수립, 마일스톤 설정, 필요 지원사업 추천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②한 후,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업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존의 타 지원사업들(기술사업화패키지, R&D, 혁신성장지원자금(융자), 수출바우처, 펀드 등)을 묶음으로 최대 5년간 지원③하려는 것이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지원 방식]

단계	내용
① 혁신기업 선정	<p>(1단계) AI·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의 매출·고용 증가, 기술, 인력, 인프라 등을 복합 분석하여 성장성·잠재력 확인</p> <p>(2단계) 민관합동평가단*을 통해 성장전략, 혁신역량, 기술사업성 등 평가 *(기술전문가) 교수·연구원 등, (성장전문가) AC·VC·CVC, (지원기관) 정책기관 심사역</p> <p>(3단계) 관련 분야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年 300개사* 공동 선정 *장기적으로 총 지원물량을 1,000개사로 제한</p>
② 전문 컨설팅	<p>◦ 관계부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출연연, 글로벌 컨설팅사 등 기업 성장 전문가를 '성장디렉터'로 지정하여 혁신기업별 전담 배정</p> <p>-기업별 경영 상황을 심층 진단하고, 대·내외 기술·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p> <p>-성장전략 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제안</p> <p>-연도별 달성 가능한 마일스톤*을 기업·성장디렉터가 함께 설정 *매출·고용 성장률, 시장점유율, 투자유치액 등</p>
③ 육음사업 지원	<p>◦ 성장디렉터가 제안한 기업별 성장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육음*으로 우선 2년간 패스트트랙** 지원 *기술사업화패키지, R&D, 혁신성장지원자금(용자), 수출바우처, 펀드 등 *사업별 최소 요건만 확인, 기존 평가 생략</p> <p>◦ 2년 후 기업·성장디렉터가 설정한 마일스톤 달성 시 3년간 추가로 육음 지원</p> <p>◦ 그 외에도, 민간 벤처캐피탈 대상 정기적 IR 개최 등으로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 수요·판로 확보 지원 등을 위한 전담 창구 운영</p>

자료: 관계부처합동,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2026.8.27.

이때, 육음사업 지원 단계는, 성장디렉터가 제안한 기업별 성장에 필요한 기존의 타 지원사업(기술사업화패키지, R&D, 혁신성장지원자금(용자), 수출바우처, 펀드 등)들을 우선 2년간 패스트트랙으로 사업별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지원하고, 2년 후 기업별 마일스톤을 달성할 경우 3년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장 5년간 최대 100억원(+α)이 지원된다.

[육음사업 지원 내용 및 예시]

구분

내용

육음사업
지원 내용

분야	육음지원사업	지원내용	年 지원단가
사업화	기술사업화 패키지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업화 진단·처방 및 사업화 서비스 지원	기업당 평균2억원
	프로젝트방식 R&D 보증	정부 R&D 완료 또는 공공 기술 이전 받은 기업에 사업화 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기업당 평균15억원
R&D	구매연계·상생협력 R&D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기술 수요처의 구매 수요기반 R&D 지원	기업당 3억원
금융	혁신성장 지원자금	생산성향상, 고부가 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융자) 공급	기업당 평균4.3억원
수출	수출성장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바이어 발굴, 인증 등 각종 수출 서비스를 메뉴판 식으로 종합 지원	기업당 평균1억원
인력	신성장 연구 인력지원	R&D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1명당 평균0.3억원
분야별 특화		중기부 분야별 특화 R&D, 모태펀드 등 관계부처 데이터, 규제·실증·인증, 조달 지원 등	사업별 상이

(예시)
기업 기준

분야	내역사업명	지원년차					지원금액
		1	2	3	4	5	
컨설팅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0.3억원
↓							
투자	新安보 모태펀드						25억원(Series A 전제)
↓							
R&D·사업화	공공수요연계 R&D						100억원(5년 X 20억)
	신성장 연구인력지원						2억원(2회 X 1억)
	기술사업화패키지						6억원(시제품·실증·인증 등 2억 x 3회)
↓							
생산(금융)·수출	수출성장패키지						2억원(2회 X 1억)
	혁신성장지원자금						시설자금 15억원
합계							100+α

자료: 관계부처합동,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2026.8.27.

그리고 장기적인 총 지원물량은 1,000개사로 제한하여 관리할 예정(관계부처합동,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2026.8.)으로, 정부 재정을 통해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5년간 최대 100억원씩 지원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프로젝트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이고,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으로 한번 선정되면 최장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 상당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묶음사업 지원은 기술사업화패키지, R&D, 혁신성장지원자금(융자), 수출 바우처, 펀드 등 기존 타 지원사업별 제한된 예산 하에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물량 할당 또는 평가 가점 등의 방식으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우대할 예정인데, 물량 배분 규모 또는 가점 부여 방식에 따라 과거 대비 일반 기업에 대한 지원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처럼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 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바, 동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 준비가 철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혁신기업의 평가 항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민관합동평가단을 구성하는 기술전문가·성장전문가 등에 대한 충분한 인적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기업이 지원받는 5년간 기업의 상황 진단,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 필요한 묶음사업 제안, 마일스톤 설정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성장디렉터의 능력이 기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성장디렉터의 역할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장디렉터가 컨설팅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동 프로젝트는 다분야·다사업이 관계된 다부처 사업인바, 민관합동평가단 풀 구성, 혁신기업 및 성장디렉터 선정, 묶음사업 지원, 혁신기업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유관 부처·기관과의 협업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성장디렉터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성장디렉터는 묶음사업을 추천할 수 있을 뿐 지원사업별로 특정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이 반드시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위한 별도 물량을 할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할당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간 경쟁이 초래돼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별로 추천된 필요한 사업 지원을 모두 적기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타 부처 소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기준에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가점을 도입하더라도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이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어 묶음사업 연계 지원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³⁾

[묵음사업 지원 방식]

소관	묵음사업		우대 방식
	유형	예시	
중기부	공통	기술사업화패키지, 프로젝트방식 R&D 보증, 제조혁신·생산고도화(용자), 수출성장패키지, 신성장 연구 인력지원, 구매연계·상생협력 R&D	물량 할당
	분야별 특화 사업	공공수요 연계개발,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 신안보 전용 펀드 등	
타 부처	분야별 특화 사업	(협의 중)	가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유관 부처·기관과의 면밀한 협업을 통해 적절한 물량 배분 규모 또는 가점 부여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묵음사업 연계 지원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은 향후 총 1,000개사에 대해 혁신 기업별 최장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동시에 묵음사업별로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을 우대함에 따라 재정 지출의 효율성 및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야별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성장디렉터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유관 기관·부처와의 협업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의 성과지표가 ‘사업 참여기업 만족도’로, 신성장 분야별 세계 시장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동 사업 목표와는 괴리되는 측면이 있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분야별 정책적 세부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별 혁신기업의 마일스톤과 연계한 성과지표·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사업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3)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물량 할당 사업의 경우 2027년 기준 사업별 150개사 이상의 할당 물량을 확보하였고, 할당 물량 초과로 2027년에 지원하지 못하더라도 2028년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타 부처 사업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가점 외 실효적인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관련 사업을 통해 향후 총 1,000개의 혁신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별로 묶음사업에 대해 최장 5년간 최대 1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여, 최종적으로는 신성장 분야별 세계 시장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례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와 매출 1천억원 혁신기업 5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성장 분야별 정책 목표]

분야	목표
신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안보·산업 선순환으로 테크 안보 강국 도약 ◦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기업 5개 육성(~30년) - 신안보 매출 1천억 혁신기업 50개 육성 (~30년)
제약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30조원 달성 * 2026년 하반기 「K-제약바이오 프론티어기업 육성방안」 추가 발표 예정
기후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 * 2026년 하반기 세부 대책 추가 발표 예정
K-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글로벌 위상 : 화장품 수출 2강으로 도약 (~'30년) ◦ 세부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수출금액 ('24) 102억 \$ → ('30) 150억 \$ - 수출 중소기업 수 ('24) 8,987개 → ('30) 10,000개 *2026년 하반기 세부 대책 추가 발표 예정

- 자료: 1. 관계부처합동,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2026.6.
2.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 2026.3.
3.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위기,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후테크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및 현장 대화」 추진」, 2025.5.1.
4. 관계부처합동,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방안」, 2025.11.27.
5. 관계부처합동,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2026.8.27.

이를 고려하면, 동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선정된 혁신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마일스톤, 즉, 매출·고용 성장률, 시장점유율, 투자유치액 등과, 분야별로 특정 수준의 기업가치·매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수 등과 연계하여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 만족도’로, 사업 목표와는 다소 괴리된 지표가 설정된바, 이 경우 사업 목표와 연계한 사업 성과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 참여기업 만족도 (단위: %)	목표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 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컨설팅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달성도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이 대규모 재정 지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임을 고려하여,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분야별 정책적 세부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개별 혁신기업의 마일스톤과 연계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사업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취지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수출지원기반활용(보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¹⁾은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²⁾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 단계에 맞춰 맞춤형 바우처를 운영하여 수출 진입장벽 해소 및 수출 선도기업으로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634억 7,500만원 및 추경 대비 634억 7,500만원 증액된 3,136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217,360	150,203	250,203	313,678	63,475	25.4
수출기반바우처	217,360	150,203	250,203	100,000	△150,203	△60.0
수출성장패키지	-	-	-	213,678	213,678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131-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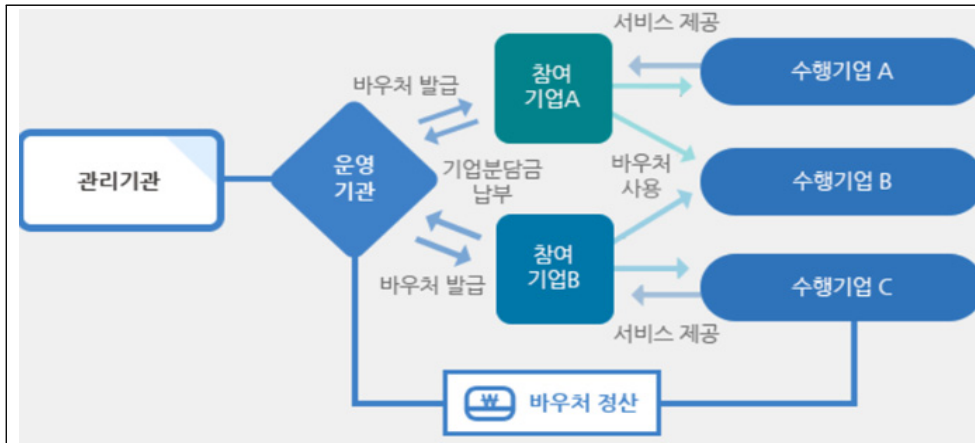
2)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은 지원 신청을 통해 선정되어 바우처(국고 보조금 + 기업 자체 부담금)가 지급된 중소기업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다.

[수출바우처 기본 흐름도]



자료: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2026년 기준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컨설팅, 통번역, 국제운송, 무역 보험보증 등 일반 14개 서비스, 테크전용 서비스, 그리고 물류전용 서비스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단계별 묶음·다년 지원을 통한 수출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 단일 사업이었던 2026년 대비 2027년 사업을 개편하여 ① 수출기반바우처와 ② 수출성장패키지 등 두 개의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였다.

① 수출기반바우처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 보험, 물류 등을 지원하기 위한 3~6개월 단기 소액 바우처로, 2027년도 예산안은 5,000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2,500만원(자부담 포함, 국비지원율 80%)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② 수출성장패키지는 수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성과 우수기업의 전략적 집중 육성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000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8,400만원(자부담 포함, 국비지원율 40~80%)의 바우처와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단·디렉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출액·매출액에 따라 지원한도·국비지원율을 차등화하고, 우수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선정 기업이 다음 지원트랙 수출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차년도 지원에 자동 선정되는 구조를 도입하였다.

[수출성장패키지 지원트랙별 지원 구조]

지원트랙	지원대상	지원한도 (백만원)	국고보조율			
준비 (舊 내수·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미만	50	- 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진입·성장 (舊 유망·성장)	전년도 수출액 '10만~500만불 미만'	80				
확장·고도화 (舊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20	지원 횟수	매출액 기준		
			100억 미만	100~ 300억 미만	300억 이상	
			1,2회	80%	70%	60%
			3,4회	70%	60%	50%
			5회	60%	50%	40%

주: 전략과제(수출 성과 우수기업, K-수출전략품목, 신성장핵심기업)의 경우 100% 한도 추가 지원 부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수출기반바우처)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단기 소액 바우처를 운영하여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지원 (수출성장패키지)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 단계에 맞춰 수출 진입, 수출 성장, 수출 확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바우처를 운영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
지원내용	메뉴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및 진단·컨설팅 지원
지원율	(수출기반바우처) 80% (수출성장패키지) 40~80%
2027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3.678백만원 〈수출기반바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바우처 지원: 100,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 25백만원 × 80% × 5,000개사 〈수출성장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업 지원: 213,51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 84백만원 × 70% × 120% × 3,000개사 진단·디렉팅: 2백만원 × 1,000개사 나. 사업운영비 16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운영(수용비, 여비): 13개 지방청 × 12.9백만원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수출바우처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통합’ 의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 사업 추진 부처 및 기획예산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10여년 간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분리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2017년 산업통상부(구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가 처음 추진하였고, 이후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이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식재산처는 2019년까지만 수행한 결과, 2026년 현재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의 부처에서 수행 중이다.

[부처별 수출바우처 사업 연혁]

일정	추진 내용
'17.1월~	산업부 및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수출바우처 도입
'18.1월~	수출바우처 운영부처로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추가
'20년	특허청 소관 사업 종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처별 수출바우처 사업 현황]

구분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사업명	수출지원기반활용 (일반회계, 1139-307)	수출지원기반활용 (일반회계, 3131-301)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농식품우수기업육성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5-406)	수산물해외시장개척 -경쟁력강화 -수출역량강화 -유망기업육성 (수산식품기업바우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7-300)
바우처 예산	'26년 179,234백만원 '27년(안) 168,361백만원	250,203백만원 313,678백만원	72,004백만원 88,320백만원	18,353백만원 19,436백만원
2027년도 지원기업 수	2,056개사	8,000개사	800개사	174개사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분야	소부장·서비스·그린·소비재 등	전 분야	농식품	수산식품
관리기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SMES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각 부처별 사업설명자료

그리고 기획예산처가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³⁾를 진행한 결과, 통합평가단은, 각 부처별 수출바우처 사업 간 지원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지원을 제외하여 지원대상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동일·유사 플랫폼과 공급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원의 일관성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한 기관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통합’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출바우처 사업 관련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견]

- 중소벤처기업부 이외에 산업통상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에서 동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하나의 부처(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부(산업글로벌진출역량강화)는 소부장, 소비재, 서비스 등 산업별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는 농식품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수산물해외시장개척-수산식품기업바우처)는 수산식품 관련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짐
- 각 부처 간 사업 공동운영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중복지원을 제외하여 지원대상을 차별화하고 있으나, 동일·유사 플랫폼과 공급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 지원의 일관성과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자료: 기획예산처,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이때,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도입 취지상 통합평가단의 의견은 각 부처별 2027년도 예산안 등을 통해 환류되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평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7년도 수출바우처 사업의 제도개선 방식을 검토하였고,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수출바우처 플랫폼과 수행기관 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 통합·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는 있으나, 각 부처 사업을 통합하기보다는 각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업을 재구조화·차별화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3) 2026년 새로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각 부처 자율평가의 관대화 경향, 예산 환류 미흡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별평가와의 통합·연계를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제도이다. 통합평가단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하되 시민사회를 포함 총 153명으로 구성(1.28.)되었으며,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4개월간의 평가 작업 끝에 최종 결과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5.18.)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자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원년(元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추진」, 2026.5.18.)

[수출바우처 제도개선 검토 내용]

구분	내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부·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목적과 대상, 서비스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유사·중복 지적 지속 - 특히, 중기부·산업부는 수출바우처 플랫폼과 수행기관 Pool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 통합·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개선 방향	○ 각 사업목적에 따라 지원한도, 내용, 보조율 등이 차별화되도록 사업 재구조화		
	구분	산업부	중기부
	사업목적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을 통한 기업 성장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의 바이어 발굴, 현지 대응, 컨설팅 등 시장 진입·안착 지원 -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 전쟁 등에 따른 수출 위기기업 긴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디렉팅에 기반한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디자인·마케팅 등 수출역량 구축 -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통관, 보험, 물류 등 진입장벽 해소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간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차별화, 타 부처 수출바우처 사업과의 중복 지원 불가 등의 조치는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이전에도 진행해 오던 것으로, 수출바우처 플랫폼과 수행기관 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두 부처가 사업을 분리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원의 비일관성 및 사업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산업통상부 사업의 지원대상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는 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중복 여지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통합’의 견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여년 간의 수출바우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부처가 분리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비일관성, 지원대상 기업의 혼란, 부처 간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행정 소요, 운영 비용의 중복, 성과관리의 비효율성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제시된 우려 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예산 편성 총괄 부처인 기획예산처 등 유관 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수출바우처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통합’ 의견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중소기업부는 중소기업부를 중심으로 수출바우처 사업 추진 부처 및 기획예산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10여년 간의 수출바우처 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부처가 분리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비일관성 및 성과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보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¹⁾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의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고, 후보과제 발굴·육성, 성과평가 등 특구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47억원을 편성하였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²⁾는 초광역 공급망 및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실증 R&D 및 국내 신산업 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혁신기관·기업의 장비·시설, 노하우 등을 활용한 공동 R&D를 지원(내역사업 ‘혁신사업육성(R&D)’)³⁾하고, 규제특례 사항의 실증 착수와 상용화 R&D 수행에 필요한 공용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지원(내역사업 ‘실증기반조성(R&D)’)⁴⁾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5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	-	-	4,700	4,7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	-	-	3,500	3,500	순증
혁신사업육성(R&D)	-	-	-	3,000	3,000	순증
실증기반조성(R&D)	-	-	-	500	5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초광역계정) 3339-301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초광역계정) 3339-302

구체적으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은 2026년에 지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중소기업, TP 등)에 대한 책임보험, 안전성 검증, 국내외 인증취득, 시제품 제작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개의 특구별로 약 20개사 내외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의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고, 후보 과제 발굴·육성, 성과평가 등 특구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지역 중소기업, TP 등)
지원내용	특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안전성 검증, 국내외 인증취득, 시제품 제작
지원율	58.3% 이내 (국비 7(이하) : 지방비 3(이상) : 민간자부담 2(이상))
지원체계	<pre> graph TD A[사업 총괄 중기부] --> B[전담기관 중진공] B --> C[광역연계형 특구(n)] C --> D[A지자체] C --> E[B지자체] D <--> E D --> F[총괄주관기관 지자체 소재 혁신기관 등] E --> G[총괄주관기관 지자체 소재 혁신기관 등] </pre>
2027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00백만원 ① 특구 활성화 및 육성 4,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안전성 검증, 국내외 인증취득,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위한 예산 * 2개 특구 × 20개사 × 100백만원 × 12/12개월 = 4,000백만원 ② 특구 운영 7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지정 특구 관리, 후보과제 발굴·육성, 성과운영 및 성과관리 등 특구 운영을 위한 예산 * (특구관리) 2개 특구 × 250백만원 × 12/12개월 = 500백만원 * (선정운영 및 성과관리) 200백만원 (성과관리 100, 특구제도 안착화 50, 후보과제 발굴·육성 50)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사업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의 제품·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R&D를 지원하기 위해 17개 과제에 대한 6개월분의 예산과,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동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개 과제에 대한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표	초광역 공급망 및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실증 R&D 및 국내 신산업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지원대상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지역 중소기업, TP 등)
지원내용	실증 R&D 지원,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지원율	혁신사업육성 (R&D) - (기업) 58.3% 이내 / (비영리기관) 70%이하 실증기반조성 (R&D) - 50% 이내
지원체계	<div style="text-align: center;"> <pre> graph TD A[사업 총괄 중기부] --> B[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B --> C[광역연계형 특구(n)] C --> D[A지자체] C --> E[B지자체] D <--> E D --> F[총괄주관기관 지자체 소재 혁신기관 등] E --> G[총괄주관기관 지자체 소재 혁신기관 등] </pre> </div>
2027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00백만원 (1) 혁신사업육성(R&D) : 3,000백만원,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사업자의 제품·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R&D 지원 $\Rightarrow$ (2개특구) 17개 과제 $\times$ 352백만원 $\times$ 6/12개월 = 3,000백만원 (2) 실증기반조성(R&D) : 500백만원, 순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사업자가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Rightarrow$ (2개특구) 3개 과제 $\times$ 333백만원 $\times$ 6/12개월 = 500백만원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특구 내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비수도권 시·도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다³⁾.

이때 적용되는 규제특례들은 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비롯하여 201개의 메뉴판식 특례(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에 대한 유예 또는 면제)와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샌드박스)⁴⁾이며, 2019년 1차부터 2026년 6월 11차까지 총 55개가 지정되어 왔다.⁵⁾

그런데,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신기술 또는 개별기업 제품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산업구조 전환·시장 창출까지 연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 지자체 단위 실증에 따른 공간·자원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품·서비스 간 결합에 의한 공급망 내 복합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2개 이상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들이 적용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들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나.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장제3절에 따른 규제특례 및 제3장제2절에 규정된 사항

5) 기존 규제자유특구 기준(글로벌혁신특구 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규제자유특구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간 차이점]

구분	기존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법적 근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신청자	비수도권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2개 이상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공동 신청
신청 요건	규제특례 필요성, 실증사업 추진 가능성, 지역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한 특구계획 제출	복수 지역 연계 필요성, 공동 실증 필요성, 산업 가치사슬 연계성, 공동 활용 가능한 인프라 확보 등을 포함한 광역 특구계획 제출
분야	분야 제한 없음 (미래차·수소·바이오 등 신기술 신산업 분야 중심)	광역 협력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중심
지정 영역	비수도권 내 일정 구역	2개 이상 광역지자체에 걸친 연계 구역
지정 규모	개별 시·도 단위 중심	복수 시·도 연계(광역 단위)
지정기간	원칙적으로 4년 (필요 시 연장 가능)	
특구사업자	특구 내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 등	참여 지자체별 특구사업자(기업·기관 등)
특례 내용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개요]

구분	내용
개념	2개 이상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
규모	'30년까지 총 5개 지정 목표('26년 2개 지정 완료) *스마트농업(전남광주-전북-충남), 신해양레저(경북-부산)
절차	<div> <div>①특구계획 신청 시도 →중기부</div> → <div>②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분과위, 관계부처</div> → <div>③특구계획 사전심의 심의위원회</div> → <div>④심의의결 규제자유특구 위원회</div> → <div>⑤지정고시 중기부 →시도</div> </div>
역할	<p>중기부-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부) 지역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간 융합', '공급망 혁신' 등 지자체간 연계에 적합한 사업모델 제시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 등 총 5개 사업모델 - (지자체) 중기부가 제시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특구 기획 및 지자체간 협업, 특구 내 기업활동 지원, 특구별 전담 PM팀 운영
재정지원	특구 기획 비용, 실증 R&D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책임보험·안전성 검증 비용 일부 지원, 사업화 지원 ('27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설은 국정과제 34번 중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6년 8월 2개의 과제가 최종 지정되었다⁶⁾.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일정]

구분	내용
'26.2.6.	후보 신청 공모일
'26.3.9.~'26.3.13.	후보 신청기간
'26.4.10.	후보과제 선정(4개) *① 전남광주-전북-충남(스마트농업), ② 경북-부산(신해양레저), ③ 충북-강원(신의료관광), ④ 부산-경북-경남(신유통물류)
'26.6.10.	후보과제 적정성 검토
'26.6.17.~19.	후보 대상 지정 신청(2개)
'26.7.16.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회 내 분과위원회
'26.8.5.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회 *위원장: 중기부장관
'26.8.21.~25.	규제자유특구위 (서면) *위원장: 국무총리
'26.8.31.	장관 최종 지정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두 특구 내 43개의 특구사업자는 2027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사업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R&D) 사업을 통해 실증, R&D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내 특구사업자 현황]

지역	전남광주-전북-충남	경북-부산
특구명(분야)	스마트농업	신해양레저
지정목적	재생에너지 기반 직류 전력망과 자율작업 농기계, 전기농기계 충전 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농업 전주기 실증 · 확산	자율운항 및 로봇 기술의 실해역 통합 실증을 통해 글로벌 해양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고, 침체된 연안 지역을 첨단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
면적	24.573km ²	682.23km ²
지정일	'26.8.31.	
지정기간	'26.9.1. ~ '30.12.31.	
특구사업자	21개 사업자	22개 사업자
특례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등 총 8개 특례	선박입출항법 등 총 4개 특례

자료: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6-69호)」

6)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2027년에 1~2개를 추가 지정*하는 등 2030년까지 5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6.9.21. 2차 후보 신청 공모, '27.4. 최종 지정 예상)

그런데 현재 지정된, 그리고 지정 예정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7)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러 시·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⁸⁾

일정한 사항을 법률 또는 하위법령 중 어떠한 입법형식으로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장기간 적용될 사항 등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법률유보원칙).

이때,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도는 특구사업자에게 상당한 규제특례가 제공되는 수혜적 제도인바, 신청권자의 범위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신청 서류 내용,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신청권자에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복수의 시·도지사’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청권자에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는 복수의 시·도지사’가 포함됨이 명확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두 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법적 근거를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는 제74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1.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비수도권 시·도지사”라 한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하 “비수도권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제2조제13호다목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0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비수도권 시·도등”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공동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도권을 제외한 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
2. 수도권을 제외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3.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보다 명확히 하고, 복수의 지자체 간 협력, 정보제공 및 자율협약 등에 관한 사항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 현황]

구분	이재관의원안	김성원의원안
의안번호	제2218758호	제2219796호
제안일자	2026.4.30.	2026.7.7.
개정조항	제72조의2 신설 등	제72조 개정 등
주요 개정내용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의 규제자유특구의 공동지정신청, 신청 시·도지사등의 상호협약 체결	
심사 현황	'26.5.4. 소관 상임위 회부	'26.7.23. 소관 상임위 회부

주: 10월 말 기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하여 특구 내 특구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¹⁾(출연, 창업진흥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²⁾ 등에 근거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제1회 추경으로 신설되었으며,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도 수정 계획 대비 2,8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4,4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380,092	373,588	579,668	954,200	374,532	64.6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	155,000	441,140	286,140	184.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1.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일반회계(~2026년) → 미래대응기금(2027년)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2025년 및 2026년은 일반회계 내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2-300의 내역사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 벤처·스타트업, 유니콘을 넘어 K-빅테크로-」(2025.12.18. 발표),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2026.1.30. 발표) 등에 근거하여 국가창업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단계별 멘토링, 경연, 창업 활동자금 등의 투자가 결합되어 있어 전 국민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을 말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세부 방향]

구분	세부 방향
참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크 창업가 4천 명, 로컬 창업가 1천 명을 합해 <u>전국 5천 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창업 활동자금 2백만원</u>을 지원 -전국 100여 개 창업 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포함된 1,600여 명 자문단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활동
창업 오디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오디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별된 <u>1천여 명의 창업가</u>가 도전하는 17개 시·도별 예선 오디션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개최하여, <u>100여 명의 ‘창업 루키’</u>를 선발 -지역별 창업 오디션을 중심으로 한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 -1천여 명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AI 솔루션 제공 ○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여 명의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사업화자금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킴업에서 100여 명의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u>대국민 창업 경진대회</u>를 개최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 제공 ○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 ○ ‘창업 루키’에게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 조성
성장 및 실패 후 재도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크 창업가에 대한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 강화,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 제공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를 통한 시장 창출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국내 100개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실증 ○ 로컬 창업가에 대한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 공급,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글로벌 상권 조성 ○ 실패 후 재도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이 경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전 경력서’ 발행 -‘재도전 플랫폼’ 구축

자료: 관계부처합동, 「국가창업시대 도약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표」, 2026.1.30.

2026년 신규 추진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두 차례로 진행되고 각 프로젝트는 일반트랙과 로컬트랙으로 구분되는데, 1차는 본예산에 편성된 기존 타 사업 예산으로, 2차는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 예산(일반트랙)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확대된 기존 타 사업 예산(로컬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7년 역시 두 차례의 프로젝트로 추진되는데, 3차·4차 각각 일반트랙·로컬트랙 모두 동일하게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도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 편성 현황]

구분	2026년			
	일반트랙		로컬트랙	
	1차	2차	1차	2차
세부사업명	-	창업 사업화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내역사업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신규)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산	세부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중 '창업패키지'(260억원), '창업중심대학' 사업(176억원) 본예산 436억원 활용	(일반회계) 제1회 추경 1,550억원	세부사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 본예산 191.9억원 활용	(소진기금) 기금운용 계획변경 453.2억원
구분	2027년(안)			
	일반트랙		로컬트랙	
	3차	4차	3차	4차
세부사업명	창업사업화지원			
내역사업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예산	(미래대응기금) 기금운용계획안 4,411.4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기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트랙 유형]

트랙	일반트랙	로컬트랙
지원목적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등을 활용·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원분야	기술창업 전 분야	지역 특색을 활용한 로컬 창업
지원자격	1차: 예비창업자 또는 이종창업 하려는 3년 이내 창업기업 2차: 예비창업자 또는 이종창업 하려는 7년 이내 기창업자	1차: 예비창업자 2차: 예비창업자 또는 이종창업 하려는 7년 이내 기창업자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계획안은 프로젝트 차수별 1만명, 두 차례에 걸쳐 총 2만명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전 국민이 혁신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 도전·보육·경연이 결합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이중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지원내용	창업 코칭부터 사업화자금까지 원스톱 지원
지원방식	아이디어 심사, 지역 예선, 지역 오디션, 전국 오디션 등 단계별 지원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41,140백만원 가. 성과 기반 보육 지원 (166,9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코칭, 단계별 프로그램 등 지원 1만명 × 2회 × 8.3백만원 나.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150,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사업화자금 5백만원×1만명×2회 · 2단계 사업화자금 25백만원×1천명×2회 다. 오디션 및 홍보(33,820백만원) 라. 창업문화 확산 등(23,020백만원) 마. 후속사업화 지원(67,4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 800명 × 평균 84.3백만원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2026년 1·2차 프로젝트가 2027년 1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7년에는 2026년 지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에 집중하고, 해당 프로젝트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한 뒤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8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등 2027년도 계획안 규모를 조정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7년 기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사업은 두 차례(3차·4차)로 추진될 예정으로, 각 단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000명에게 창업코칭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그중 지역 예선을 통해 선정된 1,000명에게 창업코칭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며, 그중 지역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 후속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전국 오디션을 통해 결정된 우승자 2명에게는 상금 및 후속 투자 등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2027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차수별 추진 계획(안)]

단계별 지원인원 ¹⁾	일정		지원내용	공개 오디션(방송)
	3차	4차		
아이디어 심사	1분기	2분기	-	구체적인 시기 등 미정
10,000명 선정			사업화자금 500만원, 창업코칭 등	
1R (지역 예선)	2분기	3분기	-	
1,000명 선정			사업화자금 2,500만원, 창업 코칭 등	
2R (지역 오디션)			-	
200명 선정			후속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등	
3R (전국 오디션)	3분기	4분기	-	
우승자 2명 결정			상금 + 투자	

주: 1) 일반트랙 + 로컬트랙 인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2026년 신규로 추진되어 한창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 평가가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 대비 2027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차 일반트랙의 경우 지역 예선을 통해 선정된 500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단계로, 지역 오디션, 권역 오디션, 전국 오디션 등의 단계가 남아있고, 1차 로컬트랙의 경우 권역 예선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600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단계로, 전국 예선, 전국 오디션 등의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2차 일반트랙 및 로컬트랙의 경우 아이디어 신청을 마감한 단계로, 지역 예선, 지역 오디션을 거쳐 전국 오디션까지 종료하면 2027년 1월이 될 예정이다.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일반트랙 추진 현황]

단계별 지원인원	추진일정	지원내용
아이디어 심사	5.16.~6.8.	(51,907명 신청)
4,000명 선정	6.9.	창업활동자금(2백만원), AI 솔루션(평균 1백만원), 창업 코칭(최대 4회)
1R (지역 예선)	6.9.~9.3.	-
500명 선정	9.4.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10백만원), GPU, 협약보증, 기술 멘토링(최대 4회) 등
2R (지역 오디션)	10월 중순	-
200명 선정	10월 중순	(일반)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10백만원), 선배 멘토링 등
3R (권역 오디션)	12월	-
100명 선정	12월	차년도 후속 사업화 지원 등
4R (전국 오디션)	12월	-
우승자 1명 결정	12월	상금 및 투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차 로컬트랙 추진 현황]

단계별 지원인원	추진일정	지원내용
아이디어 심사	5.16.~6.8.	(11,037명 신청)
1,000명 선정	6.9.	창업활동자금(2백만원), AI 솔루션(평균 1백만원), 창업 코칭(최대 4회) 등
1R (권역 예선 오디션)	6.9.~9.3.	-
600명 선정	9.4.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30백만원), 창업 교육 등
2R (전국 예선)	11월	-
100명 선정	11월	차년도 후속 사업화 지원 등
3R (전국 오디션)	12월	-
우승자 1명 결정	12월	상금 및 투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일반트랙 추진 현황]

단계별 지원인원	추진일정	지원내용
1R (아이디어 심사)	9.17. 마감	(80,764명 신청)
8,000명 선정	9월 말	창업활동자금(2백만원), AI 솔루션(1백만원), 창업 코칭(최대 4회)
2R (지역예선)	~11월	-
1,000명 선정	11월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20백만원), GPU, 협약보증, 기술 멘토링(최대 4회) 등
3R (지역 오디션)	12월	-
200명 선정	12월	차년도 후속 사업화 지원 등
4R (전국 오디션)	'27.1월	-
우승자 1명 결정	'27.1월	상금 및 투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로컬트랙 추진 현황]

단계별 지원인원	추진일정	지원내용
1R (아이디어 심사)	9.17. 마감	(12,074명 신청)
2,000명 선정	9월말	창업활동자금(2백만원), AI 솔루션(1백만원), 창업 코칭(최대 4회)
2R (지역 예선)	~11월	
1,200명 선정	11월	시제품 제작 지원(최대 20백만원), GPU, 협약보증, 기술 멘토링(최대 4회) 등
3R (지역 오디션)	12월	
200명 선정	12월	차년도 후속 사업화 지원 등
최종 (전국 오디션)	'27.1월	
우승자 1명 결정	'27.1월	상금 및 투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즉,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코칭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받은 총 15,000명 가운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창업 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 보육기관·멘토별 지원 창업자의 단계(오디션)별 통과율 등 사업 성과 전반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³⁾

동 사업은 기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을 지원하는 성격인데다 투자가 아닌 소진성 경비 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도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예비창업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 투입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2027년에는 2026년 지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에 집중하고, 2026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결과 및 프로젝트 참여자의 성과 등을 분석한 뒤 개선 사항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8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2027년도 계획안 4,411억 4,000만원에는 2026년 1·2차 프로젝트 참여자 1.5만명에 대한 창업문화 확산 지원 예산 98억 6,600만원⁴⁾ 및 2026년 1·2차 프로젝트 상위권자 600명에 대한 후속사업화 지원 예산 505억 5,000만원⁵⁾ 등 2026

3)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일 기준, 투자유치(20명, 2,938백만원), 특허출원(225명, 458건), 사업자 등록(192건) 등의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4) 9,866백만원 = 23,020백만원 × 1.5만명 ÷ 3.5만명

5) 50,550백만원 = 67,400백만원 × 600명 ÷ 800명

년 1·2차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후속지원 예산 604억 1,600만원과 2027년 3·4차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사업화·후속지원 예산 3,807억 2,400만원이 함께 편성되어 있는데, 2026년 프로젝트의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에 신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산출하여 그에 따라 2027년도 계획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7년 계획안 편성 세부 내역]

구분		2026년 1·2차 프로젝트	2027년 3·4차 프로젝트
대상인원		1.5만명 (1차 0.5만명 + 2차 1만명)	2만명 (3차 1만명 + 4차 1만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인원	보육지원	-	166,900백만원 2만명
	사업화 지원	-	150,000백만원 2만명
	오디션 및 홍보	-	33,820백만원 2만명
	창업문화 확산 (네트워킹)	23,020백만원	
		1.5만명	2만명
	후속사업화 지원	67,400백만원	
		600명 (1차 200명 + 2차 400명)	200명 (3차 200명)
	계	441,14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에는 2026년 1·2차 프로젝트 지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에 집중하고, 2026년 프로젝트 추진 결과 및 참여자의 성과 등을 분석한 뒤 개선 사항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2028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등 2027년도 계획안 규모를 조정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년창업패키지¹⁾(출연, 창업진흥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²⁾ 등에 근거하여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기업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3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청년창업패키지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380,092	373,588	579,668	954,200	374,532	64.6
창업패키지	204,255	195,187	246,267	322,880	76,613	31.1
청년창업패키지	-	-	-	30,000	3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1.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일반회계(~2026년) → 미래대응기금(2027년)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2025년 및 2026년은 일반회계 내 편성된 예산 기준으로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청년계정) 4232-300의 내역사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은 성장잠재력 높은 기술기반 청년창업기업에 체계적 육성 사업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청년 CEO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가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인프라,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0개사를 선발·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청년창업패키지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성장잠재력 높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체계적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	
지원대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 추진·관리 및 지도·감독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실행계획의 및 세부관리기준 수립·운영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주관기관의 사업KPI 달성도를 평가하여, 주관기관 지원규모 조정 및 주관기관 변경하여 지원
	주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굴지원, 인프라, 교육·훈련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필수 - 창업인프라 지원을 위한 “창업준비공간” 필수
	청년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년 200개사 선발·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자금, 창업인프라, 교육 멘토링 지원 전시회, 투자IR, 졸업기업 네트워크 등 개최 후속사업 연계지원 	
지원율	국비 70% + 자부담 30%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00백만원 가. 사업화 지원 30,000백만원 = 150백만원 × 200개사 	
수행기관	창업진흥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기존 창업 지원 사업 간에도 유사·중복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은 경력·신용·자산 축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장 네트워크 및 사업 경험도 제한적이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창업 초기에 더 큰 제약에 직면하는 반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진입과 기술기반 창업에 적극적이므로, 초기 창업여건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성장가능성 높은 청년기업이 시장에 안착·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창업패키지 지원 내용]

단계	내용
선발	① 선발 및 자금지원: 창업기업 제품·서비스의 성장성, 대표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②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주관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기업 행정사무 및 외부미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주관기관은 창업준비 공간 및 사업전용공간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
교육·훈련	③ 교육·멘토링: 기본 기업가정신 교육부터 아이디어 검증, 비즈니스모델 등의 기술사업화 코칭까지 멘토링(상주 멘토, 전문멘토 등) 지원 ④ 전문프로그램: 국내·외 전시회, 투자IR 등의 전문 행사에 참여하여, 실제 판로 개척 및 자금확보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평가	⑤ 점검 및 평가: 사업계획 이행실적 및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성과(매출, 고용 등)를 평가* *우수 창업기업에 사후관리단계의 후속지원연계지원 혜택 등을 제공
사후관리	⑥ 동문 네트워킹: 창업 선배·후배간 네트워킹, 협업 프로젝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시) 동문인의 밤 개최, 성과공유회, 청년창업 포럼, 선배기업 현장 견학, 시장진출 연계, 시제품 공동개발 등 ⑦ 후속지원: 정책자금* 등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성장 관리 *정책자금 연계지원(안) :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최대 1억원 추천), 기보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추천)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의 대표가 39세 이하인 청년 초기창업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창업인프라, 교육 멘토링, 전시회, 투자IR 등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 내용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 외에는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교육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창업중심대학 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또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교육프로그램, 지역창업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률은 세 사업 모두 30%로 동일하다.

[유사 창업 지원 사업 비교]

사업명	청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2027년도 계획안	30,00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 '창업사업화지원'의 내내역)	46,92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 '창업사업화지원'의 내내역)	108,300백만원 (미래대응기금)
지원대상	창업 후 업력 3년 이내,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은 10년 이내)
2027년 지원기업 수	200개사	520개사	927개사
지원내용	사업화자금 (최대 1.5억원), 창업인프라(공간), 교육·멘토링, 전시회·IR 참여 등	사업화자금 (최대 1~1.5억원), 교육프로그램, 후속투자 유치 등	사업화자금 (최대 1~2억원*), 교육프로그램, 지역창업 페스티벌 등 *딥테크 분야 최대 2억원
분담률 (국비:자부담)	7:3	7:3	7:3
추진기관	선정된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학교(산학협력단), 창조경제혁신센터, AC 등)	지정된 창업중심대학 *26년 기준 15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경우 2026년 기준 총 지원기업 수의 약 58.3%를 차지하는 지역기반 트랙의 경우 선정기업의 60%가 청년기업이 되도록 하고, 폐업 이력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에서 가점 2점을 부여하는 등 청년 우대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창업중심대학 사업 지원대상으로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선정되기에 불리한 측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기준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청년 우대 현황]

트랙	지역기반	대학발	딥테크
지원기업 수	535개사	222개사	160개사
청년 우대	◦청년(39세 이하) 우선(선정자의 60%) 선정	-	-
	◦폐업 이력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한 청년 창업기업은 서류평가 가점 2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대학발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2026.3.3.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 2026.6.19.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경우 연도별 청년기업 지원 비중은 35~38%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청년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창업중심대학 사업과 같이 청년 우대 기준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³⁾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연령별 지원 현황]

(단위: 개사, %)

연도	계	청년				비 청년				
		~29세 이하	~39세 이하	소계	비중	~49세 이하	~59세 이하	60세 이상	소계	비중
2022	760	90	203	293	38.6	290	137	40	467	61.4
2023	655	67	167	234	35.7	269	124	28	421	64.3
2024	620	62	164	226	36.5	228	130	36	394	63.5
2025	723	80	185	265	36.7	292	136	30	458	63.3
2026.8.	568	47	165	212	37.3	236	81	39	356	62.7
합계	3,326	346	884	1,230	37.0	1,315	608	173	2,096	6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또한, 공간이 필요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라이콘타운, 글로벌창업허브의 공유공간 등을 연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창업 지원 사업이 업력별·연령별·분야별 등으로 지나치게 다분화되는 경우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에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업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의 창업 지원 사업 간에도 지원 대상, 사업화자금 규모를 비롯한 지원내용, 분담율, 주관기관 등에서 유사·중복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이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을 별도로 신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기존 창업 지원 사업 간에도 유사·중복 여지가 있으므로 유사 사업 간 차별화 또는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⁴⁾

4)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창업패키지 사업은, 비청년 창업자와의 경쟁 없이 청년 CEO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멘토링, 졸업기업 네트워크, 청년 대상 정책자금 연계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어 선발 대상과 후속 연계 방식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가 있으므로, 청년 전용 사업으로서 독자성이 있도록 차별화하여 운영하는 동시에, 기존 창업 지원 사업 간에도 유사·중복 여지가 없도록 유사 사업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창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가. 현 황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¹⁾은 시장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 기업에, 정부가 민간 선투자에 상응하는 R&D 자금을 투자 방식으로 1:1 매칭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	-	-	20,000	2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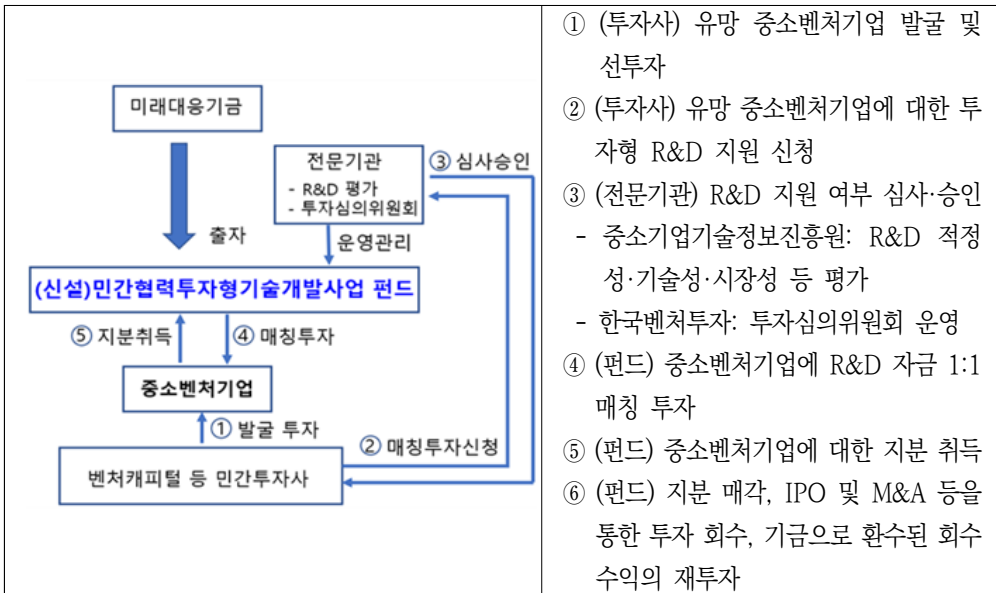
동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을 출자하여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펀드를 조성하고, VC 등 민간 투자사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및 선투자한 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에 매칭 투자를 신청(①·②)하면, 전문기관에서 평가·심의(③) 후 펀드를 통해 R&D 자금을 민간 선투자 규모와 1:1 매칭하여 기업에 투자(④·⑤)하며, 이후 지분 매각, IPO 및 M&A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여 기금으로 환수하고 회수 수익을 재출자·재투자(⑥)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이때, 민간 선투자금은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으나 정부 매칭 투자금은 R&D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투자계약 시 사전 설정한 기업성장지표 또는 R&D 성과 마일스톤 등 일정 조건을 달성할 경우 기업·투자사에 정부지분을 일부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여 경영권 보호 및 인센티브 강화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336-300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 추진체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도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시장에서 민간투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가 선투자자 상응하는 R&D 자금을 투자 방식으로 1:1 매칭 지원하여 본격 스케일업 촉진
지원대상	민간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선투자 받은 중소·벤처기업 *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7대 SEED(소형모듈 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등 딥테크 분야 중심
지원내용	민간 선투자 규모에 1:1로 매칭하여 R&D 자금을 투자 형태로 지원 * 기업당 최대 40억원, 정부 매칭 투자금은 100% R&D 목적으로 사용 * 정부·민간 합산 지분율은 15% 이내로 제한 * 일정 조건 충족 시(투자계약 시 사전 설정한 기업성장지표 또는 R&D 성과 마일스톤 달성 등) 기업·투자사에 정부지분 일부 재매입권(콜옵션) 부여(경영권 보호·인센티브 강화)
펀드기간	펀드당 약 10년 운용(투자 5년, 회수 5년)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20,000백만원 * 연구개발출자금(460-03)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사업 형태는 ‘투자형 R&D’로, 기업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기업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회수 및 재투자가 가능한 재정 순환형 구조를 띠는 점에서 소비성 지출 및 기술료 회수 중심의 기존 출연형 R&D와 구분되고, 사용 목적이 R&D 자금이라는 점에서 비R&D 자금을 지원하는 비R&D 출자 사업과 구분된다.

[출연형 R&D - 투자형 R&D - 비R&D 출자 비교]

구분	기존 출연형 R&D	투자형 R&D	비R&D 출자사업 (모태펀드 등)
지원 방식	연구 주체에 대한 일회성 직접 투자	SPC/투자조합 설립을 통한 직접 투자 중심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간접 투자 중심
목적	R&D 목적성 지원	R&D 목적성 지원	비R&D 지원
공유· 재투자	기업의 성과공유 미흡 (정부납부 기술료로 제한)	기금 등을 통해 정부 R&D 예산으로 회수재투자	모태펀드 내에서 재투자(Roll-over)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분석의견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형 R&D 사업 및 재원 관련 근거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에 마련되는 등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의 제·개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0조2), 「벤처투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67조³⁾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 또는 벤처투자 촉진 및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자 형태로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형 R&D’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을 가지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⁴⁾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투자형 R&D’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7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투자형 R&D 도입을 반영(‘26.3.12.)한 것을 시작으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투자형 R&D 신규 반영(‘26.3.31.), 「2027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연구개발출자금(460-03)’ 세목 신설(‘26.5.4.) 등 예산 지침 중심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은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중소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산업 육성 및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벤처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벤처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4. 전문개인투자자 등 벤처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5.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2. 벤처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
3. 벤처투자
4.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5.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지원
6. 벤처투자회사의 육성
7. 벤처투자 성과의 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투자형 R&D 관련 추진 경과]

- 「'27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투자형 R&D 도입' 반영
(제80회 자문회의 운영위, '26.3.12.)
- 투자형 R&D 유관 금융·법률·전문기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26.3.19.)
- 「'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투자형 R&D' 신규 반영(기획예산처, '26.3.31.)
- 투자형 R&D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도 연구용역('26.3~6월)
※ '출자형R&D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KISTEP)
-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방안」 발표(제7회 과기관계장관회의, '26.4.16.)
※ [전략4] 기업 R&D 성과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출자)방식'으로 지원하는 新유형의 투자형 R&D 지원
- 「'27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투자형 R&D 비목 신설(기획예산처, '26.5.4.)
※ 출자금 비목(460목)에 '연구개발출자금(460-03)' 세목 신설
- '27년 투자형 R&D 시범사업 기획 및 예산요구서 제출(관계부처, '26.4~5.)
-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6.6.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의 제·개정
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첫째,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할 필요
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기존 출연 중심의 R&D 사업에 대
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
수·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형 R&D', '연구개발투자조합' 등 관련 정의 조항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출연 중심의 R&D 사업이 과제 예고·공모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연구개발비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투자형 R&D 사업은 기금의 연구
개발투자조합에의 출자, 기업 발굴 및 기업 지분 획득, 출자금 회수 등의 절차가 요
구되는바, 이러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와 관련된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⁵⁾

5)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951호)

*2026.8.31. 발의, 9.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개정안 체계 비교]

구분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정의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형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
추진 방식	제2장 (제9조~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 예고 및 공모(제9조)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제10조) ◦연구개발기간(제12조) ◦연구개발비 정산(제13조) ◦연구개발성과·기술료(제16조~제18조) 	투자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2장 적용 제외
	제2장의2 (신설)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에의 출자 ◦업무집행조합원 ◦회수금 등의 사용 ◦출자금 사용 목적

둘째, 투자형 R&D 사업의 수익금을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회수하고 이를 다시 R&D 용도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과 용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투자형 R&D 사업은 2027년 계획안에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어 있고,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관련 사항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⁶⁾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투자형 R&D 사업이 편성된 성장동력계정의 재원 관련 규정(안 제7조7))을 살펴보면, ‘기금에서 출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 재원에 포함됨이 불분명하다.

6) 정부 제안(의안번호 제2221052호)

*2026.9.3. 제안, 9.4.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9.28.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

7)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7조(성장동력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은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과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으로 한다.

② 성장동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인공지능 개발, 국가전략기술 육성, 연구개발 등 성장동력 지원 사업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동력 지원 사업

3. 총괄계정으로의 진출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출연, 보조, 융자 및 출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총괄계정의 재원 관련 규정(안 제5조8))에서 ‘성장동력계정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재원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성과의 공유와 회수재투자를 통해 다시 후속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는 투자형 R&D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사업’ 및 ‘회수자금’의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계정별 재원·용도]

구분	총괄계정(제5조)	성장동력계정(제7조)
재원	성장동력계정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등	총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성장동력계정의 운용 수익금
용도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 등	연구개발 사업 등

따라서, 성장동력계정의 재원에 ‘기금에서 출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이 포함됨을 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등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하위 규정⁹⁾인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의 개정 내용에 맞춰 동 고시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하위 규정에 투자형 R&D 사업을 위한 출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형 R&D 사업 및 재원 관련 근거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등에 마련되는 등 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의 제·개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8)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5조(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총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의 제조AI 24·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연계체계 마련 필요

가. 현 황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출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¹⁾은 공정·공장 단위 피지컬 AI 실증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AI 자율제조 전환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1,728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	-	-	172,800	172,800	순증
제조 특화 수작업 실증	-	-	-	40,000	40,000	순증
위험·유해공정 실증 지원	-	-	-	40,000	40,000	순증
피지컬AI 민관 협력기술 실증	-	-	-	64,000	64,000	순증
통합실증	-	-	-	28,800	28,8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공정·공장 단위 여부, 지원분야, 민관협업 여부 등에 따라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국비지원율은 70~100%이다.

[2027년도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공정·공장 단위 피지컬 AI 실증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AI 자율제조 전환 및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	국내 제조기업, 스마트제조분야 벤처·스타트업, 스마트제조 기술기업, 우수 R&D 수행 중소기업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 4332-300

구분	내용
지원내용	<p>① (제조 특화 수작업 실증) 중소 제조현장 수작업 공정의 피지컬 AI 적용 실증 지원</p> <p>② (위험·유해공정 실증 지원) 중소 제조기업의 위험·유해 병목 공정의 단계별 피지컬AI 도입 실증을 통해 표준 모델 도출</p> <p>③ (피지컬AI 민관 협력기술 실증) 스마트제조기술산업* 관련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스마트제조기술 전문기업, 우수 R&D 기업의 기술 실증지원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 · (민관협력 기술실증) 스마트제조특수분류 업종 내 수요 앵커기관 협업 과제 발굴 후 공모로 선정·협업 지원 · (민관협력 실전적용검증) 협업 성공 기업 중 우수 성과 창출 및 추가 지원 필요 기업 선발, 기술실증(PoC) 이후, 상업적 가치 증명을 위한 후속 협업 지원 · (스마트제조기술전문기업·우수R&D기업 기술실증) 피지컬AI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기술실증 기회 제공</p> <p>④ (통합실증) 기술성이 검증된 중소 제조기업의 공장 단위 피지컬AI 도입을 위한 사전 검증부터 로봇팩토리 구축까지 지원 · (1단계: 사전검증·설계) 시뮬레이션 도구 활용 도입·투자 타당성 검증, 로봇 배치·동선 최적화, 데이터 수집·활용 파이프라인 설계 · (2단계: 똑똑한 공장 구축) 「똑똑한 공장」* 및 데이터 수집·활용 파이프라인 구축 후 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AI 모델 고도화 및 확산 유도 *로봇, 센서, 장비, 제어시스템, AI 모델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p>
지원율	70~100%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p>• 172,800백만원</p> <p>가. 제조 특화 수작업 실증 40,000백만원 = 79개 컨소시엄×500백만원(=715백만원×70%) + 500백만원(운영비)</p> <p>나. 위험·유해공정 실증 지원 40,000백만원 = 39개 컨소시엄×1,000백만원(=1,429백만원×70%) + 1,000백만원(운영비)</p> <p>다. 피지컬AI 민관 협력기술 실증 64,000백만원 ◦ 민관협력 기술 실증 20,000백만원 = 98개 컨소시엄×200백만원×100% + 400백만원(운영비) ◦ 민관협력 실전적용검증 12,000백만원 = 29개 컨소시엄×400백만원×100% + 400백만원(운영비) ◦ 스마트제조기술전문기업/우수R&D기업 기술실증 32,000백만원 = 78개 컨소시엄×400백만원×100% + 800백만원(운영비)</p> <p>라. 통합실증 28,800백만원 ◦ 사전검증·설계 30개 컨소시엄×571백만원×70% = 12,000백만원 ◦ 똑똑한 공장 구축 10개 컨소시엄×2,143백만원×70% + 1,800백만원 = 16,800백만원</p>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진흥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의 경우,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AI데이터를 중소 제조기업 등이 활용하여 사업 효과가 제조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AI데이터를 자산화하여 제조AI 24 플랫폼 및 산업통상부가 구축 예정인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축적하는 등 동 사업과 제조AI 24 플랫폼 및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제조업은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AI 기반 자율제조 중심으로 제조혁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현재 중소 제조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현장 데이터는 AI 학습·실증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중소 제조기업은 AI 활용 역량이 부족하고 AI·로봇·설비를 통합한 실증을 자체 추진하기에는 자금·인력·기술 등의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²⁾.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 및 기술기업 등이 정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기술을 학습·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단위 표준모델과 공장단위 대표모델을 구축하며, 이러한 모델을 동종 업종 및 공급망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활용상 애로사항: 자금 부족 35.6%, 전문인력 부족 33.4%, 기술·인프라 33.2%, 효과 불확실 31.2%(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2025)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의 추진 전략]

단계	내용
① 공정 데이터를 활용한 표준모델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 제조기업의 실제 제조데이터를 기반으로 AI·로봇을 적용한 공정단위 피지컬AI 표준모델 개발 수작업·비정형·위험공정 등 다양한 제조현장을 실증하여 범용 활용 가능한 기술 확보 및 전문기업 육성
② 공장 단위 「똑똑한 공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별 검증된 표준모델을 하나의 제조공장에 통합 적용하여 「똑똑한 공장」 대표모델 구축 ⇒ 생산설비·AI·로봇이 연계된 자율제조 운영체계 실증
③ 제조데이터 자산화 및 환류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증 전과정에서 확보된 제조데이터를 지속해서 수집·가공하고, 데이터셋과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이터 환류체계 구축 본 프로젝트 대상기업의 제조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분류하여 AI 모델 재학습과 동종업종 확산에 활용할 데이터셋 구축
④ 업종 및 공급망 생태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모델을 동일 업종과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제조데이터셋의 메타정보를 제조AI24에 축적하여 AI 전문기업과 제조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개방형 제조AI 생태계 조성
추진체계	<p style="text-align: center;">「똑똑한 공장」 구축·실증 프로젝트</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제조공정 실증① 수작업 실증 (비정형공정 데이터화)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제조공정 실증② 위험·유해공정 </div> <div style="font-size: 2em;">+</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기술실증③ 앵커기업 대상 피지컬AI 기술 실증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제조데이터 축적 → 「똑똑한 공장」 대표모델 창출</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ffe0; padding: 5px;">제조데이터 환류 → 산업 생태계 확산</p>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제조AI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특화 AI 플랫폼인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를 2020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³⁾, 동 플랫폼을 통해 제조기업은 등록된 유·무료 제조AI데이터셋(339개) 활용·거래, 제조AI 분석 체험, 제조AI 교육영상 시청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사업(일반회계, 2111-305)

* '25년도 예산 4,336백만원, '26년도 예산 4,422백만원, '27년도 예산안 15,031백만원

[KAMP 제공 콘텐츠 현황]

수행 기능	내용
서비스 포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셋 & 가이드북 • AI 분석지원도구 • AI 개발·체험환경
AI 스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현장 AI 솔루션 실증현황 • 제조 AI 솔루션 적용 우수사례 • 교육 동영상 및 공급기업 정보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거래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 제조데이터 상품 • 제조데이터 판매자 및 가공기업 정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KAMP('20년~) 및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19년~) 등을 통합하여 '제조AI 24 플랫폼'으로 개편하고, 제조AI 24 플랫폼을 통해 제조데이터 자산화 지원, LLM 기반 지원 서비스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제조AI 24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재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KAMP - 제조AI 24 플랫폼 비교]

기능	KAMP	제조AI 24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데이터를 중심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AI활용·촉진을 위한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MP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한 스마트제조혁신 원스톱 지원 플랫폼
제조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데이터셋 확보 및 공유,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데이터셋 공유·활용 시스템 고도화 • 제조데이터 자산화 지원 (가치평가, 표준화 등)
AI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석·AI개발 환경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석·AI개발 환경 고도화 • LLM 기반 기업지원 서비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조AI 24 플랫폼 구축 계획]

일정	추진 내용
'25.3~9월	제조AI 24 서비스 실증(PoC) 추진
'26.3~12월	제조AI 24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진행
'27~28년	제조AI 24 통합플랫폼 구축 추진
'28년 하반기	플랫폼 오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의 취지에 맞게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된 표준모델이 제조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AI데이터를 제조AI 24 플랫폼(또는 KAMP)에 축적하여 중소 제조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AI 관련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제조AI데이터를 KAMP에 등록하여 중소 제조기업 등이 활용·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20~2022년 동안 AI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발굴하여 50개의 무료 제조AI데이터셋을 등록하였고, 2023~2025년 동안 데이터 거래지원 사업을 통해 132개의 유료 제조AI데이터셋을 등록하였으며, 2023년에는 AI문제해결 컨설팅·실증 사업을 통해 100개의 실증 제조AI데이터셋을 등록하였다.

[제조AI 관련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제조AI데이터의 KAMP 등록 현황]

(2026.8.31.기준, 단위: 건수)

사업명	제조AI데이터의 KAMP 등록 건수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등록 대상	등록 완료	등록 대상	등록 완료	등록 대상	등록 완료	등록 대상	등록 완료	등록 대상	등록 완료	등록 대상	등록 완료	등록 대상	등록 완료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AI 데이터셋 구축	12	12	12	12	26	26	-	-	-	-	-	-	50	50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데이터 거래지원	-	-	-	-	-	-	26	40	26	46	26	46	78	132
디지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AI문제해결 컨설팅·실증	-	-	-	-	-	-	100	100	-	-	-	-	100	100

주: '등록완료'는 당해연도 과제 지원 후 2026.8.31.까지 등록완료된 경우로, '등록완료시기'와는 무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때 데이터 거래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기업은 가공 지원된 제조데이터를 KAMP에 1년 이상 필수적으로 등록하도록 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제조AI데이터와 KAMP 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데이터 거래지원 사업에 따른 제조데이터 활용 방식]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여야 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사업 및 제조데이터 컨설팅 공고」, 2025.4.29.

이를 참고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 추진 시에도 사업 공고, 실증 지원 협약 등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제조AI데이터를 제조AI 24 플랫폼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도록 명시하는 등 등 사업과 제조AI 24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에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다부처·다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제조데이터의 격리 학습·검증·반출 등을 수행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인바, 장기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 중인 제조AI 24와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가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따른 제조AI데이터도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연계될 필요가 있다.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사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데이터 전략 맵 기반 데이터셋 확보를 위한 산업 데이터 주권 확보 및 국가 제조 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부처·다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제조데이터의 격리 학습·검증·반출 심의를 수행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 인프라 구축 ◦데이터를 저장·활용하기 위해 대용량 스토리지, 고성능 GPU 구축 및 품질관리, 업종·기능별 데이터 분류 플랫폼 구축
라이브러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연산 인프라) 클린룸 격리 환경 내 GPU Farm, 고성능 스토리지, 초고속 네트워크 및 전력·냉각 기반 구축 ◦(플랫폼·에이전트) 데이터 반입·표준화·품질 검증 플랫폼, 데이터카드·카탈로그 관리 체계 및 사용자 프롬프트 기반 데이터 라이브러리 에이전트 구축 ◦(보안·운영) 망 분리·침입탐지 보안 체계, 데이터 결합·반출 심의 관리 및 24시간 365일 시설 통합 운영체계 구축
총 사업기간	2027~2031년
총 사업비	2,846억원(국비)
2027년도 예산안	59,000백만원
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산업통상부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제조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지컬 AI 관련 제조데이터를 중소 제조기업 등이 활용하여 사업 효과가 제조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AI데이터를 자산화하여 제조AI 24 플랫폼 및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축적하는 등 등 사업과 제조 AI 24 플랫폼 및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의 적정성 검토 실시 및 결과 국회 제출 필요 등

가. 현 황

제조AI fellow 양성사업¹⁾(출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²⁾ 등에 근거하여 4대 과기원의 현장 AX 지원·실증 교육을 통해 청년 AI 인재를 육성하고 일부를 선발하여 중소 제조기업 등과 매칭하여 제조현장에 청년 인력을 공급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8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제조AI fellow 양성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제조AI fellow 양성사업	-	-	-	28,350	28,35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미래대응기금(교육·인재계정) 4532-300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3. 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능력 개발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3의2.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인력양성기관 등이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시행하는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크게 교육, 인턴 등 두 단계로 구성된다.

교육 단계는 전공 무관 학사·석사 졸업생(이공계 우대) 등을 대상으로 4대 과기원(KAIST, GIST, UNIST, DGIST)에서 12주간 제조 AX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교육 내용은 AI 기초 교육, 제조·모빌리티 AX 교육, 협동로봇·AMR·기업과제 실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훈련수당은 최대 3개월간 교육생당 월 100만원을 교육생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분기 250명, 4분기 250명 등 총 500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인턴 단계는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 중 약 60%를 선발한 후 중소기업 및 제조AI 솔루션 공급기업 등과 매칭하고, 이들을 직무멘토 지정 및 청년 프로젝트팀 단위로 배치하여 기업 AX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턴수당은 최대 12개월간 인턴당 월 200만원(첫 6개월은 100%, 추가 6개월은 50%)을 매칭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분기에 교육을 받은 250명 중 약 60%인 150명을 4분기에 기업 매칭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참고로, 2027년 3분기에 교육을 받아 4분기에 기업 매칭된 150명의 나머지 9개월분과 4분기에 교육을 받아 2028년 1분기에 기업 매칭 예정인 150명의 12개월분의 인턴수당은 202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7년도 제조AI fellow 양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p>4대 과기원*과 협력하여 현장 AX 지원·실증 교육을 통해 청년 AI 인재를 육성하고, 중소 제조기업 등과 매칭하여 제조현장에 청년 인력 공급</p> <p>*KAIST, GIST, UNIST, DGIST</p> <p>(기업) 제조AI 전환(AX) 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설계·실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촉진</p> <p>(청년) 최상위 AI 교육과 현장 프로젝트 경험을 결합한 취업연계 경로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경쟁력 제고</p>								
지원대상	<p>(기업) 중소제조기업 및 제조AI 솔루션 공급기업 등</p> <p>(청년) 전공 무관 학사·석사 졸업생(이공계 우대) 등</p>								
지원내용	<p>4대 과기원의 현장 AX 지원·실증 교육을 받은 청년을 중소 제조기업 등과 매칭하여 인턴수당 지원</p> <p>(교육) 교육훈련수당 월 100만원(최대 3개월)</p> <p>(인턴) 인턴수당 월 200만원(첫 6개월 100% + 추가 6개월 50%, 최대 12개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① 최상위 제조AX 교육</td><td>■ AI 기초·심화(1~7주) → 산업 AX 적용·프로젝트(8~12주) / 우수자는 협동로봇·비전·AMR 장비집중 4주</td></tr> <tr> <td>② 기업매칭·현장 인턴십</td><td>■ 직무 적합성 기반 복수기업 매칭, 직무멘토 지정 및 청년 프로젝트팀 단위 배치로 기업 AX 과제 수행</td></tr> <tr> <td>③ 정착·확산 지원</td><td>■ 정규직 전환 연계, 미채용자 후속매칭(기업인력애로센터 연계),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 지원</td></tr> </tbody> </table>	단계	주요 내용	① 최상위 제조AX 교육	■ AI 기초·심화(1~7주) → 산업 AX 적용·프로젝트(8~12주) / 우수자는 협동로봇·비전·AMR 장비집중 4주	② 기업매칭·현장 인턴십	■ 직무 적합성 기반 복수기업 매칭, 직무멘토 지정 및 청년 프로젝트팀 단위 배치로 기업 AX 과제 수행	③ 정착·확산 지원	■ 정규직 전환 연계, 미채용자 후속매칭(기업인력애로센터 연계),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 지원
단계	주요 내용								
① 최상위 제조AX 교육	■ AI 기초·심화(1~7주) → 산업 AX 적용·프로젝트(8~12주) / 우수자는 협동로봇·비전·AMR 장비집중 4주								
② 기업매칭·현장 인턴십	■ 직무 적합성 기반 복수기업 매칭, 직무멘토 지정 및 청년 프로젝트팀 단위 배치로 기업 AX 과제 수행								
③ 정착·확산 지원	■ 정규직 전환 연계, 미채용자 후속매칭(기업인력애로센터 연계),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연계 창업 지원								
지원인원	<p>(교육) 3분기 250명, 4분기 250명</p> <p>(인턴) 4분기 150명(3분기 교육생 중 60% 목표)</p>								
지원율	100%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p>• 28,350백만원</p> <p>가. (교육훈련수당) 1,500백만원</p> <p>· 500여명 × 3개월 × 약 100만원 = 1,500백만원</p> <p>나. (인턴수당 지원) 900백만원</p> <p>· 150여명 × 3개월 × 약 200만원 = 900백만원</p> <p>다. (교육운영비) 4대 과기원 등 4,350백만원</p> <p>라. (실습장 구축비) 4대 과기원 등 21,200백만원</p> <p>마. (인턴십 매칭 및 관리 등) 400백만원</p>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은, 피지컬AI 기반 글로벌 제조업 경쟁이 가속화되어 국내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3)에 따라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⁴⁾.

동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며, 총사업비는 1,362억원으로, 그중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규모는 283억 5,000만원이다.

[2027년도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요]

- ☐ (사업목적) 4대 과기원 졸업 청년 교육 및 현장의 AX 인력 매칭 지원
- ☐ (기대효과) 청년 AI 인재 육성
- ☐ (사업기간) 2027~2031, (총사업비) 1,362억원, ('27년 정부안) 284억원
-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자료: 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타문서(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2026.9.3.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 4) 2026.8.26.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

2026.9.7. 기획예산처-중소벤처기업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 통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⁵⁾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적정성 검토 시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10월 말 현재,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 통보(9월)를 받은 후로 아직 적정성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적정성 검토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인원 및 기업 수, 지원단가 등 사업내용과 사업규모·총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예산안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일정 및 교육과정 개발, 실습교육장 구축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7년 교육훈련 인원을 연간 목표의 절반인 500명으로 계획하고, 2분기에 사업 기획 및 4대 과기원 내 실습교육장 구축 등을 추진한 후 3분기부터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인데, 적정성 검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어렵고 이는 실습교육장 구축, 교육훈련과정 운영, 기업 매칭 및 인턴 진행 등의 연쇄적 지연으로 이어져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일정 계획(안)]

일정	'27. 2분기	'27. 3분기	'27. 4분기
추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기획 ◦4대 과기원 내 실습교육장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 1차 (3개월, 2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 2차 (3개월, 250명) ◦인턴 1차 (3개월, 150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제조AI fellow 양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금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존속기간 연장 전 운용 성과 분석 필요

가. 현 황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¹⁾는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모태펀드)의 결성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 대비 4,800억원, 수정 계획 대비 4,200억원 증액된 1조 3,0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00,000	820,000	880,000	1,300,000	420,000	47.7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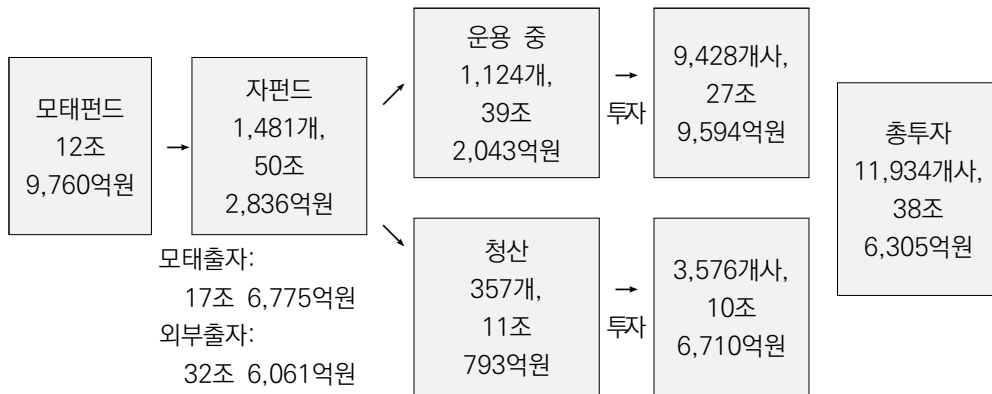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는 200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12조 9,760억원의 규모로 결성되어 총 1,481개의 50조 2,83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여 11,935개 창업·벤처기업에 38조 6,305억원을 투자하였고, 그 중 357개의 11조 793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청산하여 약 3조 4,000억원을 모태펀드로 배분(회수)하였는데, 동 회수금은 모태 납입원금 대비 1.4배에 해당하는 수익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5264-301

[중소기업모태펀드 및 자펀드 운용현황(2026. 7월 기준)]



주: 총투자 실적은 업체 수 중복을 제거한 수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2027년도 계획안 기준 신규 출자 규모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원, 지역성장펀드에 2,850억원, 창업초기펀드에 2,40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구분	산출내역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1,300,000백만원	가.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525,000백만원 나. LP성장펀드 60,000백만원 다. 글로벌펀드 50,000백만원 라. 지역성장펀드 285,000백만원 마. 창업초기펀드 240,000백만원 바. 청년창업펀드 40,000백만원 사. 재도전펀드 30,000백만원 아. 여성기업펀드 10,000백만원 자. 임팩트펀드 10,000백만원 차. 공급망안정화펀드 20,000백만원 카. M&A펀드 20,000백만원 타. 세컨더리펀드 10,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첫째, 최근 신규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여력 및 신규 자펀드 결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계획안에 적정 규모의 출자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액은 2023년 2,835억원, 2024년 4,500억원, 2025년 8,000억원, 2026년 8,800억원에 이어 2027년에는 1조 3,000억원이 편성 되는 등 2023년 이후로 연평균 46.3%씩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획안
				당초	수정 ¹⁾	
계획액	283,500	450,000	800,000	820,000	880,000	1,300,000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최근 신규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할 때, 2027년도 계획안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3년 기준 신규 결성된 34개의 자펀드 운용 규모는 총 1조 4,106억원이나, 2026년 7월 말까지 668개의 회사에 1조 972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자펀드 운용 규모 대비 투자 규모는 77.8%이고, 2024년 기준 신규 결성된 66개의 자펀드 운용 규모는 총 1조 9,406억원이나, 2026년 7월 말까지 874개의 회사에 1조 554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자펀드 운용 규모 대비 투자 규모는 54.4%이다.

또한, 2025년 기준 신규 결성된 69개의 자펀드 운용 규모는 총 2조 7,146억원이나, 2026년 7월 말까지 400개의 회사에 7,036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자펀드 운용 규모 대비 투자 규모는 25.9%로, 2023년~2025년 신규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2023~2026년 신규 결성된 자펀드의 출자·투자 현황]

(단위: 억원, 개, 개사, 억원)

연도	자펀드 결성				해당 연도에 편성된 펀드 기준 투자 현황				
	모태 약정분		결성 총액	펀드 수	2023	2024	2025	2026	계
					투자기업 수				
	예산 신규 편성분	회수분			투자규모				
2023	2,570	1,800	14,106	34	24	264	243	137	668
					331	4,057	4,200	2,384	10,972
2024	3,640	2,970	19,406	66	-	156	449	269	874
					-	1,393	5,206	3,955	10,554
2025	5,100	3,323	27,146	69	-	-	116	284	400
					-	-	1,198	5,838	7,036
2026	400	470	2,566	6	-	-	-	6	6
					-	-	-	118	118
계	11,710	8,563	63,224	175	24	420	808	696	1,948
					331	5,450	10,604	12,295	28,680

주: 2026.7.31.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2026년 10월 기준, LP성장펀드, 글로벌펀드, 지역성장펀드, 청년창업펀드, 재도전펀드 등의 경우 2026년 신규 자펀드는 아직 선정·출자가 진행 중으로 결성이 완료되지 않은바, 본격 투자는 연말 또는 2027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신규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여력 및 신규 자펀드 결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계획안에 적정 규모의 출자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에 따른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약 20년간의 모태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는 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존속기간이 30년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관련 법 개정 내용]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25.12.30. 개정, ‘26.7.1. 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 를 말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한 조합원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탈퇴할 수 있다. (‘26.6.30. 신설, ‘26.7.1. 시행)

그리고 「모태펀드 규약」에 따르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펀드의 존속기간이 3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태펀드 규약」을 변경하여야 하고, 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²⁾

이때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하는 한국벤처투자 및 유한책임조합원에 해당하는 16개의 기관장 등 총 17명이다.³⁾

2) 「모태펀드 규약」

제6조(규약의 변경) 본 규약은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발의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총회의 전원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조합의 존속기간) ① 조합의 존속기간은 제15조에 의한 조합의 결성총회 개최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조합원총회) ②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규약의 변경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제66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모태펀드 조합원 현황]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식재산처,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우주항공청의 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모태펀드 존속 기간은 기존 ‘2005~2035년’에서 ‘2005~2045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1월까지 모태펀드 존속기간의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연장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후 조합원 총회 개최, 규약 변경 등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한국벤처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상호출자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 등에 대하여 출자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하는 자

「모태펀드 규약」

제4조(용어의 정의)

15.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16.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운영과 조합재산의 관리, 운용, 분배 등에 관한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을 말한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계획(안)]

일정	추진 내용
~'26.11월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계획 수립
'26.11월	국회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26.12월	모태펀드 조합원 총회 개최 통지
'26.12월~	모태펀드 조합원 총회 개최, 규약 변경(존속기간 연장 승인 획득 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아직 약 10년이 남아있음에도 지금부터 존속기간 연장 논의를 본격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벤처펀드의 운용 및 청산기간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모태펀드와 자펀드의 존속기간 역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는 벤처펀드 결성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2026년 기준 모태펀드가 이미 약 20년간 운용되었음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모태펀드의 운용 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존속기간 연장계획이 신중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시 청산 펀드별·주목적 투자 분야별 수익률 현황, 정책펀드 운용을 통한 민간 자본 유입 확대 및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효과, 민간벤처투자에서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 현황 등 지난 20여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태펀드 존속기간의 연장 필요성, 존속 시 분야별로 추가 투입 필요한 정부출자금 규모 및 추가 투입 필요 기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에 따른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약 20년간의 모태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²⁾에 따라 민간금융의 운영자금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상공인지원(용자)	4,184,200	3,362,000	3,682,000	2,270,000	△1,412,000	△38.4
이차보전 지원	-	-	-	20,000	2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는 기존에 용자금을 지원하는 내역사업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용자금 지원을 폐지하고 전액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업력·업종 무관 민간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연 2~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에는 2조원의 용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4151-301의 내역사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용자 등 자금 지원

[2027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업력·업종 무관 소상공인
지원절차	<p>기업이 소진공에 이차보전 신청 → 소진공이 이차보전 확인서 발급 → 은행이 이차보전율을 적용하여 대출 실행</p> <pre> graph LR A[← ①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 B[소상공인] B --> C[③ 대출상담 및 신청 →] C --> D[← ④ 대출 실행] D --> E[소진공] E --> F[← ⑤ 대출 실행 통지 후 이차보전 요청] F --> G[협약은행] G --> H[⑥ 이차보전 정산 →] H --> B </pre>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200억원 = 용자규모 20,000억원 × 이차보전율 2.0% × 평잔 50%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한도·기간	업체당 연간 최대 1억원, 최대 3년
이차보전율	<p>연 2%</p> <p>* 성장 잠재력 등을 인정받은 소상공인(강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은 3%로 우대</p> <p>**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 은행 대출금리(은행 자율) - 이차보전율</p>
담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보증서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차보전율 등 사업 구조 기획을 면밀히 수행하고, 202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유형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소상공인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에는 용자 세부 유형을 기존 11개(2026년 기준)에서 6개로 통·폐합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존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유형을 용자 방식에서 전액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 개편 현황]

(단위: 억원, %)

'26년도 정책자금				'27년도 정책자금				증감
방식	내역사업	자금명	예산	방식	내역사업	자금명	예산(안)	
융자	일반경영 안정자금	일반자금	12,200	이차 보전	이차 보전	일반자금	200	△12,000
	성장 기반 자금	-	7,920	융자	성장 촉진 자금	(통합)	7,000	△920
		소공인특화	2,000			성장촉진	7,000	△920
		혁신성장촉진자금	4,800			(통합)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	360			(통합)	-	-
		상생성장지원자금	760			(통합)	-	-
	특별 경영 안정 자금	-	16,700		경영 안정 자금	-	13,000	△3,700
		청년고용연계자금	3,000			(통합)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500			(통합)	-	-
		신용취약소상공인	7,000			신용취약자금	8,000	1,000
		재도전특별자금	1,000			재도전특별자금	2,000	1,000
		대환대출	3,000			대환대출	3,000	-
		긴급경영안정자금	2,200		위기 대응 자금	-	2,500	300
		재해피해	1,000			재해자금	1,000	-
		일시적경영애로	1,200			일시적경영애로	1,500	300
계	융자금 계		36,820	계	이차보전 소계		200	200
					융자금 소계		22,500	△14,320
	'26년도 합계		36,820		'27년도 합계		22,700	△14,1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때, 일반자금은 업력·업종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으로, 2026년 융자금 지원 기준으로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0.6%p'의 금리로 최대 5년간 7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2027년 이차보전 기준으로는 최대 3년간 1억원의 융자금에 대해 2~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자금 개편 내용]

구분	2026년	2027년(안)
지원대상	업력·업종 무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지원방식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	5년	3년
지원한도	7천만원	1억원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0.6%p *26년 3/4분기 기준 3.85%	-
이차보전율	-	2~3%
예산	1,220,000백만원	20,000백만원
융자금모	1,220,000백만원	2,000,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자금을 전액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사유로, 융자금 지원은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고 민간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2027년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모는 2026년 일반자금 예산 규모인 1.22조원 대비 다소 증액된 2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기존의 일반자금(융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형태로, 융자 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은행이 대출 심사·승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신청 기업 입장에서는 절차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동일 규모의 융자 지원 기준으로는 이차보전 방식일 때 투입되는 정부 재정 규모가 훨씬 감축되므로 재정효율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융자 결정 형태별 절차]

직접대출	대리대출
(소진공) 지원대상 여부 판단(확인서 발급) → (소진공) 대출 심사 및 대출한도 등 산정 → (소진공)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소진공) 지원대상 여부 판단(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담보 등으로 신용보강 → (은행) 대출 심사 및 대출 실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2025.12.29.

실제로, 2027년 일반자금 사업 계획안이 2026년 사업 계획액 1조 2,200억원 대비 98.4% 감소한 200억원인 반면 2027년 지원 가능한 용자규모가 2026년 용자 규모 1조 2,200억원 대비 63.9% 증가한 2조원임을 고려할 때, 민간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고신용등급 소상공인 등에게 용자금이 아닌 이차보전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한정된 예산 하에서 용자규모 기준으로는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다만, 이차보전 지원 방식으로의 개편으로 인해 실 부담금리(=최초 대출금리-이차보전율)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 부담 증가, 민간금융권의 대출 거부로 인한 이차보전 신청 불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용등급별 일반자금 용자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2025년 신청 기준 58.3%, 지원 기준 76.4%, 2026년 8월 말 신청 기준 58.5%, 지원 기준 77.8%)이 고신용 등급(신용등급 1~3등급)에 속해있기는 하나, 나머지 중·저신용 등급에도 신청·지원이 분포되어 있다.

[신용등급별 일반자금 용자금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신용 등급		2025년				2026년.8월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고	1	28,700	34.4	8,440	47.6	16,657	34.7	4,662	48.5
	2	12,492	15.0	3,053	17.2	7,099	14.8	1,666	17.3
	3	7,426	8.9	2,062	11.6	4,477	9.3	1,152	12.0
중	4	8,777	10.5	2,693	15.2	5,351	11.1	1,440	15.0
	5	11,238	13.5	899	5.1	6,748	14.1	469	4.9
	6	9,366	11.2	395	2.2	5,080	10.6	167	1.7
저	7	4,544	5.4	171	1.0	2,220	4.6	58	0.6
	8	819	1.0	3	0.0	325	0.7	1	0.0
	9	140	0.2	1	0.0	44	0.1	1	0.0
	10	-	-	-	-	-	-	-	-
미판별 ¹⁾		1	0.0	-	-	-	-	-	-
계		83,503	100.0	17,718	100.0	48,001	100.0	9,617	100.0

주: 1) 등급 미판별: 소진공에서 심사(약정)를 진행하지 않는 대리대출, 신청 이후 대표자 변경(채무인수, 귀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신용등급 미판별

1. 심사(약정) 당시 신용점수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8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가 일반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리는 중신용 등급(4~6등급) 기준 최저 4.69% ~ 최대 11.39%, 저신용 등급(7~10등급) 기준 최저 5.39% ~ 최대 13.15%로, 2027년부터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 민간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실 부담금리(=최초 대출금리-이차보전율 2~3%)는 2026년 소진공 일반자금 융자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금리(2026년 기준 4.45%(기준금리 3.85% + 0.6%p))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부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증가 및 경영 안정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2026년 8월 기준 개인사업자의 신규 신용대출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평균금리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	
신한은행	4.40	4.86	6.33	9.32	10.30	5.11
우리은행	5.40	6.35	8.25	11.39	13.15	6.13
하나은행	4.38	4.69	5.00	8.25	5.39	4.53
KB국민은행	4.54	6.40	9.88	9.32	9.11	5.10

주: 보증·담보 등 없는 일반 신용대출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메뉴: '금리/수수료' > '대출금리비교' > '중소기업대출금리')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취약차주에게는 이차보전율을 우대(최대 3%)하여 기존 일반자금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사업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차보전율 등 면밀한 사업 구조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민간금융권 자체 여신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신용도가 낮거나 업력이 짧아 대출이 거부되는 경우 이차보전 신청이 불가하여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덧붙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의 경우, 2023년 이차보전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면서 자금 유형별로 용자와 이차보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사업을 도입하여 2026년 현재까지도 병행 형태로 정책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글로벌화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에만 이차보전 단독 사업으로 운영하다가 2024년부터는 다시 융자금·이차보전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규 도입 당시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		
	융자	융자(A)	이차보전(B)	합계(C=A+B)
■ 신성장기반자금	1,710,000	1,185,000	8,100	1,193,100
- 혁신성장지원자금	990,000	645,000	4,200	649,200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600,000	435,000	2,700	437,700
- Net-Zero 유망기업자금	120,000	45,000	1,200	46,200
- 스케일업금융	-	60,000	-	60,000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00,000	100,000	3,855	103,855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150,000	100,000	-	100,000
- 수출기업글로벌화	250,000	-	3,855	3,855
합계	2,110,000	1,285,000	11,955 ¹⁾	1,296,955

주: 1) 이차보전 소요 11,955백만원 = 융자지원평균 3,985억원(=7,970억원/2) × 이차보전율(3%)

1. 이차보전 지원 방식: 3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율 최대 3%p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연도별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집행액	집행률
2023	11,955	10,602	88.7
2024	43,324	34,876	80.5
2025	57,896	51,326	88.7
2026.8월말	55,884	14,067	25.2
2027(안)	55,302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202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이차보전 수요 현황 등을 토대로 확대해나가는 등 사업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차보전을 등 사업 구조 기획을 면밀히 수행하고, 202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상생배달앱 지원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의7²⁾ 등에 근거하여 공공배달앱³⁾ 중 시장성·공공성이 우수한 3개(내외)를 상생배달앱으로 선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자 할인쿠폰 지원 및 홍보·행사를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1,24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상공인 성장지원	1,926,936	621,243	661,243	453,905	△207,338	△31.4
상생배달앱 지원	-	-	-	124,000	124,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3개사 내외로 지정 예정인 상생배달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업체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 시 5천원을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의 내역사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공유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3) 중개수수료율이 2% 이하이면서 지자체와의 협약으로 지역화폐 연계 결제가 가능한 배달앱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할인해주는 것으로, 상생배달앱에서 이용자에게 쿠폰을 선발급 지원한 후 소진공에서 지원금액만큼 후정산하는 구조이다.

2027년도 계획안은 5천원 할인쿠폰을 월평균 200만장씩 발급하여 12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환경 조성
지원대상	상생배달앱 이용자
지원업체	상생배달앱 입점 소상공인
지원방식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결제 시, 5천원 할인
상생배달앱 선정 기준	공공성 및 시장성을 기준으로 상생배달앱 3개사 내외를 선정 *공공성: 입점업체 저부담 구조, 판매대금 정산 및 관리, 지역 상생협력, 입점업체 상생협력 등 시장성: 시장성 강화 계획, 재정건전성, 차별화 역량, 소비자 이용 친화성, 배달 편의성 등
지원절차	상생배달앱에서 쿠폰 선발급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후정산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중기부 (발행주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예산 교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소진공 (수행주체)</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정산 신청) ⇨ (사후 정산)</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상생배달앱 (입점 소상공인)</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할인쿠폰 지급)</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소비자 (할인쿠폰 사용)</div> </div>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4,000백만원 가. (소비자 할인쿠폰) 120,000백만원 $= 200\text{만장}^* \times 5,000\text{원} \times 12\text{개월}$ * '25년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사업(650억원, '25.6.~12.) 추진 결과, 상위 4개 공공배달앱 내 월평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결제 건수 나. (상생배달앱 홍보) 4,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지원(1,400백만원): 지하철(5억원, 1억원 * 5개월), TV(5억원, 제작 1억원, 송출 4억원), 온라인·라디오 광고(4억원) 등 ◦ 판촉행사 지원(2,500백만원): 상생 배달앱 3개사 × 8.3억원 ◦ 성과분석(100백만원): 상생배달앱 지원사업 성과분석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공공배달앱 운영 현황]

구분	주문 지역	운영 형태	지역화폐 연계 지자체	온누리상품권 연계 여부
1.땡겨요	전국	민간 운영 (신한은행)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세종, 경남, 강원(일부), 전남(일부)	O
2.먹깨비		민간 운영 ((주)먹깨비)	경기, 인천, 충북 경북, 경남, 강원(일부), 전북(일부), 전남, 제주	O
3.위메프오		민간 운영 (슈퍼커넥트)	경기(성남), 광주, 전북(일부)	O
4.대구로	대구	민간 운영 (인성데이터)	대구광역시	O
5.배달특급	경기	지자체 위탁·지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O
6.배달e음	인천	지자체 위탁·지원 (코나아이 지역화폐 부가서비스)	인천광역시	X
7.울산페달	울산	지자체 위탁·지원 (코나아이 지역화폐 부가서비스)	울산광역시	X
8.휘파람	공주	민간 운영 (바다핀테크)	충남 공주시	X
9.배달모아	제천	지자체 위탁·지원 (외식업중앙회 제천지부)	충북 제천시	X
10.배달의 명수	군산	지자체 위탁·지원 (군산상권 활성화재단)	전북 군산시	O
11.전주맛 배달	전주	지자체 위탁·지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 전주시	O
12.배달양산	양산	지자체 위탁·지원 (코나아이 지역화폐 부가서비스)	경남 양산시	X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 추진 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한 기획 및 상생배달앱과의 논의를 사전에 면밀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상생배달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동 사업의 종료 후에도 배달앱의 장기적인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67번 중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상생배달앱 활성화를 통한 입점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월 발표한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5년 배달앱 입점 업체의 2025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의 36.0%, 월평균 주문건수의 34.6%가 배달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의 배달앱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전체 경영 부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배달앱 입점 업체의 2025년 상반기 배달앱 이용 현황]

(단위: 만원, %, 건, %)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 주문건수		
전체	배달앱을 통한 월평균 매출액		전체	배달앱을 통한 월평균 주문건수	
	현황	전체 대비 비중		현황	전체 대비 비중
1879.5	676.8	36.0	886.4	306.3	34.6

주: 1. 조사 개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응답자 수 808명, 조사 기간 2025.9.26.~11.1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 2026.1.

이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공공배달앱 입점 업체의 배달 비용 부담은 2만원 주문금액 기준 민간배달앱 대비 약 1,936원이 감소하며, 2025년 상반기 배달앱을 통한 월평균 주문건수 306.3건 기준으로는 월평균 59.3만원, 연평균 711.6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배달앱 이용 시, 입점 업체 비용 부담 경감 수준 (2만원 주문 시)]

(단위: 원)

구분	입점 업체 부담 비용 계		비용 세부항목			
			중개수수료	배달비 ¹⁾	결제수수료	부가세
민간배달앱	6,116	(주문금액 대비 약 31%)	1,560	3,400	600	556
공공배달앱	4,180	(주문금액 대비 약 21%)	400	2,800	600	380
① - ②	1,936	(민간배달앱의 68%)	1,160	600	-	1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구체적인 수치는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26.1, 중기부) 등에 근거)

이에 배달 비용 부담이 낮은 공공배달앱 중 공공성 및 시장성이 높은 앱을 상생배달앱으로 지정하여 할인쿠폰을 발급 지원함으로써 소비자가 상생배달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동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사업 추진 결과,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26.1., 중기부) 등을 토대로 할 때, 사업 추진에 앞서 면밀한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6~12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추경 신규)을 추진⁴⁾하여 소비자에게 총 648억원의 할인쿠폰(1만원권 335.4만매, 5천원권 626.5만매)을 지원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개요]

구분	세부 내용
목적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주문금액의 약 30%)로 인한 외식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수료 0~2%의 공공배달앱 이용을 촉진하여 침체된 외식경기를 회복
대상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2% 이하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12개사)을 통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에 주문하는 소비자
사용처	공공배달앱을 통해 외식업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한정, 유흥업소 제외)에서 음식을 주문(방문, 포장)하는 경우로 한정
예산	650억원 (=650만명 × 1만원 × 국비 100%)
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7.) 참고

동 사업 추진 결과 6~12월 사업기간 중 입점 업체는 주문수수료 424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추정되어⁵⁾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 초기 집행을 부진 등을 사유로 소비쿠폰 지급 조건을 2차례나 변경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였다.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지급 조건 완화 내용과 사유]

구 분	일자	지급 조건	사유
당초	25.6.10.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쿠폰 발급 (1인당 월 1회 제한)	-
1차 완화	25.7.25.	2만원 이상 2회 주문 시 1만원 쿠폰 발급(무제한)	공공배달앱 이용시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5~15%), 온누리상품권(10%), 소비쿠폰(전당 약 2,500원) 등의 혜택에도 무료배달을 적용하는 민간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았고, 1개월간 운영결과 쿠폰 지급 조건 또한 까다로워 예산 집행 부진이 예상됨 (당시 19.5억원, 3% 집행)
2차 완화	25.10.1.	2만원 이상 1회 주문 시 5천원 쿠폰 발급(무제한)	추석 계기로 지급 요건을 추가 완화하여 소비자 대상 공공배달앱 인지도 제고 및 소상공인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기준, 즉, 1인당 연·월 건수 제한, 최소 결제금액, 즉시할인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생배달앱 선정 후 논의할 계획인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경험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한 기획 및 상생배달앱과의 논의를 사전에 면밀히 수행함으로써 사업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입점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 경감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수수료 절감액(424억원) = 결제액(7,062억원) × 중개수수료율의 차이(민간 △5.8~△7.8%)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2025년도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2026.2.)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1월 심사위원회(소상공인 단체, 플랫폼 전문가, 변호사 및 소비자·라이더업계 등으로 구성)를 거쳐 상생배달앱을 3개사 내외로 선정하고, 동년 12월 협약 후 2027년부터 할인쿠폰 발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상생배달앱 지정 관련 일정 계획]

일정	추진 내용
2026.9.~10.	상생배달앱 선정 공고
2026.11.	공공성·시장성을 기준으로 상생배달앱 선정 *소상공인 단체, 플랫폼 전문가, 변호사 및 소비자·라이더업계 등으로 심사위 구성
2026.12.	상생배달앱·지자체 협약
2027.1.~	할인쿠폰 발급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26.1., 중기부)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료(중개수수료+배달비)’에 대한 ‘불만족’ 또는 ‘개선 필요’ 응답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고려할 때, 사업 추진 전 배달앱 이용료 등의 공공성과 배달 편의성 등 시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상생배달앱을 선정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생배달앱이 이용료 수준 및 상생협력 계획 등과 관련한 협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상생배달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2025년 배달앱 입점 업체의 2025년 상반기 배달앱 이용 만족도]

(단위: %)

조사항목	응답결과				
이용료 (중개수수료+배달비)	불만족		보통		만족
	33.4		38.2		28.3
배달앱 관련 정부 지원 필요 부분	이용료 등 거래조건 개선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 제·개정	공공배달앱 활성화	배달앱사 및 입점 업체간 상생협력	이용료 현황 관련 정기 조사
		49.8	34.2	27.8	19.8

주: 1. 조사 개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응답자 수 808명, 조사 기간 2025.9.26.~11.14.

2. ‘정부 지원 필요 부분’ 조사항목은 복수응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 2026.1.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상생배달앱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현재 독과점 구조인 배달앱 시장을 경쟁체제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인바, 이와 관련된 성과관리 및 장기적인 배달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모색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상생배달앱의 시장점유율, 입점 소상공인의 배달 비용 부담 등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사업 추진 전후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사업 효과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이 종료된 후에 다시 상생배달앱의 점유율이 축소되거나 상생배달앱의 배달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달앱의 장기적인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대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배달앱 지원 사업 추진 시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한 기획 및 상생배달앱과의 논의를 사전에 면밀히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상생배달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며,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동 사업의 종료 후에도 배달앱의 장기적인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¹⁾(보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²⁾ 등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건강돌봄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5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상공인 성장지원	1,926,936	621,243	661,243	453,905	△207,338	△31.4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	-	-	205,000	205,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중 매출액이 0원 초과인 실질 활동 사업자(연도 내 창업자 포함)가 당해연도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경우 건강돌봄비를 1인당 10만원 지급하는 것이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의 내역사업

2)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7년도 계획안 중 건강돌봄비는 200만명에 대해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을 통한 건강 불평등 완화 및 경영 위기의 선제적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원대상	활동 소상공인* 중 당해연도 국가건강검진 참여자(연도 내 창업자 포함)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매출액이 0원 초과인 실질 활동 사업자
지원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이 국가건강검진 시 건강돌봄비 1인당 10만원 지급 *소상공인 일평균 영업이익 85,034원 기준(연 2,500만원, 평균영업일수 294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2.)
지원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마이데이터의 “진료내용조회정보”를 확인하여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지급
지원절차	<p>소상공인 공고·지원대상 모집 → 선정 → 지원</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중기부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예산 교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소상공 (수행주체)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공고·선정·지원)</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소상공인 (국가건강검진 수검) </div> </div>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00백만원 가. (건강돌봄비) 200,000백만원 = 200만명 × 10만원 나. (간접비) 5,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구축·감리·운영 1,300백만원 ◦ 클라우드 임차 900백만원 ◦ 홍보비 1,000백만원 ◦ 민원종합센터 운영 600백만원 ◦ 인건비 700백만원 ◦ 기타운영비 500백만원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첫째, 휴업에 따른 생업 부담으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1인 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 목표인원 및 계획안 산출근거를 조정하고, 검진을 제고 효과 및 부작용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영업 중단 여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61번 중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활성화하여 건강 불평등 완화 및 경영 위기의 선제적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소상공인은 휴업에 따른 생업 부담 등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할 수 있는데³⁾, 2025년 5월 ~ 2026년 4월 동안 폐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1,500명 중 12.1%가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를 이유로 폐업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상공인의 적기의 건강 관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기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2026년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 이유]

(단위: %)

수익성 악화 매출 부진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신규 사업· 창업 준비	취업	기타
70.9	13.7	12.1	8.4	8.3	2.7	4.2

주: 1. 조사 개요: 최근 1년('25.5.~'26.4.) 이내에 폐업 경험이 있고 관련 정부 사업(희망리턴패키지, 노란우산공제, 지역신보 보증)에 참여한 소상공인 1,500명 대상, 조사 기간 2026.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정성통계)」, 2026.6.30.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액이 0원 초과인 실질 활동 사업자 약 519만명 중 177만명과 신규 창업자 약 92만명 중 23만명 등 총 200만명을 지원하는 것을

3) 참고로, 실제 자영업자 건강검진 수검률은 30.8%로, 근로자 수검률은 89.3%로 나타났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원자료: 연세대 의대,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ll-Cause Mortality and Health Check-Up Participation Among Healthy Middle-Aged Workers: A Nationwide Study」, JKMS, 2023.11.))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용 지원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인한 영업 중단에 따른 휴업비용 보전 등을 위해 건강돌봄비 1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목표인원 산출근거]

단계	대상	수치(추계)	통계 출처 및 근거
1단계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	579만명	중소벤처기업부 '23년말 기준 국세데이터 분석자료
2단계	기존 활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수	519만명	
3단계	연간 수검대상(2단계의 50%)	260만명	건강검진 주기(2년)
4단계	당해연도 참여자 (3단계의 목표 수검률 50%)	130만명	-
5단계	전년도 수검자 (3단계 × 실제 수검률 30.8%)	80만명	소상공인 건강검진 관련 조사 결과(연세대 의대, '23)
6단계	전년도 미수검자 (3단계 - 5단계)	180만명	-
7단계	전년도 미수검자 중 당해연도 참여자 (6단계 × 예상 참여율 26%)	47만명	보충 효과 반영
8단계	당해연도 창업자 (92만명 × 수검대상 50% × 목표 수검률 50%)	23만명	신규 창업자(92만명) 중 검진 참여 예상치 반영
최종	총 지원대상 (4단계+7단계+8단계)	200만명	전년도 미수검자 및 당해연도 창업자 포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동 사업은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방식 차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대상 기준으로 매출액 발생 여부만을 고려하고 있는바, 기존의 정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의 추진 방식을 참고할 때, 지원대상 기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질병 유병률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고(근골격계질환 기준 일반인 여성 15%, 여성농업인 50%), 남성농업인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률

이 더 높으며(여성농업인 6.4%, 남성농업인 4.6%), 여성농업인의 주요 질환이 근골격계질환, 호흡기계 질환, 중독 질환 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⁴⁾, 구체적으로 51~8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5개 검진항목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 현황]

소관	사업명	지원대상	내용	사업연도, 예산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51~80세 여성농업인 (‘26년 8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1인당 최대 22만원, 자부담 10% *검진항목(5영역) : 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손상 위험도, 폐기능, 농약 중독 	’22년~계속 9,640백만원 (’26)
해수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낙상), 심혈관계질환, 난청 검진 지원 ◦ 1인당 20만원 한도, 자부담 10% 	’22년~계속 1,170백만원 (’2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방식을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에 적용하면, 단순히 소상공인의 수검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 수검 시 건강돌봄비를 지원하기보다는, ‘휴업에 따른 생업 부담’으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과거 국가건강검진 수검 현황, 고용인원, 대표자의 자산이나 소득 현황, 일평균 영업시간, 연평균 영업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된 예산 하에서 지원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33.7%는 월평균 영업일 수가 24일 미만이고, 0.9%는 타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보수)를 받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나타나는바, 경우에 따라 이들에게는 생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돌봄비를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

4) 자료: 농업인안전365 (메뉴>‘통계·제도정책’>‘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소상공인의 영업 현황]

(단위: 개사, %)

조사항목	응답 기업 수	항목별 응답률				
월평균 영업일 수	6,134,324	22일 미만	22~24일 미만	24~26일 미만	26~28일 미만	28일 이상
		14.0	19.7	35.2	21.4	9.7
건강보험 가입 유형	6,134,324	직장가입자 ¹⁾ (사업장 대표자)	직장가입자 ¹⁾ (근로소득자)	지역가입자	기타 (피부양자)	
		35.7	0.9	62.3	1.1	
직장가입자 ¹⁾ (근로소득자)의 소득원	54,519	사업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음		근로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비슷함	
		43.7		36.5	19.8	

주: 1) - 사업장 대표자 =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표자이면서, 사업장에서 급여(보수)를 지급받아 직장가입 자격을 가진 자

- 근로소득자 = 소상공인 사업장의 대표자이지만, 타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보수)를 받는 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6.2.

또한, 종사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수별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볼 때, 종사자가 있는 약 18.6%의 소상공인 기업의 경우에도 종사자가 없는 81.4%의 1인 소상공인 기업에 비해 우선 지원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종사자 수별 소상공인 기업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1인	2~4인	5~9인	10~19인	계
기업 수	6,433,146	1,270,690	192,846	10,179	7,906,861
비중	81.4	16.1	2.4	0.1	100.0

주: 중소기업의 종사자는 임금·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보수를 받고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정의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와는 차이가 존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2026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휴업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1인 종사자로 한정하는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 목표인원 및 계획안 산출근거를 조정하고, 검진을 제고 효과, 부정수급 등 부작용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마이데이터의 ‘진료내용조회정보’를 확인하여 별도 증빙서류 없이 건강돌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은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위해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감소하는 영업이익(소상공인 일평균 영업이익 8.5만원⁵⁾)에 대응하여 건강돌봄비를 지급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수검을 활성화하려는, 비용보전적 성격의 사업인데, 영업 중단 및 매출 실적 발생 여부, 본래의 영업일시 등에 관한 증빙 없이 건강돌봄비를 지급할 경우, 본래의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외에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정상영업을 하거나 일부 영업만을 중단하는 등 전일 영업 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영업 중단 및 매출 실적 발생 여부, 본래의 영업일시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⁶⁾,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적절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휴업에 따른 생업 부담으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1인 종사자 등으로 한정하는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 목표인원 및 계획안 산출근거를 조정하고, 검진을 제고 효과, 부정수급 등 부작용 발생 현황 등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영업 중단 여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2.

6)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검진일의 영업 공백을 일률적으로 보전하는 것이고 실제 손실액을 산정·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국가건강검진일의 실제 영업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건강검진 수검 여부 및 실질 활동 사업자 여부만을 확인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근로자 간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7)에 따라 2026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8).

동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이며, 총사업비는 8,200억원으로, 그중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 규모는 2,050억원이다.

[2027년도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요]

- ☐ (사업목적) 소상공인 건강검진 시 휴업손실 보전비 지급
- ☐ (기대효과)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 (사업기간) 2027~2030, (총사업비) 8,200억원, ('27년 정부안) 2,050억원
- ☐ (면제사유) 제10호 국가정책적 추진

자료: 정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타문서(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2026.9.3.

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8) 2026.8.26.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

2026.9.7. 기획예산처-중소벤처기업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 통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⁹⁾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때 적정성 검토 시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는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10월 말 현재,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결과 통보(9월)를 받은 후로 아직 적정성 검토가 본격 시작되지 않은바,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인원 및 기업 수, 지원단가 등 사업내용과 사업규모·총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예산안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적정성 검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어렵고 이는 건강돌봄비 지원 등의 지연으로 이어져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어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안의 적정성 논의가 요구되고,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

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검토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의 경우 법적 근거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지원 유형	법적 근거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u>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u>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건강돌봄비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u>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u>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u>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u> 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9. <u>그 밖에</u>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 현 황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²⁾ 등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4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상공인 재기지원	353,332	339,231	363,831	408,898	45,067	12.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4,827	15,312	15,312	24,129	8,817	57.6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	-	-	4,201	4,201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가입자 12,0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의 내내역사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2027년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중 소상공인																											
지원내용	월 보험료의 50~80%, 최대 5년 지원																											
지원절차	<table><tr><td><table><tr><td>기본계획 수립</td></tr><tr><td>중기부</td></tr></table></td><td>▶</td><td><table><tr><td>시행계획 수립</td></tr><tr><td>소진공</td></tr></table></td><td>▶</td><td><table><tr><td>보험료 지원신청</td></tr><tr><td>소상공인 → 소진공</td></tr></table></td></tr><tr><td colspan="5"></td></tr><tr><td><table><tr><td>사후관리</td></tr><tr><td>소진공</td></tr></table></td><td>◀</td><td><table><tr><td>보험료 환급</td></tr><tr><td>소진공→ 소상공인</td></tr></table></td><td>◀</td><td><table><tr><td>보험료 납입실적 확인</td></tr><tr><td>소진공 → 근로복지공단</td></tr></table></td></tr></table>	<table><tr><td>기본계획 수립</td></tr><tr><td>중기부</td></tr></table>	기본계획 수립	중기부	▶	<table><tr><td>시행계획 수립</td></tr><tr><td>소진공</td></tr></table>	시행계획 수립	소진공	▶	<table><tr><td>보험료 지원신청</td></tr><tr><td>소상공인 → 소진공</td></tr></table>	보험료 지원신청	소상공인 → 소진공						<table><tr><td>사후관리</td></tr><tr><td>소진공</td></tr></table>	사후관리	소진공	◀	<table><tr><td>보험료 환급</td></tr><tr><td>소진공→ 소상공인</td></tr></table>	보험료 환급	소진공→ 소상공인	◀	<table><tr><td>보험료 납입실적 확인</td></tr><tr><td>소진공 → 근로복지공단</td></tr></table>	보험료 납입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table><tr><td>기본계획 수립</td></tr><tr><td>중기부</td></tr></table>	기본계획 수립	중기부	▶	<table><tr><td>시행계획 수립</td></tr><tr><td>소진공</td></tr></table>	시행계획 수립	소진공	▶	<table><tr><td>보험료 지원신청</td></tr><tr><td>소상공인 → 소진공</td></tr></table>	보험료 지원신청	소상공인 → 소진공																		
기본계획 수립																												
중기부																												
시행계획 수립																												
소진공																												
보험료 지원신청																												
소상공인 → 소진공																												
<table><tr><td>사후관리</td></tr><tr><td>소진공</td></tr></table>	사후관리	소진공	◀	<table><tr><td>보험료 환급</td></tr><tr><td>소진공→ 소상공인</td></tr></table>	보험료 환급	소진공→ 소상공인	◀	<table><tr><td>보험료 납입실적 확인</td></tr><tr><td>소진공 → 근로복지공단</td></tr></table>	보험료 납입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사후관리																												
소진공																												
보험료 환급																												
소진공→ 소상공인																												
보험료 납입실적 확인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div><div>• 4,201백만원</div><div>가. (보험료 지원) 3,801백만원</div><div>= 신규지원자 12,000명* x 39.6천원 x 8개월</div><div><div>*지원인원 12,000명 산출 방식</div><div>: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수 4.4만명 × 0.27(27%**) </div><div>**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시('18) 이후 3년간 가입자 대비 지원인원 평균비율(23.4%)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div></div><div>나. (운영비) 400백만원</div><div>◦ 시스템구축, 홍보비, 인건비 등 400백만원</div></div>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 가입률이 0.83%로 저조한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등에 따르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³⁾,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 중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8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⁴⁾

이때 소상공인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2항)는 2024년 1월 마련(1월 개정, 7월 시행)되었으나, 지원 예산은 2027년도 계획안에 처음 편성되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각 목 생략)
2. 업무상 질병 (각 목 생략)
3. 출퇴근 재해 (각 목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산재보험료 지원수준)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재보험료 지원은 보수액 및 평균임금 1등급 내지 12등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③ 공단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지원비율, 기준보수 등급 및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최근 8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1만명에서 2025년 4.7만명으로 122.4% 가량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자영업자 대비 가입률은 2025년 기준 0.83%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현황]

(단위: 명, %)

연도	전체 자영업자 수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수	가입률
2018	5,637,900	21,047	0.37
2019	5,605,600	27,155	0.48
2020	5,530,700	34,556	0.62
2021	5,513,000	42,836	0.78
2022	5,632,000	45,681	0.81
2023	5,688,700	42,901	0.75
2024	5,657,100	44,538	0.79
2025	5,619,600	46,574	0.83

주: 1. 전체 소상공인 수 대비 가입률 계산 시 다중사업자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수를 기준으로 가입률 측정·관리 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4년 가입 중인 소상공인 기준, 가입자의 65.6%가 12개의 기준등급 중 낮은 구간인 1·2·3등급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등급별 산재보험 가입 소상공인 현황]

(단위: 천원, 원, 명,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기준보수	2,511	3,025	3,538	4,052	4,566	5,079	
월 평균보험료	36,915	44,465	52,014	59,564	67,114	74,664	
가입자 수	20,551	4,739	3,979	2,599	2,353	2,241	
비중	46.1	10.6	8.9	5.8	5.3	5.0	
기준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합계
기준보수	5,593	6,106	6,620	7,134	7,647	8,161	-
월 평균보험료	82,214	89,764	97,314	104,863	112,413	119,963	-
가입자 수	1,428	956	899	568	250	3,975	44,538
비중	3.2	2.1	2.0	1.3	0.6	8.9	100.00

주: 산재보험요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때 1등급 가입자가 2027년부터 납부 보험료 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되면⁵⁾, 가입자의 실부담은 월평균 36,915원에서 7,383원으로 감소하는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기존 가입자의 경영 부담 완화 및 미가입자의 가입 의사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개별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유도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50%의 범위에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가입자의 실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지자체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지원율			
서울, 부산, 경남, 울산(4개)	기준보수	1~4등급	5~8등급	9~12등급
	지원율	50%	40%	30%
대전, 광주, 강원, 경북, 전북(5개)	모든 등급에 40% 또는 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이 정부(2018~) 및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모두 시행(중복 지원 가능)되고 있는데⁶⁾,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세(‘18년 1.7만명 → ’25년 6.0만명)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 자영업자 대비 가입률은 여전히 1%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비용 부담 경감만으로 가입률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5) 지원 상한(납부 보험료의 80%), 지원대상 등급(1~12등급) 및 지원기간(최대 5년)에 관한 사항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등급별 지원율을 50~80%의 범위에서 차등화(등급이 높을수록 지원을 감소)하고 세부 기준은 사업계획 수립 시 확정할 예정이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도별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및 정부 지원 현황]

(단위: 명, %, 명, 백만원)

연도	전체 자영업자 수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수	가입률	정부 지원	
				소상공인 수	예산
2018	5,637,900	17,360	0.31	2,489	1,248
2019	5,605,600	21,287	0.38	5,547	2,895
2020	5,530,700	29,281	0.53	10,145	2,206
2021	5,513,000	35,598	0.65	14,679	2,561
2022	5,632,000	40,970	0.73	18,012	3,629
2023	5,688,700	45,888	0.81	24,884	5,000
2024	5,657,100	51,958	0.92	31,162	15,008
2025	5,619,600	60,178	1.07	42,378	14,827
2026.6.	5,804,000	67,251	1.16	43,761	15,312

주: 1. 정부 지원 =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지원(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의 내내역사업)

2. 전체 소상공인 수 대비 가입률 계산 시 다중사업자가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수를 기준으로 가입률 측정·관리 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업무상 재해 현황, 기존 가입자의 보험급여 신청·수급 현황,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산재보험 존재에 대한 인지도 등을 다각도로 파악하여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본 사업을 통한 경상적 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소상공인 산재보험 급여 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보험급여 수급	건수	8,883	8,338	12,531	14,311
	규모	4,915	5,332	7,648	8,397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보험급여 수급	건수	13,434	15,473	16,421	18,252
	규모	7,733	9,009	12,101	12,97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업무상 질병 사망재해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도		전체	1~5인 미만	5~9인 이하	10인 이상
산업재해 ¹⁾ 발생	2021	재해자	122,713	37,267	16,522	68,924
		재해율	0.63	1.16	0.69	0.50
	2022	재해자	130,348	38,432	16,179	75,737
		재해율	0.65	1.12	0.66	0.53
	2023	재해자	136,796	38,480	16,834	81,482
		재해율	0.66	1.11	0.68	0.55
	2024	재해자	142,771	40,927	16,730	85,114
		재해율	0.67	1.15	0.65	0.56
업무상 질병 발생	2021		20,435	3,333	1,958	15,144
	2022		23,134	3,875	2,014	17,245
	2023		23,331	4,007	2,265	17,059
	2024		26,998	4,725	2,766	19,507
업무상 질병 사망재해	2021		1,252	249	114	889
	2022		1,349	230	113	1,006
	2023		1,204	208	114	882
	2024		1,271	217	119	935

주: 1) 산업재해 = 사망자 + 요양승인자

2) 재해율 =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의 비율

1.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명 미만(기타 업종)

자료: KOSIS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덧붙여, 산재보험료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산재보험 가입률 등과 같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 성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산재보험 가입률이 0.83%로 저조한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²⁾에 근거하여 창업 5년 미만 청년·소상공인의 위험구간별 휴·폐업 예방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한 정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3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상공인 재기지원	353,332	339,231	363,831	408,898	45,067	12.4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	-	-	30,000	3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소상공인 중 창업 5년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휴업 시 경영유지 지원, 폐업 시 재도전 안전망 지원, 경영유지 시 사업확장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업 예방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가입자 48,000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9의 내역사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8.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7년도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휴업 시 경영유지, 폐업 시 재도전 안전망을 지원하고, 경영유지 시 사업확장을 지원하는 폐업 예방형 정책보험 신설 및 일부 보험료 보조 *(창업자 생존율) (1년) 64.4% → (3년) 45.9% → (5년) 36.4% → (7년) 28.2%
지원대상	소상공인 중 창업 5년 미만 청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 **병원·약국 등 전문업, 유흥향락업, 도박게임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지원내용	월 보험료의 60~80%, 최대 5년 지원
지원절차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백만원 가. (보험료 지원) = 신규지원자 48,000명 × 월 104천원 × 6개월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청년층의 창업 도전 확대 등을 위해 청년 신규 창업 약 24만개('23년 기준, 지원 제외업종 제외)의 20% 지원 목표</div>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 일정	기본계획 수립('26.12월) → 사업공고('27.2월) → 신청·접수('27.3월~) → 사업 수행('27.7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창업자별 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지가 있는 폐업 후 지원 부분을 조정하는 등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은 창업자의 3년 이내 생존율이 45.9%까지 떨어지고 창업자 연령이 낮을수록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창업자가 실패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에 의해 기획되었다.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

(단위: %)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전체	64.4	54.0	45.9	41.0	36.4	31.3	28.2
30대 미만	57.7	45.1	36.2	32.1	26.7	22.0	19.0
30대	63.7	52.5	44.5	40.3	35.3	30.2	27.1
40대	66.8	56.8	48.9	43.7	39.2	34.1	30.8

주: 2023년 기업생멸통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 창업 안심 보험은 창업자 스스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하되, 정부가 제도를 뒷받침하여 경영위험을 대비하는 공공형 정책보험으로, 보험은 크게 ① 휴업급여, ② 폐업급여, ③ 경영유지 특약으로 구성된다.

[청년 창업 안심 보험 구성(안)]

구분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① 휴업급여	출산, 재난, 질병 등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최대 3개월간, 최대 일 10만원	필수 가입, 정부지원O
② 폐업급여	매출 감소, 질병,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천만원 지급	
③ 경영유지 특약	창업 성공	업력 3·5·7년 도달시 격려금	사업화 격려금 지급* *인테리어 개선,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자금 활용 용도	임의 가입, 민간보험사 자체운영, 정부지원X
		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	적립금(목돈) 지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지원은 창업기간 5년 이내(위험·보호 구간)에 한해 구간별 보험료(적립금 제외)의 60~80%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5년 이후 15년까지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휴업·폐업·경영유지 등에 따른 보험금·격려금·적립금을 수령하게 된다.

[창업 구간별 납부로 구성 및 보험료 정부 지원율(안)]

구분	납부로 구성	0~2년 (위험구간)	3~5년 (보호구간)	5~7년 (안정구간)	7~10년 (성장구간)	10~15년 (지속구간)
경영유지 특약 가입자 기준	보험료	80%	70%	60%	50%	40%
	정부 지원	그 중 80%	그 중 60%	-	-	-
	적립금	20%	30%	40%	50%	60%
(예시) (단위: 만원)	연 보험료	152	133	114	76	57
	정부 지원	122	80	-	-	-
	연 적립금	38	57	76	114	13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청년 창업 안심 보험은 지원구간(정상영업(창업 성공), 휴업, 폐업, 재창업 후 등), 지원사유(출산, 재난, 질병, 매출 감소 등), 지원내용(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재창업 비용, 근로자 임금 등), 지원기간(창업으로부터 최대 15년)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이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가입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 가입은 창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지원은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인데, 창업자의 종합소득, 자산총액, 매출액 등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의 차등 또는 상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사유 불문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 시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매출 또는 고용 성과와 무관하게 일정 업력 도달 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입 후 의도적 폐업이나 형식적 재창업 반복, 보험급여 수령 가능한 수준에서만 영업하는 경영 소홀 등의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고, 성장 없이 위기기업 직전의 상태로 유지만 되는 좀비기업 양산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간 지원 방식·내용 등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폐업의 경우 소상공인 고용보험, 희망리턴패키지, 노란우산공제 등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바, 사업 간 중복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타 사업과의 차별점이 ‘폐업 전 예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폐업 후 지원이 아니라 폐업 전 위기단계에서의 지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폐업 지원 사업 비교]

구분	청년 창업 안심 보험	노란우산공제	희망리턴 패키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성격	폐업 전 예방형 정책보험	폐업·노령 대비 공제제도	폐기·재기 단계의 보조사업	실업보장 사회보험
운영기관	중기부 총괄, 소진공 관리, 민간보험사 운영	중기부 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중기부 총괄, 소진공 운영	고용노동부 총괄, 근로복지공단 운영, 소진공 보조
주요 대상	창업 5년 미만의 청년·1인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근로자 50인 미만 자영업자
재원 구조	가입자 부담, 초기 정부지원, 민간금융사 출연	가입자 부담 적립	정부 재정 (보조율 100%)	고용보험기금
정부 재정	300억원(안) (‘27년)	없음	3,056억원 (‘26년)	153억원 (‘26년)
지원목적	휴·폐업 및 재창업 지원	목돈 마련, 생활안정, 폐업·노령 대비	폐업 부담 완화, 취업·재창업 등 재기 지원	폐업 후 실업급여
지원시점	휴·폐업 전·후 포괄지원	장기 적립 후 폐업·노령 시점	폐업단계 및 폐업 후 재기	폐업 후
지원 내용	휴업시 고정비, 폐업·재창업 지원, 경영유지 격려금	소득공제, 납부금 수령	점포철거비, 재기사업화, 취업수당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시 창업자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보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방지방안을 마련하며,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지가 있는 폐업 후 지원 부분을 조정하는 등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³⁾

3)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에 따른 폐업 보장 내용은 유지되되, 보험을 통해 폐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기존 보조금 사업(희망리턴패키지 등)과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보험금 지급대상을 지속적인 영업적자·매출감소와 같은 비자발적 폐업 등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며, 보험급여 수령을 목적으로 사업을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장요건 및 지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둘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에서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2조⁴⁾는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등 가정과 일의 양립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과 같은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한바, 청년 창업 안심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며, ‘청년 창업 안심 보험’ 자체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달리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및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각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부가 소진기금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8.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지원 유형	법적 근거
고용보험료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u>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p>
산업재해보상보험료	<p>「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u>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p>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한번 선정되면 최대 5년까지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하므로 장기간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바, 동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신규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0826호)은 2026년 8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규정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법 제12조의7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의 유형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폐업 위험 완화 또는 제도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추가
소진기금의 사용	법 제21조제1항의 소진기금 사용 가능 범위에 추가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이후 지원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해야 함을 고려하면, 2027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바, 동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에서 청년 창업 안심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제17조 등²⁾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AI 전환을 위해 청년 컨설턴트를 현장에 파견하여 컨설팅·교육을 하도록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49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117,185	113,601	113,601	119,201	5,600	4.9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 확대 ²⁾	-	-	-	11,900	11,900	순증
소상공인 청년 AX·DX	-	-	-	4,900	4,9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2) 내역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 확대' 중 내내역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2027년도 계획안 70억원)은 2026년까지는 타 내역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2026년도 계획액 70억원)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정부 AI 직능교육을 이수한 AI 인재(고용노동부 'AI 직능교육' 수료자 또는 교육부 'AI부트캠프' 수료 청년) 가운데 약 3주간의 컨설턴트 교육을 수료

김다운 예산분석관(dw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22의 내내역사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한 600명의 청년 컨설턴트를 AX·DX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매칭하여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AX·DX 관련 컨설팅을 수행(사업장당 2회, 1회당 2시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27년도 계획안은 600명의 청년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8,000명의 소상공인 사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AX·DX 지원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AI 청년 인재 양성														
사업내용	AI 직능교육 등을 이수*한 AI 인재가 청년 컨설턴트로서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 애로를 진단·컨설팅 * (모집대상) 노동부 AI 직능교육 수료자 또는 교육부 AI부트캠프 수료한 청년														
지원내용	• (1단계 : AXDX 컨설턴트 양성) 600명 양성 • (2단계 : 수요발굴 매칭 및 현장 컨설팅) 소상공인 선택 컨설팅 유형 및 지역, 업종, 디지털 전환 단계를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컨설턴트 매칭, 컨설턴트는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사업장당 1회씩 2시간, 총 2회														
지원절차	<table><tr><td>모집공고 (소진공)</td><td>▷</td><td>신청·접수 (소상공인)</td><td>▷</td><td>선정평가 (소진공)</td><td>▷</td><td>최종 선정 (소진공, 소상공인)</td></tr><tr><td colspan="2">▷</td><td>사업추진 (수행기관, 소상공인)</td><td>▷</td><td>사업 성과분석 (소진공, 수행기관)</td><td>▷</td><td>정산 및 사후관리 (소진공, 수행기관)</td></tr></table>	모집공고 (소진공)	▷	신청·접수 (소상공인)	▷	선정평가 (소진공)	▷	최종 선정 (소진공, 소상공인)	▷		사업추진 (수행기관, 소상공인)	▷	사업 성과분석 (소진공, 수행기관)	▷	정산 및 사후관리 (소진공, 수행기관)
모집공고 (소진공)	▷	신청·접수 (소상공인)	▷	선정평가 (소진공)	▷	최종 선정 (소진공, 소상공인)									
▷		사업추진 (수행기관, 소상공인)	▷	사업 성과분석 (소진공, 수행기관)	▷	정산 및 사후관리 (소진공, 수행기관)									
2027년도 계획안 산출내역	• 4,900백만원 가. 컨설턴트 양성 2,000백만원 - 교육 1,100백만원 * (트랙A) 노동부 양성 인력 대상 추가 교육 150백만원(200명×75만원) (트랙B) 중기부 양성 교육 950백만원(400명×2.4백만원) - 양성 기관 운영비 등 400백만원 - 컨설턴트 관리 등 500백만원 나. 컨설팅 지원 2,900백만원 = 수당·출장비 2,400백만원(15만원×2회×8,000건), 사업관리 등 500백만원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진 일정	○ 디지털특성화대학 모집·선정 : 2027.2월 ○ 청년 AX·DX 컨설턴트 모집·선정 : 2027.3월 ○ 청년 AX·DX 컨설턴트 양성 교육 : 2027.3월 ~ 5월 ○ 소상공인 모집·선정, 컨설팅 지원 : 2027.6월 ~ 12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은 2026년 6월 발표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AI 전환 수요는 높으나 실제 AI 전환율은 낮다는 점과 AI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육성 이후 실제 채용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년인재의 AI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³⁾

동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AX·DX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은 기존의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사업과 지원대상·지원방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두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기획함으로써 사업 간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과 같은 세부사업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중 타 내내역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은 전문 컨설턴트가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플랫폼 입점 등과 관련한 1:1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이고, 50세 이상, 1인 사업장,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계획되었다는 점이 동일하며,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1:1로 4시간씩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도 같다.

또한,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의 컨설팅 유형은 크게 ① 온라인 플랫폼 입점·운영 지원, ② 스마트기기·기술 보급 수요진단, ③ AI 기반 SaaS 도

3) 관계부처합동,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AI·산업 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2026.6.9.

입·활용 지원, ④ 플랫폼·가맹 등록 지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① 온라인 플랫폼 입점·운영 지원은 기존의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사업의 컨설팅 내용인 플랫폼 입점 및 활용 교육과 중복된다.

[소상공인 방문형 디지털 컨설팅 사업]

구분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2027년도 계획안	1,000백만원	4,900백만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50세 이상, 1인 사업장,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원인원	1,500명	8,000명
컨설턴트	전문 컨설턴트 120명 *온라인 플랫폼 등 관련 업무 경력자	청년 컨설턴트 600명 *AI 직능교육 및 컨설팅 교육 수료 청년
컨설팅 방식	방문형, 1:1, 4시간(2시간씩 2회)	
컨설팅 내용	<p>컨설팅 과업 유형(안)</p> <p>① 온라인 플랫폼 입점·운영 지원 : <u>스마트스토어·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상세페이지 제작, 라이브커머스 기초, SNS마케팅 연계 등</u></p> <p>② 스마트기기·기술 보급 수요진단 : 키오스크·POS·서빙로봇 등 현장 디지털기기 도입 필요성 진단 및 정부 보급사업 연계 안내</p> <p>③ AI 기반 SaaS 도입·활용 지원 : 생성형 AI 마케팅 콘텐츠·이미지 제작, 챗봇·예약관리·재고·회계 등 SaaS 활용 교육</p> <p>④ 플랫폼·가맹 등록 지원 : 지도플랫폼 정보등록,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지원 등</p>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두 사업은 지원대상·지원방식·지원내용 등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데, 유사·중복 사업을 나누어 추진하는 경우 성과관리, 운영비 등의 차원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두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추진 전 전문 컨설턴트 및 청년 컨설턴트의 선정 비율, 각 컨설턴트의 수행 기능, 컨설팅 비용 단가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면밀히 기획함으로써, 사업 간 안정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⁴⁾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찾아가는 1:1 디지털 교육 사업 및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 등 두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기획함으로써 사업 간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상공인 AX·DX 컨설팅을 수행하는 청년 컨설턴트의 양성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교육내용, 컨설팅방식 등에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부처 간 면밀한 협업이 필요해 보이고, 부처 간 교육 운영 예산 단가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AX·DX 컨설팅을 수행할 AI 역량 보유 청년 컨설턴트의 양성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⁵⁾.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통해 권역별 디지털특성화대학 5곳을 선정하여 대학당 80명씩 총 400명의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통해 총 200명의 컨설턴트를 양성하려는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두 유사·중복 사업 통합 시 청년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기존 컨설팅 과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과 전문 컨설턴트를 적정 비율로 관리하는 등 통합된 예산 내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5)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양성 사업이 두 부처로 분산된 사유는, 컨설턴트 양성 목표가 총 600명인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양성 가능 인원이 200명으로, 나머지 인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양성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2027년 청년 컨설턴트 양성 교육 추진 계획]

구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명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운영비 (고용보험기금, 1152-350)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27년도 계획안	700백만원	2,000백만원
교육인원	200명	400명
교육방식	학기당 60시간, 3주	학기당 30시간, 3주
교육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지털특성화대학 ※'27년 5개 대학 선정 예정

주: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해 양성된 200명의 청년 컨설턴트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성 등과 관련된 추가 교육(디지털특성화대학)이 진행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이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X·DX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 양성 교육이 두 부처에서 분리되어 추진되는 경우, 교육내용, 컨설팅방식 등이 부처 간·교육기관 간 달라짐에 따라 컨설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성과 파악 등 사업관리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모집·선정 등에 앞서 표준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고용노동부와 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두 부처의 사업 간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 고용노동부는 7억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억원으로 다르게 편성되었는바, 두 부처 간 교육 운영 예산 단가를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교육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소상공인 AX·DX 컨설팅을 수행하는 청년 컨설턴트의 양성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교육내용, 컨설팅방식 등에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표준 커리큘럼 개발 및 부처 간 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이고, 부처 간 교육 운영 예산 단가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 운영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협업을 통해 AX·DX 교육을 받아 양성된 청년 컨설턴트의 향후 AX·DX 활용률 및 유관 분야 취업을 관련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등 동 사업 관련 면밀한 성과관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청년 AX·DX 컨설턴트 사업은 AX·DX 교육을 받아 양성된 600명의 청년 컨설턴트가 약 8,000건의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컨설팅 과업을 수행한 이후의 청년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청년 컨설턴트가 8,000건의 컨설팅을 수행한 후 AX·DX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청년 AX·DX 교육 예산은 단기성 지출로만 소진되어 사업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동 사업의 효과는 동 사업이 편성된 세부사업 전체의 성과지표로 '정책수혜 소상공인 생존율(%)'만 관리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는 AX·DX 교육을 받은 청년의 향후 AX·DX 역량 활용률, AX·DX 관련 취업 현황 등의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책수혜 소상공인 생존율 (%)	목표	91.6	87.4	87.6	87.9	88.6	'23~'25년 실적치의 평균값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혜 소상공인의 3년차 생존율	소진공, 국세청
	실적	88.7	88.1	89.0	-	-			
	달성도	96.8	100.8	101.6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동 사업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AI 역량을 보유한 청년을 대상으로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수행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컨설턴트와 소상공인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컨설팅을 수행한 청년 컨설턴트의 경력·성과 등을 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 채용 지원 사업⁶⁾을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에 연계하여 고용노동부가 AX·DX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의 AX·DX 활용률, 유관 직무로의 취업률 등의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AX·DX 교육을 받아 양성된 청년 컨설턴트의 향후 AX·DX 활용률 및 취업 연계 관련 성과관리가 면밀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협업을 통해 AX·DX 교육을 받아 양성된 청년 컨설턴트의 향후 AX·DX 활용률 및 유관 분야 취업률 관련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등 동 사업 관련 면밀한 성과관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6)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 개요>

- ☐ (개요) 기업이 역량 있는 청년을 채용하여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청년 인건비 및 기업 멘토링비 지원 → AI 분야 청년의 첫 경력 형성 지원 및 국가 인적자원 경쟁력 확보
 - ☐ (채용 기간) 1년, 1+1년, 2년 중 기업 선택
 - ☐ (참여 청년) AI 직업훈련* 수료 후 미취업한 청년 750명
 - * (예) K-디지털트레이닝(AI분야),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AI분야) 등
 - ☐ (참여 기업)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기관)
 - (AX 솔루션 전문기업) 정부 부처 AX 지원사업* 참여 AI 솔루션 전문기업(공급기업)
 - * [예] AI 통합바우처(과기부), 스마트공장(중기부), 산업AI솔루션(산업부) 등
 - (AX 지원사업 수혜기업) 정부 지원 등을 통해 AX 진행 예정 기업
 - (공공사회적기업 등) AX 및 유지보수 등 추진 중인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등
 - (일반기업) 자체 AX를 추진 중인 일반 기업 등
 - ☐ (임금 수준) 기업의 동일가치노동 종사자(신입초봉)의 임금 수준
 - ⇒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 지원 + 기업이 차액 부담
 - * [예] 임금 3,300만원 = 정부 지원 2,700만원(최저임금) + 기업 부담 600만원
 - ☐ (사업구조) 고용노동부 총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업·청년 모집·선정, 비용지급 등 전 과정 운영
 - ☐ (예산) 14,505백만원(2027년도 신규)(일반회계, 1046-358)
- (자료: 고용노동부)



지식재산처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지식재산처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지식재산처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7,22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11억원(3.0%) 증가하였다.

[2027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²⁾	643,629	701,827	701,827	722,911	21,084	3.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2) 2025년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기준이며, 처 승격('25.10.)에 따라 2026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

1. 총계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7,106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03억원(11.0%)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034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2억원이다.

[2027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²⁾	546,349	623,605	633,105	703,396	70,291	11.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220	7,220	7,220	7,220	-	-
합계	553,569	630,825	640,325	710,616	70,291	11.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2) 2025년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 기준이며, 처 승격('25.10.)에 따라 2026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

1. 총계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한편, 지식재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나. 재정구조

지식재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1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은 교육부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어 지식재산처 소관 회계 간 전입·전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식재산처 2027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일반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입	세 출	세 출
7,229	7,034	72

2027년도 지식재산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조직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계정 간 전출,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등 내부거래가 폐지되었고, ② 조직 확대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으며(2026년 1,956억원 → 2027년 2,158억원), ③ 대학·공공연구의 해외 원천특허 확보,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편성되었고(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130억원, 지식재산 기반 기술 사업화 전략지원(R&D) 251억원(+151억원)), ④ 조선·반도체·원전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대응체계 마련이 신규 추진되었으며(123억원), ⑤ 지식재산 행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이 추진되었다(지식재산행정 AX 55억원).

2027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IP 전략패키지 중 IP경영전략컨설팅에는 사업모델 개발, 제품브랜드 서비스 개발, 시장검증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재산처는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상용 LLM 활용 시, 기존 시스템과의 기능 차별성,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실제 활용수요와 보안성, 구독 서비스의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Easy 특허정보 Agent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은 공공AX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공인시험 성능검증 및 국민평가단 품질점검이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기존 자펀드의 잔여 투자여력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27년 신규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 849억원 규모이다.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지식재산 기반 혁신·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 특허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이고, ‘IP기반 기업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예비)창업기업에 지식재산 권리화·기술·경영 전략을 종합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에게 수요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R&D)’ 사업은 대학·공공연구의 국가 R&D 성과에 대하여 주요국 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사업은 조선·반도체·원전·방산 분야의 기술유출 위험을 특허 빅데이터로 사전 포착하고 해외 진출기업에 기술보호 패키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식재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8개)	모태조합 출자	20,000
	IP기반 기업성장지원	17,280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R&D)	13,000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12,291
	K-Brand 정부인증제도 운영	9,513
	지식재산행정 AX(정보화)	5,463
	IP 데이터 큐레이션 연구개발(R&D)	4,900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R&D)	2,500
합 계		84,947

자료: 지식재산처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교육환경개선,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①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은 특허분석에 기반한 상용화 지원과제의 2년차 계속과제 소요가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고, ②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사업은 해외 위조상품 대응 물량 확대와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의 일부 내역 이관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③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지식재산 기록물 관리를 위한 외부 보존공간 임차 등이 신규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④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은 자기주도 학습비 지원 등이, 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사업은 지식재산 정책연구 및 교육 확대가 반영되어 각각 증액되었다.

[지식재산처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6개)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10,000	10,000	25,051	15,051	150.5
	K-브랜드 분쟁대응 지원	7,402	7,402	13,937	6,535	88.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3,216	3,216	4,508	1,292	40.2
	특허데이터 기반 경제안보 체계 구축	3,531	3,531	4,746	1,215	34.4
	교육환경개선	1,488	1,488	2,598	1,110	74.6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839	839	1,371	532	63.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1

IP 전략패키지 지원 사업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IP 전략패키지 지원 사업¹⁾은 지역의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IP·핵심기술 확보, 서비스전략, 제품검증 등 IP기술전략과 IP경영전략을 각각 패키지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에 140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IP 전략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IP 기반 기업성장지원	-	-	-	17,280	17,280	순증
IP 전략패키지 지원	-	-	-	14,080	14,08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는 2027년 동 사업을 통해 전국의 기술기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440개사를 선정하여 연간 8,000만원 수준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액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설정되었다. 컨설팅 범위는 지식재산(IP) 권리화를 위한 IP기술전략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IP경영전략으로 구분되며, 두 서비스 내용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1232-306의 내역사업

[2027년 IP 전략패키지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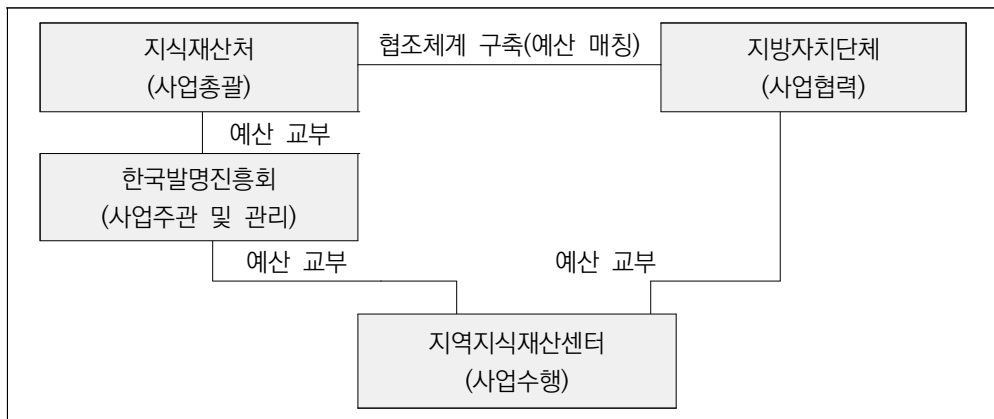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IP 전략패키지 지원	440개사×80백만원×40%(국비보조율)	14,080

자료: 지식재산처

동 사업은 「발명진흥법」 제53조2)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지식재산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비용을 매칭하여 부담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기업 선정·컨설팅 지원 등의 실질적인 사업수행은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3)에서 담당한다.

[IP 전략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체계]



자료: 지식재산처

2) 「발명진흥법」

제53조(사업) ①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5. (중략)

6.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3) 지역지식재산센터는 「발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전국 26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별로 상공회의소, 지역 경제진흥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부 등 서로 다른 기관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IP 전략패키지 중 IP경영전략컨설팅에는 사업모델 개발, 제품브랜드 서비스 개발, 시장검증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IP 전략패키지는 크게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IP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P기술전략컨설팅과 IP경영전략컨설팅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8,000만원 중 4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IP기술전략컨설팅은 (예비)창업기업의 IP를 진단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IP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에 따라 IP를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보·보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IP경영전략컨설팅은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제품·브랜드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시장성·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 후 IP 기반의 경영과 향후 성장방안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된다. 이 중 IP 경영(⑧)이나 IP 성장지원(⑨) 중 IP 가치평가, IP-IR 자료 고도화는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모델 개발(⑤), 제품·브랜드 서비스 개발(⑥), 시장검증(⑦), IP 성장지원(⑨) 중 투자기관 연계, 시험·인증, 판로 및 후속 지원사업 연계 등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창업기업의 사업모델과 제품·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시장성을 검증하는 일반적인 사업화 지원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

[IP 전략패키지의 주요내용]

(단위: 만원)

구분	지원단계	주요 지원내용	원가
IP 기술 전략 컨설팅	① IP 진단	아이디어·기술, 선행특허, 경쟁기업 및 시장환경을 분석하여 기술 차별성과 권리화 가능성 진단	1,377
	② 아이디어·기술 고도화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제품·서비스의 핵심기능, 기술 구성 및 차별화 요소 고도화	1,379
	③ IP 전략 수립	핵심기술 선정, 권리화 우선순위 설정,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국내외 IP 확보 로드맵 수립	2,565
	④ IP 권리화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국내외 출원과 보정·의견서 제출 등 권리 확보 지원	2,671
	소계		7,992
IP 경영 전략 컨설팅	⑤ 사업모델 개발	보유 IP를 기반으로 목표시장, 고객, 수익구조, 제품화 방향 및 시장진입 전략 설계	513
	⑥ 제품·브랜드 서비스 개발	3D 모델링, 제품디자인, 브랜드·네이밍 개발, MVP·시제품 제작 등을 통해 사업 아이템 구현	1,019
	⑦ 시장검증	시제품 실증, 수요조사, 고객 반응 분석 및 제품 개선을 통해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 검증	513
	⑧ IP 경영	IP 관리체계, 직무발명, 영업비밀 보호 및 타사 권리 침해위험 대응체계 구축	1,228
	⑨ IP 성장지원	IP 가치평가, IP-IR 자료 고도화, 투자기관 연계, 시험·인증, 판로 및 후속 지원사업 연계	4,716
	소계		7,989

자료: 지식재산처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⁴⁾의 초기창업패키지를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을 통해 시제품 제작·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을 지원하고 있고, 시장진입·초기 투자유치·실증검증 등의 창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의 IP경영전략컨설팅 패키지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2026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지역창업패키지를 대규모로 증액하여 비수도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창업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4)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2-300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및 지역창업패키지 사업개요]

구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지역창업패키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및 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사업화자금(최대 4억원) 및 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사업화자금	시제품 제작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창업패키지	BM 고도화, 시제품 제작, 창업교육 등 프로그램	
2027년 예산안	46,920백만원	170,000백만원
국비 지원비율	70~100%	70~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기업에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IP 전략패키지는 IP 전문가가 기업의 기술·시장 및 IP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의 중복 여부는 사업비의 지급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모델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검증은 IP 전문가가 컨설팅 방식으로 제공하더라도 그 결과가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이라는 점에서는 기존 창업지원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특히, IP경영전략컨설팅의 원가 8,000만원 중 IP성장지원(4,716만원), 제품브랜드 서비스 개발(1,019만원), 시장검증(513만원) 등에 배정된 지원액 수준을 보더라도, IP경영전략컨설팅은 지식재산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화 및 시장진입 지원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식재산처나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가 가진 전문성을 고려할 때 IP기술전략, IP경영 등 지식재산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 재원을 집중하고, 일반적인 사업모델·제품·서비스 개발 및 시장검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존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재정운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IP 전략패키지 중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과 지원목적·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IP 분석·권리화 및 IP 포트폴리오 구축

등 지식재산 전문서비스 중심으로 세부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화 지원 영역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 역할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IP 전략패키지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지방비 수요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사업관리비도 국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사업관리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처는 IP 전략패키지의 기업별 지원단가 8,000만원 중 40%는 국비, 40%는 지방비, 나머지 20%는 지원기업이 분담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저조하거나 수요가 있더라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국비 역시 집행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자체의 수요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 동 사업의 국비 예산안은 140억 8,000만원이며, 이 중 지식재산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140억 7,500만원으로, 지식재산처가 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지방비 수요는 125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비 예산안의 89.0% 수준이나, 국비 예산안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관리비 17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기업 지원에 소요되는 국비와 비교하면 지방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027년 IP 전략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단위: 백만원)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세종	충북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전남	광주	전북	제주	합계
620	1840	1,320	1,064	755	451	920	682	1,620	1,210	700	300	252	800	12,534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지방비 확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창업패키지는 2026년 기준 국비 중심(70%)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지방정부는 창업기업의 자기부담금(30%) 중 일부(10%)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동 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비 중심의 대규모 창업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큰 동 사업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고 재원을 배분할 것인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청은 2027년 국비 예산안 140억 7,500만원 중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관리비로 17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는 전체 예산안의 12.3%에 해당하며, 사업관리비를 제외한 직접비(123억 4,900만원)의 14.0%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주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은 각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 사업비의 14.0%를 사업관리비로 책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IP 전략패키지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지방비 수요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사업관리비도 국비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사업관리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사업¹⁾은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운영, IP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5,500만원 증액된 15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①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²⁾ 운영 내역은 일반국민의 IP정보 접근성 제고 및 고품질 심사심판 지원을 위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 DB를 임차구축하여 고품질의 심사심판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9,400만원 감액된 4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②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내역은 민간클라우드에 이전된 IP정보시스템들을 통합·운영·관리하고, 심사심판 업무 지원을 위한 기계번역 서비스 운영, 요약 DB 구매, 외부 LLM 구독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8,500만원 증액된 5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③ Easy 특허정보 Agent 운영 및 고도화 내역은 공공서비스 AI 전환의 일환으로 어려운 특허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AI Agent를 기존 지식재산 검색서비스(KIPRIS)에 탑재·운영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에 16억 6,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1332-302

2) 지식재산 검색서비스(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외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심판 등 지식재산정보에 대한 검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7년도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 (정보화)	15,672	13,235	13,235	15,690	2,455	18.5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 운영	5,811	5,357	5,357	4,463	△894	△16.7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566	4,611	4,611	5,796	1,185	25.7
Easy 특허정보 Agent 운영 및 고도화	-	-	-	1,662	1,662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나. 분석의견

첫째, 지식재산처는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상용 LLM 활용 시, 기존 정보서비스 및 AI 특허검색 시스템과의 기능 차별성,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실제 활용수요와 보안성, 구독 서비스의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구독인원과 지원기간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예산안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7년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은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42억 6,300만원, 기계번역 서비스 운영 7억 5,900만원, 요약DB 구매 2억원, 심사관 외부 LLM 구독 5억 7,700만원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심사관 외부 LLM 구독 5억 7,700만원은 지식재산처 심사관심판관의 외부 상용 LLM 연간 구독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에 신규로 편성되었다. 지식재산처는 심사관심판관 1,376명 전원에게 외부 상용 LLM의 연간 구독료를 지원하여, 대량의 기술문헌 및 상표 관련 정보를 검색·분석하는 등 심사심판 업무에 LLM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7년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예산안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관리용역비 등)	· 민간 클라우드 내 IP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인력 용역비, 전산실 운영비 및 민간 클라우드 이용료 등	4,263
기계번역 서비스 운영 (관리용역비 등)	· 자체 개발한 AI 기계번역엔진 고도화, 특허정보시스템에 AI 번역서비스 확대·운영 등	759
요약DB 구매 (자산취득비)	· 심사·심판 과정에서 특허 문헌 핵심 내용에 대한 신속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AI 특허요약 DB 데이터 구축	200
심사관 외부 LLM 구독 (일반용역비)	· 심사관 및 심판관 대상 외부 LLM 서비스 구독을 위한 비용 - 1,376명×1인당 월 이용료 35,000원×12개월	577
합계		5,796

자료: 지식재산처

그러나 지식재산처는 현재 심사심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같은 내역사업에서도 해외 특허문헌 등에 대한 기계번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특허문헌의 요약정보 DB를 구매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세부사업(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의 내역사업인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 운영’에서도 특허기술 요약정보에 대한 민간DB를 임차구축하고, 심사관용 지식재산검색서비스(KIPRIS)를 구축·운영해 왔으며, 2027년에는 기존 지식재산처 내부 특허검색시스템에 미공개 특허정보 등 특허심사 업무에 필요한 유사기술을 정밀하게 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술문헌의 번역·요약 및 유사기술 검색·분석 등 심사심판 업무에 필요한 주요 기능을 기존 정보서비스 또는 별도의 AI 특허검색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 상용 LLM을 추가로 활용하여 수행하려는 업무 수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사관·심판관 업무 지원 정보서비스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특허정보활용 인프라구축(정보화)			AI특허검색시스템 구축
	IP정보 통합센터 운영		지식재산정보검색 서비스 운영	
	기계번역 서비스	요약DB 구매		
대상시스템	내부 특허검색시스템	내부 특허검색시스템	내부 특허검색시스템	내부 특허검색시스템
지원내용	AI 기계번역엔진 고도화, AI번역서비스 확대	AI 특허요약 DB 데이터 구축	특허기술 요약정보 민간DB 임차구축, 심사관용 검색서비스 운영	키워드 기반 검색에서 문장 단위 분석으로 유사 기술 검색
이용자	지재처 심사관·심판관	지재처 심사관·심판관	지재처 심사관·심판관	지재처 심사관·심판관
2027 예산안	759	200	4,463	4,302
개발·운영	한국특허정보원	입찰 공고 예정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정보원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AI 특허검색 시스템과 외부 상용 LLM 구독은 AI를 활용한 지재권 심사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AI 특허검색 시스템이 선행 기술문헌 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상용 LLM은 논문 등 비 특허문헌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행기술자료의 검색·활용이 가능하며, 문헌 간 대비·분석 및 판단지원 등 고도화된 심사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특허문서의 경우 출원 후 1년 6개월의 비공개 기간 동안 심사관·심판관이 개별적으로 외부 상용 LLM을 사용할 경우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모든 로그기록이나 입력자료를 DB에 저장·관리해 주는 전용 라이선스 서비스를 구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외부 상용 LLM이 기존 특허검색시스템과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심사·심판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활용업무와 이용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체 심사관·심판관에게 유료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식재산처는 2027년 외부 상용 LLM의 구체적인 활용업무와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구독인원을 산정하지 않고, 전체 심사관 및 심판관 1,376명이 12개월

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5억 7,700만원을 산정하였다. 또한, 실제 구독할 LLM 역시 ChatGPT, Gemini, Claude 등을 후보로 두고 성능 및 보안성 등에 대한 내부 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어서,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는 도입 서비스와 계약방식, 실제 이용수요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식재산처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약 1개월간 심사심판관 100명을 대상으로 ChatGPT Enterprise를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와 활용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범운영이 실시되기 전에 전체 심사심판관에 대한 연간 구독료를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정보서비스 및 AI 특허검색시스템과 차별화되는 활용업무와 실제 이용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구독인원과 지원기간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³⁾의 2027년 예산안에 ‘자기주도 학습비 제좌 사업’ 2억 8,000만원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연간 15만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고, 자기주도 학습비의 사용 용도에는 AI구독료도 포함되어 있다. 자기주도 학습비는 공무원의 자율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심판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외부 상용 LLM 구독료와는 사업 목적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AI 서비스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심사심판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부 상용 LLM 활용 시, 기존 정보서비스 및 AI 특허검색시스템과의 기능 차별성,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실제 활용수요와 보안성, 구독 서비스의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구독인원과 지원기간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예산안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Easy 특허정보 Agent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은 공공AX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공인시험 성능검증 및 국민평가단 품질점검이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고도화의 필요성과 추진 범위,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7031-302

Easy 특허정보 Agent는 특허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특허정보를 쉽게 검색·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어 기반의 질의·응답, 특허문헌 요약, 유사특허 검색·비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AI 서비스이다. 동 시스템은 2025~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AX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⁴⁾되었으며, 지식재산처는 개발된 AI Agent 모델 및 관련 산출물을 KIPRIS에 탑재하여 202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asy 특허정보 Agent 모델의 주요 기능]

구분	주요내용
맞춤형 특허정보 제공	사용자의 특허 지식 수준에 따라 초·중·고, 일반인, 기술 전문가 등으로 난이도에 맞춘 용어 선별 제공
특허 핵심내용 요약	기술 문해력 향상을 위해 특허에 대해 핵심내용 요약, 기술 키워드, 기술동향, 기술분포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문서 간 비교 분석	사용자가 업로드한 기술 문서와 유사한 특허를 검색하고, 그 중 관심 특허를 선택하면 2개 문서 간 비교 정보를 제공

자료: 지식재산처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산장비 클라우드 서버 및 LLM 라이선스 임차료 4억 6,000만원과 기능 고도화 용역 및 감리비 7억 6,200만원, KIPRIS 연계 운영비 4억 4,000만원으로 구분된다.

[2027년 Easy 특허정보 Agent 운영 및 고도화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안
Easy 특허정보 Agent 운영 및 고도화	· 전산장비 클라우드 서버 및 LLM 라이선스 임차료: 460백만원 · 기능 고도화 용역 및 감리비: 762백만원 · KIPRIS 연계 운영비: 440백만원	1,662

자료: 지식재산처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공AX프로젝트'의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으며, 2025년 7억 3,500만원, 2026년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AI 기반 서비스는 실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 유형과 이용자의 요구, 검색·답변 오류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성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고도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까지 공공AX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시스템을 2027년부터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KIPRIS를 통한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실적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7년 기능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증분 관리를 위한 검색 범위 및 기술용어 확장, 검색대상 국가 및 정보범위 확대⁵⁾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공공AX 프로젝트 종료 후 1년간은 개발업체로부터 단순 무상 유지보수는 가능하나, 이는 순수 고장 조치를 위한 사항으로 검색범위 증가, 모델 품질 개선 등 실제 서비스 적용 이후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동 사업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Easy 특허정보 Agent 모델 개발 후 무상유지보수 범위]

구분	무상 유지보수	운영·고도화 사업
고장 조치	가능	제외
증분 관리	불가	포함 (검색 범위 및 기술용어 확장)
외국 문헌	불가	포함 (번역 및 자연어 문장 이용 국문 검색 지원)
모델 성능	불가	포함 (정기 점검·모델 보정 및 정확도 모니터링 등)

자료: 지식재산처

그러나 실제 서비스가 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 개발된 모델이 실제 이용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검색 정확도와 답변 품질을 나타내는지, 이용자가 주로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 하고, 어떠한 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Easy 특허정보 Agent는 공공AX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발되는 시스템인 만큼, 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검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

5) 일례로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최근 20년간 특허 데이터, 미국의 최근 5년간 특허 데이터 검색은 가능하나 일본·유럽·중국 등의 특허 데이터는 구축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의 경우에도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추가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분 수요를 고려하여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7년 고도화 사업에서 추진하려는 기능 중 기존 공공AX 프로젝트의 개발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과 추가적인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현재 개발 중인 Easy 특허정보 Agent의 성능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11월 중 제3의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성능검증을 실시하고,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국민평가단을 통한 품질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검증 및 점검 결과는 개발된 시스템의 검색 정확도와 답변 품질, 이용자 편의성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검증과 국민평가단의 품질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공공AX 프로젝트의 개발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개발 범위와 중복되지 않는 추가 고도화 수요를 구체화하여 2027년 고도화 사업의 추진 범위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황

모태조합 출자 사업¹⁾은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사업화자금을 조달하고, 우수 IP를 직접 매입·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IP투자 펀드를 조성·운용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2026년에는 정부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27년 예산안에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2027년도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모태조합 출자	8,000	-	-	20,000	2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지식재산처

나. 분석의견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최근 5년간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2026년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집행도 본격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자펀드의 잔여 투자여력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2027년 신규 출자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2006년 출범 이후 2026년까지 88개 자펀드에 총 2조 7,944억원이 결성되었다.²⁾ 최근 5년간 정부 출자액은 2022년 200억원, 2024년 114억원, 2025년 80억원으로 총 394억원 규모이다. 지식재산처는 2027년 모태펀드에 2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총 400억원의 IP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e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1332-304

2) 펀드출자액 중 정부출자액은 7,456억원으로 예산 2,694억원과 회수재원 4,762억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IP투자 펀드 출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출자액	20,000	-	11,400	8,000	-	39,400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최근 5년간 IP투자 펀드 결성액 중에는 실제 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상당하고, 2026년 결성된 자펀드 2개는 실제 투자집행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자펀드는 7,785억 1,000만원이 결성되었는데, 이 중 기업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4,871억 4,400만원(62.6%)이고, 남아있는 투자 대기자금은 2,135억 1,500만원이다.

따라서 2027년 정부가 2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하지 않더라도 기 결성 자펀드의 투자 대기자금은 2027년 예산안의 10배 수준이며, 정부출자액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507억 9,500만원³⁾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5년간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자펀드 조성·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자펀드 결성연도	출자액			필요경비 (D=C×0.1)	투자집행액 (E)	투자 대기자금 (F=C-D-E)
	정부출자액 (A)	민간출자액 (B)	총 출자액 (C=A+B)			
2022	39,700	282,400	322,100	32,210	267,590	22,300
2023	86,100	153,700	239,800	23,980	168,610	47,210
2024	12,500	9,000	21,500	2,150	16,960	2,390
2025	31,900	123,610	155,510	15,551	33,984	105,975
2026	15,000	24,600	39,600	3,960	-	35,640
합계	185,200	593,310	778,510	77,851	487,144	213,515
2027	20,000	20,000	40,000	4,000	-	36,000

주: 투자금액은 2026년 7월말 기준 작성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13,515백만원×23.79%(정부출자액 비율)

또한, 2026년에 결성된 396억원 규모의 자펀드⁴⁾는 각각 4월과 6월 결성 이후 7월말까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7년 정부의 추가 출자의 시급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P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기 결성된 자펀드에 투자여력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는 점, 2026년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집행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27년 신규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2026년 4월 미래에셋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자펀드에 220억원, 6월 케이기술투자 및 제이엔피글로벌에서 운용하는 자펀드에 176억원이 각각 결성되었다.

5) 이에 대해 지식재산청은 특허의 활용률 제고 및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IP 직접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신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투자액은 신규 자펀드 출자에 활용하지 못하여 신규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